교정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

YouTube https://www.youtube.com/@KCS_TV

교정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다면?
교정본부TV 를 구독 하세요!

교정본부TV는 교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교도소와 교도관의 다양한 활동부터 교정 정책에 대한 소식까지,
교정본부TV에서 만나보세요.

법무부 교정본부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Vol.579. 2024. AUGUST

법무부 교정본부

ORRECTIONS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논문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리실태 및 시사점을 통해 본 범죄자 정보공유 방안 연구

교정 리포트
교정시설 치료공동체에 대한 질적메타 종합연구(상)

교정 백과
독일 교정시설의 디자인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하)

08

Vol.579. 2024. AUGUST

법무부 교정본부

Contents

VOL.579. 2024. AUGUST

COVER STORY

8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인가요? 여름의 정점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월간 〈교정〉은 숭고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심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며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겠습니다.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4년 8월 16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엮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Corrections PLACE 교정 플레이스

04 역사와 오늘
경기 북부 교정의 터줏대감
의정부교도소

10 교정의 공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희망을 이야기하다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

16 외부 칼럼
필사를 통해 누리는 마음의 휴식

Corrections ARCHIVE 교정 아카이브

18 교정 포커스
전근대 한국행형사(3)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38 교정 논문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리실태 및 시사점을 통해 본 범죄자 정보공유 방안 연구
함혜현 국립부경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전공 교수

60 교정 리포트
교정시설 치료공동체에 대한 질적메타 종합연구(상)
유숙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82 칼럼
교정기관, 수용자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정책 시행
한희도 영월교도소 소장

86 교정 판례
엄중 관리 대상자 관련 판례 연구(상)
김자영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변호사

100 교정 백과
독일 교정시설의 디자인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하)
박순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136 교정 NEWS

145 모범 공무원

146 독자마당

경기 북부 교정의 터줏대감

의정부교도소

전국 곳곳에 교정시설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수는 부족하기만 하다. 의정부교도소는 경기 북부의 유일한 교정시설로 기결수보다 미결수가 더 많은 특수성으로 인해 교도소의 역할을 넘어서 구치소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확장은 법정 출석 준비와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법과 질서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교정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 박도근 사진 홍승진

의정부교도소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제품으로는 육계도 빼놓을 수 없다. 의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육계는 도축 후 즉시 급속 냉각하여, 3개월 이내에 납품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덕분에 의정부교도소의 육계는 신선도·맛 모든 면에서 '명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서울 관내 10곳의 기관으로부터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모두의 정신을 책임지는 헌신적인 노력

의정부교도소에는 전국에서 5개의 기관만이 보유하고 있는 심리치료과도 존재한다. 소내 모든 사람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로 수용자의 경우 정신 상태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마음 치유, 희망 나눔, 희복 믿음, 희복 동행)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명령 이수를 이행해야 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이러한 노력은 재범 방지와 경각심을 고취시켜 수용자들이 사회에 재편입될 때,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려는 의정부교도소의 헌신을 보여준다.

의정부교도소는 직원의 심신 상태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이 높은 스트레스와 압박에 직면할 수 있기에 소통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각 과 부서장과 부서원이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고충이나 건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마음 편해지기", "마음챙김 명상" 등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직원들 모두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 북부 유일한 교정시설의 역할과 성과

1943년 경성형무소 의정부 농장 출범을 시작으로 약 80년 동안 의정부교도소는 이 자리를 지켜왔다. 의정부가 시로 승격된 지도 60년 정도가 됐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정부교도소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의정부교도소는 경기 북부 유일한 교정시설로서 단순한 교도소의 역할을 넘어, 구치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 왔다. 이는 미결수가 기결수 보다 많은 교정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수용자들은 이곳에서 법정 출석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소내 공장에서 만드는 면도기가 있다. 수용자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조립 과정이 손이 많이 가고 정밀함이 필요한데, 그 뛰어난 품질 덕분에 전국 교정시설에 납품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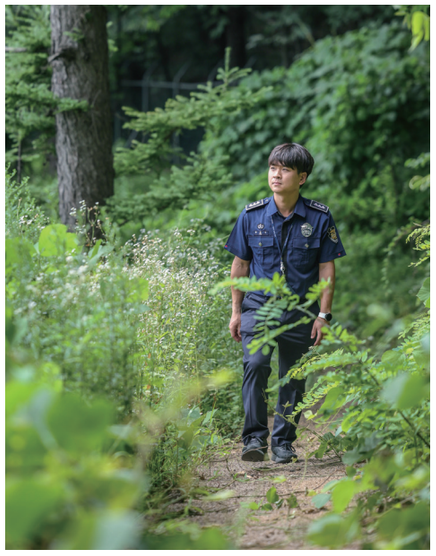

수용자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몸이 아프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건 수용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제한된 자원과 복잡한 절차로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은 필수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질이 떨어지는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정부교도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올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2차 전문의료기관('일심 재단 포천우리병원', 16개 진료과목)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의정부교도소는 이번 협약으로 수용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용자 의료 서비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의정부교도소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건강 관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정부를 보살피는 의정부의 터줏대감

의정부교도소는 틈틈이 지역사회와의 교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3개 단체를 지원했다. 또한, 착한가격 업소 이용 릴레이에도 동참하고, 늘픔(대안)학교, 회룡중학교, 신한대학교 학생들을 초대하여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신입실을 확장 이전하는 것이다. 현재의 신입실은 좁은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의정부교도소는 신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신입실을 이전하여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현 신입실 자리는 직원 복지의 공간이나 교육 및 회의 용도로 활용하여 공간 활용의 최적화를 이룰 계획이다.

경기 북부의 유일한 교정기관이라는 남다른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내부 개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교정 서비스와 공공의 신뢰를 구축해가는 의정부교도소.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지금 이 자리에 더 깊이 단단한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희망을 이야기하다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

교도소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와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을 겪게 된다. 2020년 설립된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수용자와 교도관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글 박도근 **사진** 홍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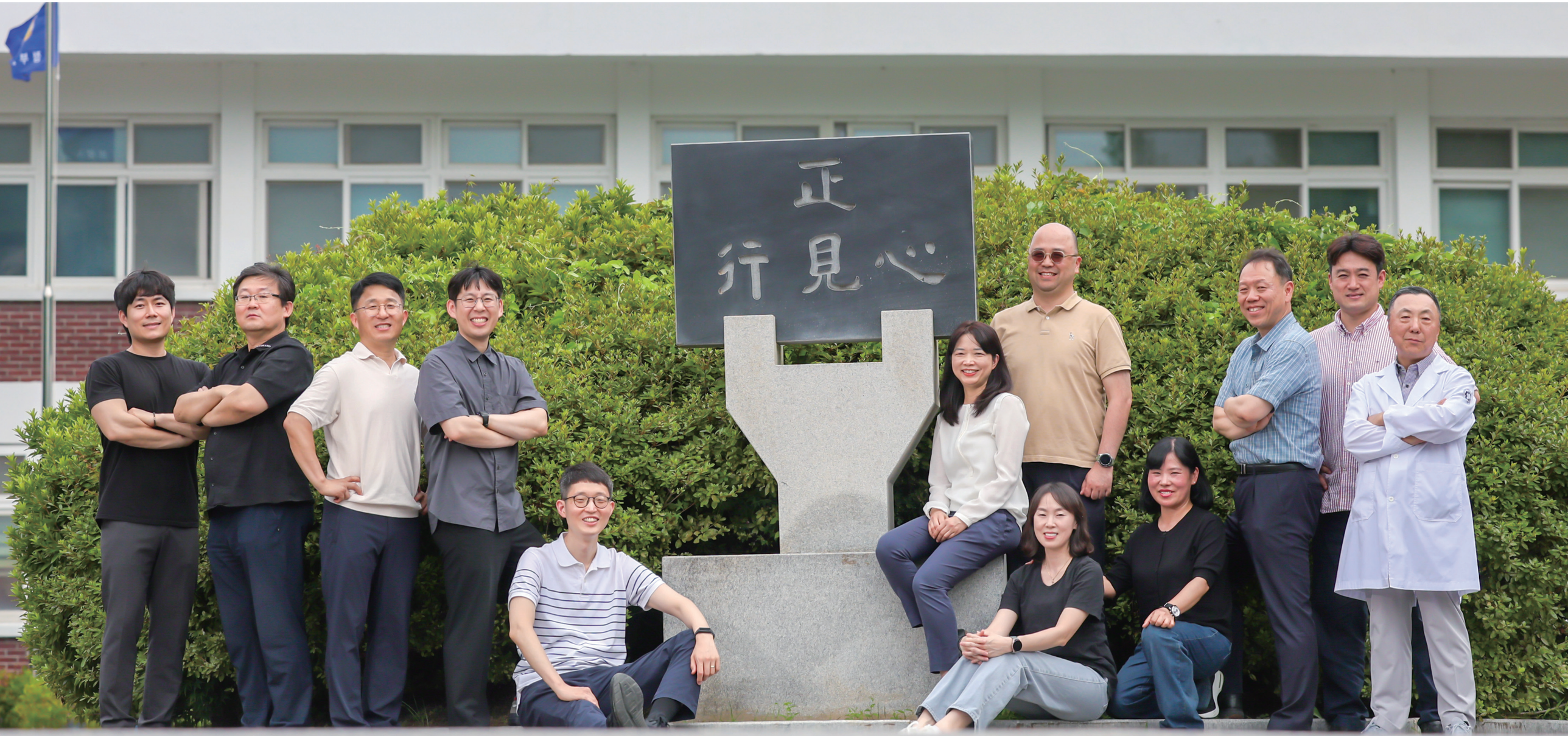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제공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용자의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위해 설립됐다. 심리치료과 구성원은 과장(교정관), 정신건강 전문의(과학기술 서기관), 전문 상담 팀장(교감), 심리치료 팀장(교감) 그리고 팀원들로 다수가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 문성웅 과장은 “심리치료과는 주로 성폭력 사범이나 마약류 사범, 아동학대 사범 등 이수 명령이 부과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범죄 재발 예방과 안정적인 수용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수용자의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 하고 있다.”고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이렇듯 심리치료과는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해 수용자의 내면 변화를 이끌어 내고, 외부 전문가와 상담 사례 회의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심리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도 빼놓을 수 없다. 심리치료과는 직원들의 심리적 상태를 기기의 도움을 받아 진단하기도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맥파 검사’와 ‘뇌파 검사’다. 맥파 검사는 심박 변이성을 측정하여 스트레스 수준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스트레스 반응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뇌파 검사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분석하여 정신적 상태와 뇌 기능을 진단하고 방법이다. 이러한 기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수치가 높게 책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에 상태를 고지한 후 회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수용자와 직원 모두를 위한 심리적 안식처

심리치료과의 업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건 수용자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도소 내 직원들도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미지정과 조사징벌사동 담당이나 수용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다. 이런 직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 또한 심리치료과가 해야 할 일이다. 덕분에 직원들에게도 심리치료과는 안식처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직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우울, 불안, 직무 소진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직원들이 다시 이전의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 상담’과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 ‘직무 소진 예방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웅 과장은 심리치료과는 수용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다양한 심신 케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용자의 마음과 교정의 경계에서

의정부교도소 내 모든 사람의 심리상태에 촉각을 세우며 일하고 있는 심리치료과. 그러다 보면 심리치료과 직원도 알게 모르게 고충을 겪을 수 있다.

“교정직 공무원이라면 수용자를 관리, 감독하는 동시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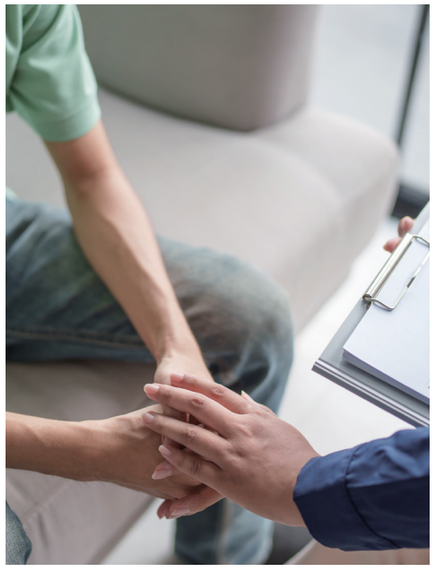

심리치료과에서 일하다 보면 이중적인 역할에서 오는 갈등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용자의 마음을 알아봐 주고 믿어주는 상담자가 되어주다가도 때로는 수용 생활의 한계를 알려주고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도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성웅 과장은 이런 고충에 대해 "우리는 마치 울타리 같다"라며 "수용자가 울타리를 넘어가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수용 받으며,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4년간의 노력,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횟수로 이제 4년.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로 수용자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심리치료과의 노력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된 수용자들이 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문성웅 과장은 힘주어 말했다.

"교도소에 입소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한 수용자가 생각납니다. 첫 상담 때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여 상담에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담을 하면서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지 않고,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의 역할도 하는 등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상담의 중요성과 효과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리치료과는 단 한 명의 수용자라도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독 물질에 취약한 수용자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카모마일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과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실효성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며 내실을 다져갈 계획이다. 모든 수용자가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과 변화를 추구해 가는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교정 행정에 심리치료과가 훌륭한 표본이 되기를 기대한다.

Interview 심리치료과 **문성웅** 과장

"여러분들이 있기에 삭막한 교도소에 희망이 자라납니다"

심리치료과가 의정부교도소에 신설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부서의 특성상 눈에 보이는 성과나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아 그동안 힘든 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사·징벌자, 자살·자해 시도자,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남는 시간에는 심리 상담과 치료에 대해 공부하며, 성장하기 위해 정진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직원들이 있기에 교도소라는 삭막한 환경에서도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필사를 통해 누리는

마음의 휴식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등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특별한 휴가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며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단순하고 부담 없는 휴식을 추구한다. 오롯이 좋은 글귀 베껴 쓰기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필사는 이러한 취향을 가진 이들에게 최고의 휴식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글 송유진 문화칼럼리스트

스마트폰 대신 펜을 잡는 사람들

필사(筆寫)는 어떤 글이나 책을 읽은 뒤 마음에 와닿는 문구나 문장을 직접 베껴 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필사가 마음 안정을 위한 휴식법이자 취미로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SNS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사 활동을 인증하는 '#필사스타그램' 게시물이 인스타그램에만 11만 개(2024년 7월 말 기준)에 달하고, 책 속의 좋은 문구나 명언을 직접 필사해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것만으로 팔로워를 1만 명 이상 모은 계정들이 꽤 많다. 핵심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16~24세인 틱톡에서까지 필사 관련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다.

필사의 인기는 서점가에서도 발견된다. 최근 서점에는 다양한 종류의 필사책, 일명 라이팅북이 출간되고 있으며, 베스트셀러에까지 등극했다. 몇 년 전 힐링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던 컬러링북의 뒤를 라이팅북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 온라인 서점은 필사하기 좋은 책 속의 구절을 일주일에 두 번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주는 '문장 구독 서비스'를 여름 한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필사하기 좋은 책부터 펜, 노트 등 필사할 때 필요한 용품들을 함께 큐레이션 해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의 자판으로 글을 '치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필기구로 글을 '쓰는' 필사 문화의 인기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는 행복

과거에는 주로 손 글씨 연습이나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의 필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던 필사가 지금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마음 치유법이자 취미 활동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손을 움직임으로써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복적인 동작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꾸준하게 필사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필사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마치 명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자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필사는 효율이 떨어지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뇌 전문가들은 손 글씨가 인지능력과 사고력, 학습 능력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한다. 쓰는 행위가 언어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두정엽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 필사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디지털 디톡스와 도파민 디톡스에도 효과적이다. 책을 읽고 인상적이었던 문구들을 한 자, 한 자 천천히 써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와 멀어지게 되어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불어 현재의 순간에 더욱 집중하게 되므로, 평소보다 좀 더 여유 있게 나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처럼 필사는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만큼 도움 되는 점이 많은데, 훌륭한 인물들이 쓴 글을 직접 따라 써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가 되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게 된다는 점도 큰 효과 중의 하나다. 자신이 닮고자 하는 인물의 생각이나 태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좋은 기회이므로 잘 활용해 보자.

지금 가장 끌리는 책부터 욕심 없이 시작하라

필사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책을 필사할 것인지, 필사하기 좋은 펜은 무엇인지,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베껴 쓰는 통필사를 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나 감동적인 문장을 부분적으로 베껴 쓰는 부분필사를 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필사족들은 원칙이 없다고 강조한다. 필사는 본인이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사할 책은 장르 불문하고 현재 자신에게 가장 끌리는 책,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가장 적합한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책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신문의 칼럼으로 시작해도 괜찮다.

필사를 매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된다.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베끼는 통필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자신에게 영감을 준 문장이나 생각을 자극하는 문장 등을 베껴 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씨를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틀려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글씨를 써 내려가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이 중요하며, 그 즐거움이 있어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전근대 한국행형사(3)

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목차

제1편 상고사(상고시대부터 삼국통일시대까지)
제2편 중고사(고려시대)
제3편 근세사(조선시대)
제4편 근대전기(구한국정부시대)

나. 체형(體刑)

체형이란 범죄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자극(刺戟)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건강을 해하고,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보복적 제재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형벌에도 형전(刑典)에 정해진 것과 또는 법외의 것이 있는 것은 사형과 마찬가지다. 체형에 대해 형전에 근거를 가지는 것은 자자형(刺字刑), 장형(杖刑) 및 태형(笞刑)이 있다. 그밖의 것은 모두 법외의 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의형(劓刑) 및 월형(刖刑), 단근율(斷筋律) 등의 종류가 있었다. 그 각 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자형(刺字刑)

본 형은「순전(舜典)」의 소위 묵형(墨刑)으로,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형(刑)이다.「고려형법」에서 '도둑질을 범한 자가 유배지로부터 도망한 자는 형결(刑決)로 삽면(鍤面)[1]하고, 먼 육지의 주현(州縣)에 유배한다.'라고 한 이후의 일이지만, 독립된 형으로서 명확하게 규정되게 된 것은「경국원전(經國原典)」상에 실려진 후이다. 본 형은 일명 '묵자지법(墨刺之法)'이라고도 부르고, 범죄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동시에 장도죄(贓盜罪)의 전과자인 것을 표식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경국원전(經國原典)」에는 '강도로 죽지 않은 자는 율문에 따라 논죄한 뒤에 '강도'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두 번째 죄를 범하면 교형(絞刑)에 처한다. 도둑의 우두머리는 율문에 따라 논죄한 뒤 '강도'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국경지방으로 전사사변(全家徙邊)[2]하며, 세 번째 죄를 범하면 교형(絞刑)에 처한다.'라 규정하여 강도와 도둑의 우두머리에 대해서만 적용하였고 절도범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대명률」에 따라 감수관리(監守官吏) 또는 상인(常人)으로서 관(官)의 창고에서 돈과 곡식을 훔친 자,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자와 절도를 한 자에게도 적용했다. 즉 감수관리(監守官吏) 또는 상인(常人)으로서 관의 창고에서 돈과 곡식을 훔친 자에게는 우소비박(右小臂膊)[3] 상에 '도관(盜官) 앙(糧), 전(錢), 물(物)'의 세 글자를 자(刺)하고, 한낮에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자에게는 초범은 우소비박 상에, 재범은 좌소비박 상에 '절도' 두 글자를 새겼다. 그리고「대명률」에는 자자(刺字)의 촌법(寸法)으로 '글자마다 각각 사방이 1치 5푼이고, 획마다 각각 너비가 1푼 5리이며, 위로는 팔꿈치를 지나지 않고 아래로는 팔뚝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제한을 정하고 있었기 때

1) (역자주) 삽면(鍤面) 얼굴의 살을 따고 흠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벌.
2) (역자주) 전사사변(全家徙邊) 죄 지은 사람을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
3) (역자주) 우소비박(右小臂膊) 오른쪽 작은 팔과 어깨.

문에 조선에서도 이에 따르고 있었다. 또한 조선에서는 본형을 하나의 형으로서 보고 있었지만, 모법(母法)인 「대명률」에서는 '소정의 형을 과하는 외에 자자(刺字)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여 이것을 형(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절도를 범한 자를 표식할 목적에서 부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 같다. 이 형은 1740년(영조 16년) 5월 신하들로부터 '경자(黥刺)의 법은 팔에는 새겨도 그 얼굴에 새기지 아니하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제껏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형구(刑具)는 법조(法曹)에 있고 등등.'이라고 진언(進言)하고 있어 얼굴에 새긴 사실은 없는 것처럼 말하였지만 고려시대 이후 '삽면(鈒面)'이라 하고 얼굴에 새긴 예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진언(進言)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왕은 이 진언에 대해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얼굴이나 팔이나 하나하나마다 똑같고 다치게 한 후 개과천선(自新)한다면 선량한 평민(平民)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한 후 지체 없이 승지(承旨)로 하여금 추조(秋曹)[4]에 가서 그 형구를 남김없이 가져오게 하여 불사르고, 또한 각 도(道)에 있는 것은 관찰사(道臣)로 하여금 거두어 모아 불사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2) 장형(杖刑) 및 태형(笞刑)

장형(杖刑)과 태형(笞刑)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언제부터였는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서기 28년(고구려 대무신왕 11년)에 왕은 '십악(十惡) 중 율(律)에 비추어 처형해야 할 자 외, 다른 죄를 범하여 중장(重杖)[5]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체 속(贖)[6]을 거두어 들이라'고 명한 것에 의해, 그 무렵 이미 장형(杖刑)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당률(唐律)」에 의하기 이전에도 장형(杖刑)이 존재하였던 것이 『송사(宋史)』 상에도 있으며, 송사에는 '고려는 형(刑)에 참혹한 부과가 없고, 다만 악역(惡逆) 및 부모를 욕하는 자를 참(斬)하고 그 나머지는 장벌(杖罰)에 처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다고 한다.

태형(笞刑)은 그 무렵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장형(杖刑)과 태형(笞刑)이 형률 상 명확하게 실리게 된 것은 고려의 국운이 왕성할 때 모든 것을 당제(唐制)를 모방하여 만들고, 법률과 제도를 크게 정리한 때부터의 일이다. 「고려형법」에 태형(笞刑)은 10, 20, 30, 40, 50의 다섯 등급으로 장형(杖刑)은 60, 70, 80, 90, 100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또한 그 속죄(贖罪)의 방법은 태형(笞刑)에 대해서는 장 6 내지

4) 형조를 말함.
5) (역자주) 중장(重杖) 몹시 치던 장형.
6) (역자주) 속(贖) 죄에 대한 벌을 과하는 대신 재물이나 노력을 바치는 것.

장형(杖刑) | 사진 출처: 한국학 중앙연구원

10 및 속동(贖銅) 한 근 내지 5근으로 한다. 장형은 장 13 내지 20 및 속동(贖銅) 6근 내지 10근의 범위내에서 각 절산(折算)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장형(杖刑)과 태형(笞刑)의 구별은 태(笞)는 죄가 가벼운 자에게, 장(杖)은 죄가 무거운 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그 제식과 집행방법을 달리하고 또한 수형자가 받는 고통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즉 제식은 촌법(寸法)에 크고 작음이 있고, 집행방법은 그 횟수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杖)의 종류에서 척장(脊杖)이 있는 것에서 생각하면 장(杖)을 신체에 가하는 것은 반드시 엉덩이나 다리뿐만 아니라 배부(背部)에도 시행되었고, 그리고 받는 고통도 동일하지 아니하였다. 그로부터 내려와 조선시대에 「대명률」에 의거하게 되고나서부터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장형(杖刑)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徒)·유형(流刑)에 대해서는 반드시 병과하는 주의를 취하고, 척장(脊杖)을 삭제한 점이 달라졌다. 이와 같이 형률의 변천이 있었지만 형정(刑政)의 문란으로 인한 태와 장을 남용하는 폐단은 조금도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점점 더 그 정도를 더해갔다고 한다.

태장형의 폐해에 관해 효종왕 때에 장령(掌令)[7] 송시열(宋時烈)이 상소를 하였다. 거

7) (역자주) 장령(掌令) 사헌부의 정사품 벼슬.

기에는 '수령이 과실이 있는 때는 결장(決杖)[8]하고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한 예가 있는데 이것은 사대부에 대해 지나치게 예를 잃은 것입니다. 처음 이 형을 가할 때는 수령(守令)은 마땅히 치욕을 느끼고 돌아왔지만, 지금은 편안하게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오직 관직을 잃지아니한 것만을 다행으로 기뻐합니다. 무릇 수령에 해당하는 자는 한 고을의 풍속과 교화를 주재하는 자입니다. 그 주재자(主宰者)인 수령의 무치(無恥)[9]가 이와 같이 되기에 이른 것은 백성을 인도하는데 욕(汚)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폐제(幣制)를 혁파(革罷)한다는 것은 시대의 폐습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에 급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1673년(현종 14년)에 광주(廣州) 부윤(府尹) 이세화(李世華)가 검전(檢田)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대해 결장(決杖)의 명이 있었을 때, 판의금(判義禁)의 김수항(金壽恒)이 왕에게 '장형(杖刑)을 사대부에게 가하는 것은 한낱 노예로서 대우하는 것으로 택하는 바가 아닙니다. 원래 선비는 마땅히 죽여야 할지언정 치욕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세화의 죄는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태장(笞杖)을 몸에 가한는 것은 그만두고, 다른 형으로 대신하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상소한 바, 왕은 크게 이를 살펴 따랐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는 더 있었지만 사대부에 대해서만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을 폐지하는 데에 이르지는 않았다. 아울러 그 후 관리 즉 양반에 대해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때에는 그 명예를 중히 여겨 서민에 대한 것처럼 엉덩이에 향해 시행하지 아니하고 초달(楚撻)[10]이라 하여 나무의 작은 가지로 양다리의 앞 정강이를 때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였다. 그것이 나중에는 대리인(代人)으로 집노비를 보내 태형(笞刑)을 받도록 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에 예가 되어 나중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대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관대하게 하게 되었지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남용의 폐해가 점차 심해졌고, 그결과는 형구의 형태와 모양 및 사용방법에도 법식에서 멀어진 것이 생겨나 족장(足杖) 또는 원장(圓杖)이라고 불리는 법외의 형구도 공공연히 행해졌다. 또한 군율로 처단하는 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곤봉을 보통 범인에게 남용하는 등의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숙종왕은 하교하여 '조종(祖宗)이 정한 법에는 형장(刑杖), 신장(訊杖), 태장의 제(制)는 각 대소경중(大小輕重)의 구별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 차례 병란(兵亂)을 겪어 법제가 추락하여 문란하고, 구차하게도 관위(官威)가 있는 자는 제멋대로 남용하며 형장으로 노여움을 푸는 도구로 하기 위해 애써 그 장(杖)을 크게 하게 되었다. (중략) 따라서 이후 태장(笞杖)을 사용하는 데는 각 법식을 준수하고 남(濫)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또한 군율로 처단하는 이외에 자에게 곤(棍)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엄명하였다. 이와 같이 형구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조왕은 장혈(杖穴)을 주(鑄)[11]하여 각 도(道)에 반포하여 형구의 통일을 도모하고, 또한 제사(諸司)에 명하여 법외 형구의 사용을 엄금하였다. 또 이어서 정조는『흠휼전칙(欽恤典則)』을 제정하고 태형과 장형을 바로잡았지만 남형의 폐단은 여전히 고쳐지지 아니하였다. 순조왕 때 정약용이 당시의 탐관오리(貪官汚吏)를 경책(警策)하기 위해 저술한『목민심서(牧民心書)』중에서 장형(杖刑)의 집행에 관한 한마디에 '기질이 거친 지방관은 수인(囚人)을 장곤(杖棍)할 때마다 어찌하여 힘을 주어 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고, 뒤쪽에서 집장(執杖)하는 졸을 때려 집장하던 졸이 졸도하여 죽은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 행형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고종왕 때 제정된『대전회통』중에서 "군무(軍務) 외에 곤장을 사용한 자, 수령으로서 둥근 곤장을 사용한 자, 개인 집에서 형벌을 시행한 자는 남형율(濫刑律)로 논한다.', '하루에 곤장은 100대를 넘지 않게 한다.' 등의 규정을 마련한 것과 같은 것도 역시 당시 행형의 반면(反面)을 말한다.

3) 의형(劓刑) 및 월형(刖刑)

본 형은 범인의 코를 베고, 발을 자르는 형이다. 본 형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형으로 고대부터 행해져 왔던 것이지만, 형전(刑典)에는 실려있지 아니하는 법외 형의 일종이다. 실제로는 본 형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불명확하고, 집행방법도 알 수 없다. 세조왕 때 본 형은 참혹(慘酷)하기 비할 데 없는 악형(惡刑)이라고 하여 1444년에 이를 엄금했다고 하는 것만이 역사상에 전해지고 있다.

4) 단근율(斷筋律)

본 형은 범인 손의 힘줄을 자르는 형이다. 본 형도 법외의 형으로 한때 도범(盜犯)이 떼지어 나왔을 때, 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생각해 낸 것이었지만, 1510년(중종 5년)에 왕은 가까운 신하에게 단근(斷筋)의 율(律)의 가부에 대해 묻자, 김수동(金壽童)이 이에 대해 말하기를 '단근(斷筋)은 곧 육형(肉刑)으로 이전에 도적이 홍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것은 일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오래 법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자 이에 왕은 조속히 명하여 이를 폐했다고 한다.

---

8) (역자주) 결장(決杖) 죄인에게 곤장을 치는 형벌을 집행하던 일.
9) (역자주) 무치(無恥) 부끄러움이 없음.
10) (역자주) 초달(楚撻)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림.
11) (역자주) 주(鑄) 쇠를 부어 만듦.

5) 그 밖의 남형

법외의 형으로 언제부터라고 할 것 없이 행해져 온 형에는 아래 기록과 같은 잔혹한 형이 있었다. 즉, (1) 곤장의 모서리로 사람의 정강이 뼈, 혹은 발꿈치를 치거나 또는 사람을 형판(刑板)에 묶고 곤장의 양 끝으로 엉덩이 피부를 마찰하는 벗기는 형, (2) 화약심지로 발가락에 끼우고 불을 태우는 형, (3) 결박하여 거꾸로 매달고 잿물을 콧구멍에 붓는 형, (4) 사람의 정강이를 거핵기(去核機)에 넣고 미는 데에 보라목(甫羅木)으로 하거나 또는 줄(繩)로 양발의 엄지발가락을 꼼짝 못하게 바싹 얽어매고, 이에 좁게 삼릉목(三稜木)으로 하여 거꾸로 매달고 그 줄을 때리는 형 등이다. 이러한 형은 어느 것이나 참독(慘毒)이 심하였기 때문에 1740년(영조 16년)에 엄명하여 시행을 금지하였다.

다. 유형(流刑)

유형제도 기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백제 형률 중에 도둑은 유형에 처하는 법문(法文)이 있었던 것과 또 신라 504년(지증왕 5년)과 520년(법흥왕 7년)에 율령(律令)을 반포한 적이 있었으며, 그 무렵 이미 구족(九族)을 옮기거나 혹은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는 형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신라 668년(문무왕 8년) 고구려의 천남건(泉男建)을 잡아 검주(黔州)로 유배한 사실, 그보다 멀리 내려와서이지만 신라 828년(흥덕왕 3년)에 막산주(漠山州) 표현(瓢縣)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요사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자를 먼 섬에 거처하게 했던 사실이 있었던 일 등에 의해 보면 삼국시대에는 이미 유형(流刑)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모든 일을 당제(唐制)를 모방하게 되고나서는 「고려형법」에도 오형제(五刑制)를 채용하여 유형(流刑)을 그 하나로 정하고 2,000리, 2,500리, 3,000리의 세 등급을 두었으며, 역시 다른 형과 마찬가지로 수속(收贖)을 허용하는 제도를 정하였다. 즉 유(流) 2,000리는 장(杖) 17, 배역(配役) 1년, 속(贖) 동(銅) 80근(斤), 유(流) 2,500리는 장杖) 18, 배역(配役) 1년, 속(贖) 동(銅) 90근, 유(流) 3,000리는 장(杖) 20 배역(配役) 1년, 동(銅) 100근으로 각각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유형(流刑)은 따로 죄질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었다. 다만, 도형(徒刑)을 과하는 것이 너무 가볍고 또한 사형으로 하는 것은 무거움이 지나치기 때문에 중간형을 필요로 하는 죄상(罪狀)의 자에 대해서만 이를 과하였다. 그리고 적용하는 개개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 예를 들면 고려형법 중 대악조(大惡條) 제5에 '형의 아내 및 남편의 동생을 때린 것이 손과 발인 때는 장(杖) 70, 사지(四肢)와 머리털 이상인 때는 장(杖) 90, 다른 물건을 상하게 한 때는 도(徒) 1년, 치아 1개가 부러졌을 때는 도(徒) 1년 반, 2개 이상인 때는 도(徒) 2년, 손근(損筋) 이상인 때는 도(徒) 2년 반, 절지(折枝) 이상인 때는 유(流) 2,000리, 2개 사건 이상인 때는 유(流) 3,000리,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교(絞)한다. 등등'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또한 그 금령조(禁令條) 제4에 '사사로이 저울을 만들어 시중에서 사용하여 증감이 있을 경우 1척(尺)이면 장(杖) 60, 1필(匹)이면 장(杖) 70, 2필(匹)이면 장(杖) 80, 3필(匹)이면 장(杖) 90, 4필(匹)이면 장(杖) 100, 5필(匹)이면 도(徒) 1년, 10필(匹)이면 도(徒) 1년 반, 15필(匹)이면 도(徒) 2년, 20필(匹)이면 도(徒) 2년 반, 25필(匹)이면 도(徒) 3년, 30필(匹)이면 유(流) 2,000리, 35필(匹)이면 유(流) 2,500리, 40필(匹)이면 유(流) 3,000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죄질 여하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그 피해 정도에 의한 무겁과 가벼움에 따라 과하였다.

또한 유배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도(王都)를 기점으로 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그 멀고 가까움, 춥고 더움, 교통의 편함과 불편함 등을 고려하고 이를 죄상(罪狀), 그 밖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배지를 지정하였다.

유형(流刑)의 기원은 기원전 중국에서 형벌의 유면(宥免)[12]으로 사용된 것으로, 즉 사형을 집행(刑殺)해야 하나 용서하고 이를 멀리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요컨대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유(流)라고 일컬었다. 북제(北齊)시대 이후 유(流)를 오형의 일종으로 하고 나서도, 유(流)에 대한 관념은 옛날과 변함이 없었다. 조선에서도 역시 이와 같았고, 고려형법상 형벌로 정해지기고 나서도 유(流)는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추방하는 뜻 이외에는 없었다. 따라서 유배지에 해당하는 장소는 반드시 섬지방에 한정하지 않고, 유지도 편비(偏鄙)의 지방은 모두 유배지로 하였던 것 같다. 고려형법 도적조(盜賊條) 제5에 '도둑질 한 자가 귀양지에서 도망하는 자는 형결(刑決)로 삽면(鈒面)하여 먼 육지 주현(州縣)으로 유배한다'. 라 하고, 또한 제6에는 '모든 투화인(投化人)[13]의 도둑질 한자는 남쪽의 수로(水路)에 유배하고 주현(州縣)으로 오가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유(流)에는 바다와 육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섬에 유배하는 경우에는 무인도(無人島)에 유배하는 것과, 유인도(有人島)에 유배하는 구별이 있었다. 이것은 1034년(고려 덕종 3년) 하교 중에 '집주인을 때리거나 모살인(謀殺人), 강도한 자는 장(杖)과 유(流) 무인도로 한다. 종범인 강도상인(强盜傷人)은 장(杖)으로 하고 유(流) 유인도로 한다. 이하 죄를 숨기는 자는 유인도로 한다'. 라고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죄가 중한 자를 무인도에 유배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

12) (역자주) 잘못을 용서하고 풀어줌.
13) (역자주) 덕화를 사모하여 투항한 사람.

유형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명나라 제도에 의한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고려형법에 정해진 것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 후 여러 번 형전(刑典)이 개정되었으나 「대명률」이 규정하는 바, 즉 유(流)는 2,000리 장(杖) 100, 2,500리 장(杖) 100, 3,000리 장(杖) 100의 세 종류로 '유(流)는 사람이 중죄를 지었으나 차마 형살(刑殺)할 수 없어서 먼 지방으로 떠나보내 한평생을 마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0리부터 3,000리까지 모두 3등급이며, 500리마다 1등급을 더한다.'를 원칙으로 한 점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또한 정조왕 때 오형도(五刑圖)를 반포하고 오형의 내용을 명확하게 했을 때에도 변화는 없었지만, 1894년에 이르러 유형(流刑)의 등급을 나눔과 가감(加減)의 예를 제정한 결과, 비로소 유형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유형은 유배지까지 거리의 원근에 따라 그 경중을 나누었던 바, 오래전부터의 법식을 형기제(刑期制)로 개정하여, 유배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경중을 나누었다. 즉 유형을 1등 유(流) 종신, 2등 유(流) 15년, 3등 유(流) 10년의 세 종류로 하고, 종래 유형수에 대해서는 유(流) 3,000리인 자는 유(流) 종신, 2,500리인 자는 유(流) 15년, 2,000리인 자는 유(流) 10년으로 각각 이를 변경하였다.

유형의 이정제(里程制)를 기간제로 변경한 것은 원래 이정제는 무기한이었고, 은사(恩赦)나 양이(量移)라도 시행하지 않는 한은 영구히 귀환의 기약도 없이, 결국 유배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게 된 것도 있었지만, 주로 이정제는 거리 계산에 불편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로부터 유형(流刑)을 언도한 경우에 '유 몇 천리'로 지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 '모 지방에 유배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직접 유배할 지명을 정하였다. 율령(律令) 상 유(流)를 2,000리 내지 3,000리로 정한 것은, 중국 제도를 그대로 조선으로 옮겨 온 것으로, 영역이 좁은 조선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움은 알고 있었다. 더욱이 조선의 1,000리는 일본의 약 100리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 3,000리라 일컫는 것도 300리이기 때문에 국경(國境)에 유배하는 경우 절대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행 상 불편과 곤란이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만약 이정(里程) 대로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을 크게 우회(迂回)하고 경유한 각 지방 사이의 거리를 합하여 이를 정하였다. 즉 왕도에서 순로(順路)를 거쳐 유배지에까지 쭉 곧은 거리가 아니라, 구불구불 우회하여 보행한 것을 모아서 산정한 거리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고치게 한 것도 개정의 한 이유였다.

그리고 또 유형은 예로부터 죄질(罪質)에 관계하지 않았지만, 유형의 등급 나눔과 가감례와 동시에 제정된 「징역처단례」에서는 유형은 국사(國事)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국사범(國事犯)[14]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 후 1896년에 이르러 제정된 「형률명례」에 의해 다시 형명(刑名)이 아주 달라졌지만 유형(流刑)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다. 다만, 형의 범위를 현저하게 확장하여 종신, 15년, 10년, 7년, 5년, 3년, 2년 반, 2년, 1년 반, 1년의 10등급으로 나누었다.

유형(流刑)을 일컬음에 옛날부터 역사상의 공문서에 '배(配)', '적(謫)', '찬(竄)', '방(放)', '천(遷)', '사(徙)' 등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문자에는 특별한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가려 씀에 따라 어떠한 구별이 있는 것처럼도 생각된다. 예를 들면, 조선 태조 즉위 때의 교문(敎文)에 '우현보(禹玄寶), 이색(李穡), 설장수(偰長壽) 등은 직첩(職貼)을 거두어 폐하고 서인(庶人)으로 하여 해상에 사(徙)하여 종신 멀리하도록 하고, 우홍수(禹洪壽), 강준백(姜俊佰), 이종인(李宗仁), 이종학(李鍾學) 등은 직첩(職貼)을 거두고 결장(決杖) 100,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유(流)하며, 이종선(李鍾善), 유향(柳珦), 이첨(李詹) 등은 직첩(職貼)을 거두고 결장(決杖) 70, 하방으로 유(流)하고, 모모 등은 직첩(職貼)을 거두고 하방에 방치(放置)하며, 성석린(成石璘) 등은 각자의 본향에 안치(安置)하라.'라고 하였다.

또한 근년(近年)의 예이지만 고종 당시의 『일성록(日省錄)』 중에 '죄인 김윤식(金允植)의 탕서(蕩敍) 안치(安置)를 명한다. 죄인 이용원(李容元)은 배(配)한다. 죄인 권봉희(權鳳熙), 안효(安孝), 여규형(呂圭亨) 등은 방(放)한다.'라고 한 것처럼 어떤 자에 대해서는 사(徙)라고 하고 어떤 자에게는 유(流)라 하며, 또 어떤 자에게는 배(配)라 하거나 또는 방(放)이라고 하여 가려 씀을 하고 있는 바로부터 보면 혹은 신분에 따라, 혹은 장소에 따라, 혹은 형벌에 해당하는 경우와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와의 구별에 따라, 이러한 가려 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된다. 그렇지만 형률 상에는 유(流)라고 일컬었을 뿐으로 어떠한 구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넓은 의미의 유(流)로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유형 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 형사제재로 처분되는 자에게는 형률(刑律)에 의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형률에 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행정처분으로 나온 경우, 국왕의 기휘(忌諱)[15]에 부딪쳐 배척되거나 또는 당시 권세자(權勢者)의 전제(專制)에 희생이 되거나, 혹은 정쟁(政爭)에 패하여 순응한 경우 등과 같은 것으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진 것이 아니지만, 이들을 총칭하여 똑같이 유배자 또는 유형인이라고 하였다.

유형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육지에 유배하는 경우와 섬지방

14) (역자주) 국사범(國事犯) 정치범.

15) (역자주) 기휘(忌諱) 꺼리어 싫어함.

에 유배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섬지방에 대해서도 유인도에 유배하는 경우와 무인도에 유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밖에 안치(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충군(充軍)이라 일컫는 방법이 있다.

보통은 유배지에 보내진 채 그곳에 방치되었으며 특별히 일정한 장소에 구속하도록 하는 일은 없었지만, '안치(安置)'라 불리는 것은 유배지에서 다시 장소를 지정하고 그곳에 유거(幽居)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위 폐문(閉門)이다. 그리고 이 안치(安置)에 처해진 자는 왕족 또는 고위 고관인 자에 한정되었으므로 서인(庶人)은 물론 지위가 높지 않은 관리에게는 시행되지 않았다.

안치 처분은 많은 경우는 유배지에서 하지만 죄가 무거운 자는 '절도안치(絶島安置)'에 처하고, 가벼운 자는 '본향안치(本鄕安置)'에 처하였다. '절도안치'는 새도 다니지 않는 절해(絶海)의 외로운 섬으로 하고, 독사독충 등이 서식하는 장소에 안치하는 것이다. 「속대전」 중에 '절도(絶島)로 하고 간수 없는 곳 및 강화부(江華府)에는 죄인을 유배해서는 안되거나 또는 흑산도(黑山島) 등 극악의 지방에는 왕의 특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정배(定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는 것은 최악의 절도(絶島)라 일컬어지고 있는 흑산도와 같은 장소에는 함부로 유배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왕의 뜻에서 이러한 제한을 마련한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마음대로 절도(絶島)에 유배 처분을 시행한 경우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같다. 1676년(숙종 2년) 하교에 '지난번에 대신(大臣) 이선행(李善行)은 좋은 땅에 골라 보낸다고 말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에 따른 것이다. 무릇 죄인을 귀양보내는 것은 바로 살리려는 뜻이다. 그런데 근래에 의금부에서 유배지를 좋아함과 미워함에 전적으로 맡기니 매우 한심하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특별한 전교 외에 만약 나쁜 곳을 골라 보내면 의금부 당상관은 반좌율(反坐律)[16]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라.'라고 하는 것에 의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본향안치(本鄕安置)'라 일컫는 것은 본인이 거주하는 고향에 가두어 두는 것으로 두 종류가 있었다. 처음부터 본향안치(本鄕安置)에 처하는 경우와 일차 섬 지방에 유배시켰다가 탕척(蕩滌)[17]에 따라 유배를 풀고 본향으로 귀환시켜 그 곳에서 안치에 처하게 하는 경우이다. 즉 순수한 '유(流)'는 아니지만, 유(流)에 준하는 경우이다.

전기의 조선 태조의 교문 중에는 '성석린(成石璘)은 본향에 안치하도록 하라.'라고 한 것은 즉 전자에 해당하고 1894년(고종 갑오년) 김윤식(金允植)에게 명한 탕서안치(湯敍安置)는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한 본향안치와 비슷하여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구한말 참정대신(參政大臣)인 한규설(韓圭卨)이 을미정변(乙未政變) 때문에 관이 해직되어 3년의 유(流)에 처해졌지만, 특별히 왕명에 의해 먼 섬으로 배적(配謫)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자택에서 유형(流刑)으로 복역하고 그 동안 근신유거(勤愼幽居)하고 '두문불출(杜門不出)'이라 일컬었던 적이 있었다. '위리안치(圍籬安置)'는 안치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즉 유배지에서 일정한 위장(圍障)을 설치하고 그 안에 유폐하였다. 위리안치는 일명 '가극안치(加棘安置)'라고도 일컬었다. 그것은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를 주위에 심어서 울타리로 하고, 그 안에 유폐하였기 때문이다. 탱자나무는 전라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위리안치(圍籬安置)'는 전라도 섬 지방에서 많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조선 경종왕 때 소위 임인(壬寅)의 화(禍)[18]로 인해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을 거제도로, 영부사(領府事) 이이명(李頤命)을 남해로, 판부사(判府事) 조태주(趙泰朱)를 진도로 각 유배하고, 다시 삼사(三司)에서 절도에 안치시킬 것을 청하자 왕은 이에 따라 거듭 명하여 위리(圍籬)하도록 하였다.

또한 '충군(充軍)'이라 일컫는 것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지방에 유배하고 그 변방을 수비하는 군(軍)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 밖에 유형의 일종으로 '천사(遷徙)'라 일컫는 것이 있다. 「대명률」에 정해진 바에 의한 것으로 고향마을을 떠나 천리 밖으로 옮기는 자로 소위 나라를 바꾸는 것이다. 즉 유형은 2,000리 이상이지만, '천사(遷徙)'는 1,000리 밖에 두는 것이다.

또한 법제 상에는 없는 형벌이지만, 유형과 비슷한 처분이 있다. 그것은 '이향(移鄕)'[19] 또는 '방축전리(放逐田里)'[20]라 일컫는 것으로, 즉 거주를 전리(田里)로 옮기게 하고 거주지 또는 왕도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545년(인종 원년) 청주인(淸州人)으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살인을 한 자가 있었는데, 이 자에 대해 사리(事理)에 용서해야 할 점이 있어서 섬으로 유배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만 '이향(移鄕)'에 처하라고 명한 적이 있었다. 또한 1565년(명종 20년) 윤원형(尹元衡)의 벼슬(爵)을 빼앗고 고향마을로 쫓아낸 일이 있었다. 이것이 곧 '이향(移鄕)' 또는 '방축전리(放逐田里)'이다.

그 밖에 범인인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 가족에 대한 형으로 유형(流

16) (역자주) 반좌율(反坐律) : 무고(誣告) 또는 위증(僞證)으로 타인을 죄에 빠지게 한 자에게 그 빠진 자와 동일한 형(刑)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률(刑律).

17) (역자주) 죄명을 깨끗하게 씻어 줌.

18) (역자주) 1721년(경종 1)에서 1722년(경종 2)사이에 일어난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의 대립으로, 신축(辛丑) 임인(壬寅) 양년에 걸쳐 일어났다 하여 신임사화라 하며 임인옥(壬寅獄)이라고도 한다.

19) (역자주) 이향(移鄕) 거주를 시골로 옮기는 형벌.

20) (역자주) 방축전리(放逐田里) 죄인을 서울에서 추방하여 시골로 돌려보내는 형벌.

刑)과 비슷한 형이 있다.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이라고 일컫는 것이 그것으로 즉 범죄인의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다. 본 율은 1744년(영조 20년) 하교에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전 가족에게 미치는 것은 결코 삼대법(三代法)을 세운 본뜻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라고 명하여 폐지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본 율에 의한 처분은 없어졌다고 한다.

원래는 유형(流刑)의 경중(輕重)은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의해서만 정해진 것으로 기간에는 제한이 없었다. 말하자면 완전히 무기한이었다. 그러므로 은전의 혜택을 입든지 또는 '양이(量移)'[21]에 의해 감형되어 귀환하는 것 외에는 영구히 유배지에 있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쳐야 했지만, 옛날에는 빈번하게 사유(赦宥)[22]를 시행하거나 그 밖에 오히려 '양이(量移)'를 시행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양이(量移)'라고 하는 것은 유배인이 다수가 된 경우에 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감형(減刑)을 실시하여 귀환하도록 한 것이다. 양이(量移)를 실시했던 것은 역사상에는 그다지 보이지 않으며, 다만 1207년(고려 희종 3년) 최충헌(崔忠獻)의 상소에 따라 각도 유배인을 양이(量移)하였고 그로 인해 방면된 자가 거의 300명에 달하였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가끔 시행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유배자 중 사면도 되지 않고 또한 양이(量移)에도 맡길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은 유배지에서 일생을 마치고 자손은 결국 섬 주민이 되어버려 유형자의 자손이 매우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섬과 같은 곳은 그곳 섬사람 거의 전부가 유형수의 자손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고려시대에 성종왕 때 최승로(崔承老)가 기록한 「시무28조(時務28條)」 중에도 '여러 섬의 거주민은 선대의 죄로 인해 바다 가운데에서 나서 자라고 생계가 매우 어렵다. 등등'이라고 유형자 자손이 섬 지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동정을 기울이는 문언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상태(情態)는 어느 시대에서도 항상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형수는 각 유배지로 보내 도착한 후에는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데, 때로는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었다. 즉 1284년(고려 충렬왕 10년) 왜구를 막기 위해, 여러 도(道)에 대해 유형수로 하여 배를 타고 왜구를 사로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여 준다는 취지를 발령한 적이 있었다. 이는원종왕 때, 일본 정벌에서 원(元)나라 군(軍)이 패하였기 때문에 원나라 세조는 고려에 명하여 전함을 수리하도록 하거나 또는 죄인으로 하여 해전을 익히게 하였으며, 고려왕으로 하여 이를 살피도록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만들어 낸 것이지만 좋은 방법으로 유형수의 이용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 후에는 유배지에 내버려진 채, 마음대로 보내놓고 그 보살핌은 섬 주민 또는 유배지 백성들이 이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로부터의 인습이었기 때문에 섬 주민에게 거의 의무로서 과하여져 있었고, 특별한 뜻도 들어있지 않았다. 유형수 중에는 하는 일 없이 거저 놀고먹으며,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도 있었으며,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여 자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섬사람의 자제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섬주민의 존경과 믿음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귀양살이(謫居) 중에 수양(修養)과 학문에 힘써, 한층 인물을 가꾸어 위대함을 더한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면 명종왕 때 윤원형(尹元衡)의 옥에 당하여 바른말을 하여 관직을 박탈당하고 사(死)에서 1등급을 감하여 진도에 유배된 노소재(盧蘇齋)와 같은 사람은 귀양 중에 있었던 것은 실제로 앞뒤 19년, 그동안 책을 저술하고 불교이론을 연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명해지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의 예로는 구한말 진도에 유배된 정만조(鄭萬朝)는 유배지에서 송오(松塢)라고 하는 유학자를 따라서 배웠고, 사면으로 다시 귀환하고 나서는 조선의 이름난 유학자로서 최고봉에 선 인물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그 한 예이다.

유형(流刑)은 은전을 받지 않는 한은, 언젠가 되면 자기 집이 있는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을지는 예측도 하기 어려워 장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또 일상의 의식주에 대한 극단의 부자유가 견딜 수 없었으며 작은 위안도 없이 날이 저무는 것은 대단한 고통이었다. 그래서 유형(流刑)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정을 기울여 여러가지 특례를 마련하였다.

944년(고려 혜종 원년)에 유배자 중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섬지방으로 유배보내는 것을 중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양(孝養)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남아서 머무는 것을 허락하는 제도를 만들었다.[23] 또한 유배자에 대해서는 가족이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는 길도 열었지만, 1376년(신우 2년)에는 '각 주(州)의 유배인은 처자와 남북 거실을 달리하여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없을까, 마땅히 경중을 가려 용서해야 할 자는 석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는 편의에 따라 양이(量移)하거나 보내어 처자와 동거하도록 하라.'라고 하교하였고, 또한 1790년(조선 정조 14년)에도 거듭 '유인(流人)의 아내 또는 첩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때는 이를 허락하라.'라는 영을 내렸다. 그 밖에도 사대부로서 변방에 귀양 가 있는 자에게는 규정으로 의복과 식사를 지급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유형자의 사정을 살피고 동정(同情)을 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

21) (역자주) 양이(量移) 멀리 유배된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던 일.
22) (역자주) 죄를 용서해 줌.

23) 이 제도에 대해서는 1048년(고려 문종왕 2년)에 노친을 모시고 봉양을 위해 남아서 머물게는 것을 허락한 적도 있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유배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령을 발하였다.

그리고 유형자에 대하여 노친을 부양하기 위해 잔류를 허락하는 제도에 대하여 「대전회통」은 다시 유형의 독신 부모가 70을 채워서 유배된 경우와 유배 후 70세에 이르렀을 때는 교지를 내려 1일 1양(兩) 4전의 비율로 속전(贖錢)을 거두고 귀환하는 것을 허락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죄수를 유배지로 보내는 때는 정이품(正二品) 이상인 자일 때는 도사(都事),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당상서리(堂上書吏), 당하나장(堂下羅將), 본조(本曹) 죄인으로서 도배(徒配) 이상은 경역자(京驛子)가 각 이를 압거(押去)하여, 차례로 유배지에 인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귀양살이하는 곳으로 보냈지만 사대부 등의 신분을 가지고 정변(政變) 때문에 유배되는 자 가운데 생존시켜 두어서는 뒷날에 있을 재난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 또는 죄상이 무거운 자와 같은 경우는 교지를 받은 호송관리가 유배지에 도착 전 도중에 독물을 주거나 또는 물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죽이고 말았다. 이러한 방법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관례이고, 이로 인해 중요하고 능력이 있어 쓸모가 있는 인물이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유형(流刑)에 처해진 자의 이름은 모두 형조(刑曹) 장부에 등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속대전」 중에 '무릇 유(流)로서 안치(安置)에 붙여진 자는 형조(刑曹)의 장부에 등록하고 다른 사(司) 및 지방관에 의해 유배된 죄인에 대해서는 이를 형조에 보고하게 하여 장부에 등록하며, 빙고(憑考)[24], 검거(檢擧)에 갖추어 경성(京城)의 죄인으로 유배지에 도착한 자가 있는 때는 해당 도의 관찰사는 인명(人名)과 유배지 도착 일시를 형조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형조는 이에 따라 각지의 유배인을 정리하였다.

옛날부터 유배를 시행하여 온 장소는 오랫 동안의 일로 육지라고 이르지 않고, 장차 섬지방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전국 각지에 미치어 있었던 것 같다. 그중 가장 많았던 지방은 변방에 유배된 경우 온성(穩城), 종성(種城), 삼수(三水), 갑산(甲山), 강계(江界) 등과 같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의 국경선이 많았고, 섬지방에 유배한 경우는 간간이 황해의 백령도에 보내진 적도 있었지만 조선의 남쪽 연안 섬지방이 가장 많았다. 또 육지라 하더라도 남쪽이 가장 많았고 이에 이어서는 경기및 강원이였다. 충청남북도, 황해도, 평안남도는 매우 드물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유배장소는 예로부터 육지와 바다 어느 곳으로 정하여도 마음대로였다.

24) (역자주) 빙고(憑考) 여러 가지를 비추어 상세히 검토함.

라. 도형(徒刑)

중국에서는 「순전(舜典)」에 '유(流)'는 있고 '도(徒)'는 없었으며, 수(隋)나라에 이르러서 유(流)에 대한 제도를 정하였으며, 이것이 즉 유(流)에 '도(徒)'가 추가된 것으로 '도(徒)'는 수(隋)나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이다. 그러나 '도(徒)'가 오형의 하나가 되어 법전 상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당률(唐律)」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조선에서도 도형의 제도가 존재하게 된 기원은 「당률(唐律)」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고려형법」이다. 고려형법에 도형(徒刑)은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의 다섯 등급으로 정하였고, 또한 그 속죄(贖罪)에 대해서도 절산법(折算法)을 정하였지만 도형(徒刑)의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한가지 설에는 도(徒)는 곧 노비이고, 그래서 도형(徒刑)에 처해진 자는 이를 노비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 무렵 관노비라고 불리는 자가 있었다. 그것은 도형수(徒刑囚)를 관아의 노비로 사역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徒)는 노비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하고, 또한 1375년(신우 원년)의 하교에 '(전략) 도역(徒役)에는 정해진 햇수가 있다. 이미 만기된 자는 방면해야 하는 데에 금고(禁錮)하여 천(賤)하게 만든 일이 있으면, 이를 근구(根究)하여 보고하라.'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도(徒)의 만기 후에는 노비에 편입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도(徒)는 노비로 사역하는 자가 된다고 해석된 하나의 증거라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설에는 도(徒)는 형기 동안 먼 지방으로 보내어 두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유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도형(徒刑)에 처하는 것을 '도배(徒配)'라고도 한다. 「대명률」에는 도형을 설명하여 '도(徒)는 사람이 조금 무거운 죄를 범하였을 때 관아에 잡아 두고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는 등 온갖 힘들고 괴로운 일을 시키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고, 오히려 '도역(徒役)은 각각 도형(徒刑)의 연한에 따라 모두 도배(徒配) 죄인이 유배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염장(鹽場)으로 보내지면 매일 소금 3근을 굽고, 야철장(冶鐵場)으로 보내지면 매일 철 3근을 불린다.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계산한다.'로 정하여, 먼 지방에 있는 일정한 노역장으로 보내어 형기 동안 제염(製鹽), 제광(製鑛)의 일에 취업하게 한 것 같지만, 조선에서는 「대명률」이 규정하는 것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건대 고려시대에는 노비로 하여 사역(使役)하였으나 유형과 같이 먼곳으로 유배한 적도 있었고 또 옥내에 수금하여 두고 필요한 때는 옥의 용무에 사역시키거나 하였으며 일정한 행형방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실제였던 것 같다.

3. 형구(刑具)

사형과 신체형의 집행에는 형구를 필요로 하였지만 종류, 형질 등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정해진 것은 없었다. 고려형법 시대에 이르러 형장(刑杖)에 대해서만 종류와 제식이 정해졌으며 이것이 형구 제정의 시초이다. 장(杖)은 척장(脊杖), 둔장(臀杖), 태장(笞杖)의 세 종류로 하고, 그 제식에 각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대명률에 의거하고 나서는 태(笞)와 형장(刑杖) 외에 신장(訊杖), 추국장(推鞫杖), 삼성장(三省杖)의 세 종류의 고문용 장(杖)과 가(枷), 유(杻), 삭(索), 쇄항(鎖項), 쇄족(鎖足)이라고 일컫는 각종의 형구를 정하고 또한 군용형구로 곤(棍)을 두었다. 이 곤(棍)에는 대(大), 중(中), 소(小)의 곤(棍), 중곤(重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종류가 있었다.

이와 같이 형구의 제식을 정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 줄곧 이어져 온 남형의 폐는 형구가 여러 가지 격식에 어긋나거나 또는 법외의 여러 가지 형구가 생겨나고, 게다가 점차 남용되는 한편 형구의 제식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다. 그래서 영조왕은 여러 차례 법외의 형의 제폐를 시행하는 동시에 행형 쇄신을 시행하는 데는 문란한 형구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긴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1738년(영조 14년)에 하교하여 '근래에 지방에서 형벌의 사용이 지나치게 혹독하니 실로 고질적인 폐단이다.

형구(刑具) | 사진 출처: 한국학 중앙연구원

허물이 없는 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취하는 것도 맹자(孟子)는 이를 아니라고 하였으니 임금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이겠는가. 형벌을 받는 자 역시 죽어서는 안되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도 관장(官長)이 혈기(血氣)의 노여움으로 인명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위엄을 세우려고 하여 함부로 죽이니, 형벌을 신중하게 하는 뜻이 어찌 이와 같지 않겠는가? 장(杖)의 크고 작음에는 스스로 정한 한도가 있으니, 일체 장혈(杖穴)에 의하고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하고, 장혈(杖穴)을 다시 쇳물을 부어 만들어 이를 팔도(八道)에 반포하게 하였다. 이에 의해 일부 형구의 통일을 도모하였고, 또한 1740년(영조 16년)에는 자자형을 폐하는 동시에 경자구(黥刺具)를 몰수하여 이를 소각하는 등 형구에 의한 행형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어서 즉위한 정조왕 역시 즉위 다음해 조속히 「흠휼전칙(欽恤典則)」을 제정하여 형구(刑具)의 바로잡음을 도모하였다. 그때의 하교에는 '장(杖)에 대소가 있고 가(枷)에 두꺼움과 얇음이 있는 것은 그 죄의 경중에 따른 것이다. 근래 옛날부터 전해오는 법칙을 점차 늦추어 죄의 경중을 논하지 아니하고 경사(京司)와 지방이 함께 큰 장(杖)과 두꺼운 가(枷)를 사용하고 (중략) 이것이 어찌 옛 선왕의 흠휼(欽恤)의 뜻이겠는가? 군문(軍門)의 곤장(棍杖)은 제(制)의 뚜꺼움과 크기가 극한에 이르러 곤(棍)을 사용할 때 상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정리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등등'이라고 한 것과 같이, 당시 형구는 규정에 위반되어 매우 과대(過大)하게 흐르고 있었다. 1708년(숙종 34년) 하교에서도 '(전략) 실제로 관위(官威)를 가진 자는 마음대로 남용하여 감히 형장(刑杖)으로 노여움을 푸는 도구로 삼아 그 장을 크게 하고 다시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으며, 먼 변방의 궁벽하고 외딴 곳에는 이 풍습이 더욱 심하여 억울함을 품고 고할 데가 없어 목숨이 떨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전에 여러 번 타일러 훈계하였는데도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게 여길만하다. 각 읍, 각 진(鎭)에 만일 조정에서 내리는 명령을 어기고 범하여 받들어 행하기를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문(啓聞)하여 죄를 과(科)하라.'고 엄명한 적도 있었다. 또한 정조왕의 말씀 중에 '관장(官長)의 노여움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니 한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큰소리로 꾸짖는 등으로부터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왕은 형구의 제(制)를 정하고 '화(化)는 가까이에서 나오고, 정(政)은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먼저 서울의 옥(獄)에 대하여 형구를 단속하라.'고 명하여 형방(刑房) 승지(承旨)를 법부(法部) 법조(法曹)에 달려가게 하여 제식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거두어 모으고, 또한 외읍(外邑)에 대해서는 순차로 어사(御史)를 보내어 이를 단속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흠휼전칙(欽恤典則)」에서 정한 형구의 제식는 아래와 같으며, 대체로 「대명률」에서 정하는 제도를 본받거나 「경국대전」이 정하는 제식을 참작하였다.

1. 「대명률」 태(笞)와 장(杖)

길이 3자 5치, 대두경(大頭徑)[25] 2푼 7리, 소두경(小頭徑)[26] 1푼 7리로 하여, 작은 싸릿대로 만든다. 반드시 마디나 옹이를 깎아 내고, 관에서 내려 준 교판(較板)[27]을 사용하여 법에 따라 대조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 여러 가지 물건을 덧붙여 장식하지 못하게 한다. 지름이 가는 부분을 써서 볼기를 친다. 장은 (생략) 길이 3자 5치, 대두경(大頭徑) 3푼 2리, 소두경 2푼 2리로 하여, 큰 싸릿대로 만든다. 소두경(小頭徑,)을 써서 볼기를 친다.

2. 신장(訊杖)

길이 3자 5치, 대두경(大頭徑) 4푼 5리, 소두경(小頭徑) 3푼 5리로 한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신장은 길이 3자 3치, 윗부분 1자 3치는 지름 7푼, 아랫부분 2자는 너비 8푼, 두께 2푼이다. 하단(下端)으로 무릎 아래를 때리고 허리에는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1차례에 30도(度)를[28]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외에서 행용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고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한다. 장(杖)은 「대명률」에 따라 3자 5치를 사용한다. 「속대전」 : 추국(推鞫) 신장은 너비 9푼, 두께 4푼이고, 삼성(三省)[29] 신장은 너비 6푼, 두께 3푼이다. 금오(金吾)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데, 길이는 「대명률」에 따라 3자 5치를 사용하고, 삼성장(三省杖)은 비록 외방(外方)이라도 이에 따라 시행한다.

3. 칼(枷)

길이 5자 5치, 두활(頭闊) 1자 5치이다. 마른 나무로 만든다. 사죄(死罪)에는 무게가 25근이고, 도죄(徒罪)와 유죄(流罪)에는 무게가 20근이며, 장죄(杖罪)에는 무게가 15근이다. 길이와 무게를 그 위에 새겨 넣는다.

4. 「대명률」 수갑(杻)

길이 1자 6치, 두께 1치이다. 마른 나무로 만든다. 남자가 사죄(死罪)를 범하면 수갑을 채운다. 유죄 이하 및 부녀자가 사죄(死罪)를 범하면 채우지 않는다.

5. 「대명률」 쇠줄(鐵索)

길이 1자이다. 쇠로 만든다.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용한다.

25) (역자주) 대두경(大頭徑) 굵은 부분의 지름.
26) (역자주) 소두경(小頭徑) 가는 부분의 지름.
27) (역자 주) 교판(較板)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서 태·장·신장(訊杖) 등 형구를 만들 때 대소의 차이가 없도록 규격을 맞추어 보는 표준 틀이다.
28)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함.
29) (역자 주) 삼성(三省) 강상 죄인(綱常罪人)에 있어 삼성 곧 의정부·사헌부·의금부가 합좌하여 추국(推鞫)하는 것.

6. 우리나라에는 쇠줄(鐵索)이나 쇠사슬(索鐵)을 사용하지 않는다. 「경국대전」에 항쇄(項鎖)와 족쇄(足鎖)라는 조문이 있지만 길이와 모양은 말하지 않았다. 법사(法司, 형조·한성부)에서 행용하는 것에 따라 아래에 그 제도를 수록하면 아래와 같다.

쇄항(鎖項) 철삭(鐵索)은 길이 4자

쇄족(鎖足) 철삭은 길이 5치

경국대전에는 '사죄(死罪)를 지은 자는 수금(囚禁)하여 칼(枷)과 수갑(杻)과 족쇄(足鎖)를 채운다. 유죄(流罪) 이하는 칼과 수갑을 채운다. 장죄(杖罪)는 칼을 채운다. 무릇 의친공신(議親功臣)[30] 및 당상관과 사족 부녀가 사죄(死罪)를 범하면 목에 쇠사슬을 채운다. 당하관과 서인 부녀는 목과 발에 쇠사슬을 채운다. 장죄(杖罪)는 목에 쇠사슬을 채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명률의 쇠줄 및 쇠사슬[31]은 조선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경국대전 소정의 항쇄와 족쇄가 사용되고 있었다. 고종왕 때에 이르러 제정된 「육전조례」에서는 형구를 다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가(枷), 유(杻), 쇄항(鎖項), 철삭(鐵索), 족쇄(足鎖), 신장(訊杖) 이상은 죄가 무거운 수인에게만 사용한다.
2. 태(笞), 장(杖)은 죄가 가벼운 죄수에게 사용한다.
3. 철착고(鐵着庫),[32] 목착고(木着庫), 소쇄유(小鎖鑐)[33] 이상은 흉악하고 사나운 죄인에게 사용한다.
4. 행형도자(行刑刀子)는 대소(大小) 합하여 3자루이다.

앞에 기술한 각 형구는 육전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한 것이 아니라, 재래의 형구에 대해 용도를 정한 것이 지나지 아니하지만 다만, 참형 용구에 해당하는 도자(刀子)를 법문에 규정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30) (역자주) 의친 공신(議親功臣) :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시마 이상친(緦麻以上親), 왕비(王妃)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의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 형의 감면(減免)을 의정(議定)하던 일.
31) 연환(連環)이라고도 한다.
32) (역자주) 철착고(鐵着庫) 쇠로 만든 차꼬.
33) (역자주) 소쇄유(小鎖鑐) 작은 자물쇠.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리실태 및 시사점을 통해 본 범죄자 정보공유 방안 연구*

함혜현
국립부경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전공 교수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관리 실태
Ⅳ. 묻지마 범죄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Ⅴ. 이상동기 범죄자 정보공유 방안
Ⅵ. 결론

* 이논문은 2024년 저자가 '한국범죄심리연구'에 게재한 논문(제20권 제2호)을 '월간교정' 발간 취지에 맞게 재구성 하였음.

국문요약

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의 대응과 관련하여 모든 형사사법기관들이 '범죄의 동기(원인)'을 중심으로 한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범죄자가 전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생성된 정보를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묻지마 범죄의 개념, 유형, 분류방식 등에 대해 체계화하였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경찰, 검찰, 교정, 보호 등 형사사법기관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형사사법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적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묻지마 범죄 통계 · 정보를 형사사법기관들간의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 · 통합적으로 수집 · 관리해야 한다. 둘째,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KICS 등을 활용한 AI · 빅데이터 기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가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학계 간 공식적인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주제어 :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형사사법기관, 범죄정보, 정보공유, 통합관리 방안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023년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묻지마 범죄'(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부산 과외교사 살해사건 등 참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국민적 피해와 함께 커다란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2000년 이래 우리 사회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첫 등장('묻지마 범죄'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1]한 이래 사상 최대규모의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인해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이유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무차별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법무부의 경우 국(局)별로 '묻지마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 기관의 경우 최초 사건접수 기관인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망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경우도 아직 통일적인 용어 사용에는 이르지 않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 '묻지마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계의 경우 정부 기관과 동일한 용어 사용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보다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묻지마 범죄' 연구 성과들을 반영 · 존중하는 한편, 『용어사용의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용어인 '묻지마 범죄' 용어를 일정 부분 사용하면서, '이상동기 범죄' 사용이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동기 범죄'로 표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용어의 통일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에 대해 경찰(수사, 범죄예방), 검찰(공소), 법원(양형), 교정(교화, 재활), 보호(재범예방) 등 각기 다른 기능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조사 연구하고, 그 실태를 중심으로 시사점(문제점)을 도출한 뒤, 바람직한 관리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학술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특히, 묻지마 범죄의 특성상 「범행의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범행동기의 이상성)에 착안하여, '범행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서는 범죄의 수사, 양형, 교화, 예방 등 모든 과정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한 '범죄정보'로서 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또한, '범죄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각 형사사법기관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모자이크 조각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자가 전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생성된 범죄정보를 범죄의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특히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각 형사사법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 제시하고자 하였다.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관련해서는 주로 경찰청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고, 형사사법기관과 관련해서는 묻지마 범죄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보호관찰, 소년보호) 기관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하였다.

1) '묻지마 살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0년 4월 26일 한국일보가 '묻지마 살인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3년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대해 '묻지마 범죄'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선행연구, 언론보도, 인터넷 자료 등을 토대로 개념, 분류 기준, 유형, 통계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개자료를 토대로 1차 검토를 실시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형사사법기관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대면, 전화)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묻지마 범죄의 개념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 통일된 개념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묻지마 범죄는 '법률적 · 학술적 용어'가 아니라 '언론이나 사회 일각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 정도로 규정하였다(대검찰청, 2013; 고선영, 2012; 이윤호, 2006; 윤상연 외, 2023).
경찰에서는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보다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가운데,[2] '동기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을 것(범행동기의 이상성), 불특정 다수 또는 전치된 대상에 대해 발생할 것(피해 대상의 불특정), 범행이 잔혹하고 과도한 등 행위적 특성이 비정상적일 것(범행의 잔혹성)' 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였다(윤상연 외, 2023: 89).
학계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동기가 불명확한 범죄' 정도로 규정하였다. 다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치는 경우도 묻지마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연구에서 밝힌 묻지마 범죄의 핵심 요소인 불특정 '다수'라는 개념요소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윤상연 외, 2023: 89).

2) 즉,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인해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이유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묻지마 범죄의 분류 기준

묻지마 범죄가 최고조에 달한 2023년, 경찰청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계획여부, 범행방식, 범행당시의 심리상태, 배경 등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찰청은「이상동기 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2023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집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1월~6월 간 발생한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가 18건이라는 통계를 공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핵심요소로 ①'범행동기의 이상성', ②'피해자 무관련성', ③'행위의 비전형성' 등을 핵심요소로 추출하였다.

〈표 1〉 이상동기 범죄의 핵심적 개념요소(경찰청)

구분	내용
범행동기 이상성	해고, 실연, 가정불화, 정신질환 등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기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무관련성	피해 대상이 불특정 다수 또는 대상이 전치(displacement)되어 나타나거나 범행동기 유발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의 비전형성	범죄행위가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과도하고, 범행동기에 근거했을 때 전형적이지 않은 행위

※ 자료 : 경찰청 · CSI학회, 2023년 제9차 국제 과학수사 컨퍼런스 발표자료

아울러, 경찰청은 2023년 1월~8월 간 발생한 범죄 사건 중 중대 대인범죄, 비면식 관계, 제3자 분풀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 등을 기준으로 987건을 추출한 후, 범죄분석관들이 심사한 결과(16건) 및 시도경찰청 범죄분석관들의 추천 건수(7건)를 포함하여 총 23건으로 집계하기도 하였다(경찰청 · CSI학회, 2023; 윤상연 외, 2023: 95).

3. 묻지마 범죄의 유형

묻지마 범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10년 이전까지 묻지마 범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단순히 자신과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 등을 표출하는 형태와 둘째, 실제로 공격하고자 하는 특정한 대상이 있으나, 접근성이나 신체적 열세 등의 이유로 공격이 쉽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 공격의 대상을 바꾸어 실행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첫 번째 형태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 형태의 예로는 2011년 서울 광진구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는데, 가출한 전 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한 남성

(알코올중독자)이 골목길을 가던 여성이 가출한 전처의 뒷모습과 닮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흉기(집에 있던 과도)로 1회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집을 나간 처가 미워 지나가던 여성을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전화도 안 받고 적개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2010년 이후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 검찰, 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묻지마 범죄를 보다 세부적으로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역시 각 기관과 주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분류가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1) 국내

서울경찰청(2010년)에서는 '현실불만 유형', '우발적 유형', '정신장애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정연대 · 이윤호, 2013).

고선영의 연구(2012년)에서는 '정신병적 범죄자', '비정신병적 범죄자'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대검찰청(2013년, 2014년)에서는 '정신질환형', '현실불만형', '약물남용형'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수정의 연구(2013년)에서는 '정신장애 유형', '외톨이 유형', '반사회성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박지선 · 최낙범의 연구(2013년)에서는 '정신장애형', '현실불만형'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윤정숙 · 박지선 · 안성훈 · 김민정의 연구(2014년)에서는 '정신장애형',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검토하면,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개념적 · 유형적으로 가장 잘 체계화하고 있는 것은 윤정숙 외 연구(2014년)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경우도 동 연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

2) 국외

미국 FBI의 경우를 참고하면, FBI에서 발간한 '범죄분류 매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 Douglas, Burgess & Ressler, 2007)에 따르면, 살인의 하위 유형 중 하나로 '불특정 동기 살인'(A nonspecific motive murder)이 있다. 동 매뉴얼에 따르면, 불특정 동기 살인은 범죄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발생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살인으로,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특성이 있다(박지선, 2019: 189). 우리의 묻지마 범죄와 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의 여지가 있다.

우리 형법의 경우 제25장 '살인의 죄'에 살인, 존속살해,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을 제외하고는 FBI와 같은 별도의 하위 유형이 없는 것과 구별된다.

4. 묻지마 범죄의 통계 분석

묻지마 범죄의 연구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그동안 묻지마 범죄가 별도로 분류되어 관리되지 않았고,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개념조차 정립이 되지 않았기에 국가 차원의 통계 현황 파악은 물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묻지마 범죄의 유행기인 2023년 경찰청이 서둘러 '피해자원표 기반 데이터 추출'(16건) 및 '범죄분석관 자체 인지 사건'(7건)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23건으로 집계된다. 경찰청의 이상동기 범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서기관 전화면담(2024년 3월 19일) 결과

〈표 2〉 이상동기 범죄 분석 결과(경찰청)

분석 대상	23건(경찰 통계원표 기반 추출 16건 / 자체 범죄분석 사건 7건)
죄종별	살인 5건(살인미수 포함), 상해치사 1건, (특수)상해 15건, 폭행 2건
신병 조치	구속송치 14건, 불구속송치 9건
발생 특성	노상이 20건으로 대부분 20시~04시 다수 발생(12건)
피의자 특성	남성 18명, 여성 5명 10대 1명, 20대 4명, 30대 7명, 40대 4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
범행 전력	전과없음 8명, 1~5범 6명, 6~10범 5명, 11범 이상 4명 ※ 대부분 폭행, 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력성 반복 경향
범행 도구	사용 10건(44.5%), 미사용 13건(55.5%)
계획성 여부	대부분 충동적으로 발생하나,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한 경향

※ 자료 : 경찰청 · CSI학회, 2023년 제9차 국제 과학수사 컨퍼런스 발표자료

5. 묻지마 범죄의 대응과 처벌

2023년 경찰에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형사기동대를 부활하며, CCTV를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에서 제시한 대책들은 '억제지향 전략'으로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처벌 강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범행 기회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둔 단기적 방안이다.

즉, 범죄 취약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통해 경찰의 가시성을 강화하는 것이 경찰 대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동기화된 범죄자들의 범행 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양면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 범죄 형태에 따라 주로 살인, 상해, 폭행, 방화 등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겠지만, 다른 범죄자에 비해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기징역형[4] 등을 통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조 선, 부산 과외교사 살인 사건 정유정 등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 · 2심 또는 3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확정)하였다.

만약 이들이 출소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에 의한 위치추적전자감독 등의 사회적 통제방법을 병행하게 된다.

4) 2023년 발생 부산 '정유정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 확정(2024. 6. 13).

범행동기가 조현병 등 정신장애에 의한 경우, 형벌과 병행하여 치료감호처분 등을 통해 심리치료를 실시하며, 교도소에 복역중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 상담 등의 교정교화 처우를 병행한다.

Ⅲ.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관리 실태

1. 경찰 단계

경찰청은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통해 행위의 특성과 결과, 행위의 원인과 동기 등을 기준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범행동기의 이상성, ② 피해자 무관련성[5], ③ 행위의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단계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에의 해당 여부, 유형 판단 등이 실시되는데, 이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명확한 판단기준이 중요하다(윤상연 외, 2023: 95).

경찰청은 2023년 자체분석을 통해 시범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통계를 산출하였으나, 수사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이상동기 범죄 입력 항목이 별도로 없으므로 전산상 이상동기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다만, 경찰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통계원표』를 개정하여 「범행동기」 항목에 '사회적 적대감'과 '제3자 분풀이' 항목을 신설하였고, 「피해자 유형」에 '전혀 모르는 타인'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폭력, 상해, 살인 사건 중에서 '묻지마 범죄'를 추출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2024년 1월부터는 각 시도경찰청별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현장대응 TF'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 형사, 과학수사 기능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6]

5) 다만, 기존의 기준인 '비면식 관계'의 경우 동기와 행위 간의 불균형을 판단하는 하나의 준거가 될 뿐, 필요적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인 간에도 뚜렷한 동기 없이 살인 또는 상해를 저지르는 경우 이상동기 범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윤상연 외, 2023: 95).

6) 경찰청 범죄분석관과의 전화면담(2024년 4월 4일) 결과

2. 검찰 단계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추가 수사를 실시한다. 사실관계 규명 및 증거의 확보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중점이 두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이 범행동기이다. 범행동기는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검찰수사 단계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물론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범행동기를 규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만, 구속기간이 10일이므로 이 기간 동안 현장검증,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증거확보 등 많은 절차들을 수행해야 하므로 범죄분석관이 피의자의 범행동기를 분석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부산 정유정 사건(2023년)과 같이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찰에서는 범행동기를 확증하기 위해 전담수사팀 편성, 추가적인 수사 및 심리분석 등을 통해 경찰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7)]

검찰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20일로 경찰(10일)보다 길다는 점에서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시간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이상동기 범죄 입력 항목이 별도로 없으므로 전산상 이상동기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현실이다.

3. 법원 단계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형량을 결정한다. 법원은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

부산 정유정 사건(2023년)의 경우,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정유정이 부모 대신 조부와 함께 지낸 성장과정과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고,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점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법원단계에서 범행동기의 확증은 매우 중요하다.

법원단계에서는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 범죄심리학자의 감정, 정신과 의사 또는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에 의한 정신감정 등을 통해 범행동기를 보다 깊이 있게 밝혀낼 수 있다.

재판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1심의 경우 최장 6개월(형사소송법 제92조)이므로, 검찰(20일)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범행동기를 밀도 있게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4. 교정 단계

교정에서는 2017년부터 '무동기 범죄자'[8)]에 대하여 별도 관리를 하며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으며, 2023년 10월부터 이상동기 범죄 등 중범죄자의 전담 교정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9)]

법원의 형 확정 후 형 집행을 위해 각 지방교정청의 분류센터에서 정밀 분류심사를 받은 후 위험관리수준(RM)[10)]을 평가하여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및 중범죄자를 별도 분류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심리검사로는 주로 MMPI(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및 PAI(성격유형 검사)가 활용되며, 필요한 경우 PCL-R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입소 초기부터 중경비시설(S4)[11)] 중 전담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엄중계호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전담 교정시설에서는 2단계 계호 및 처우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초 1단계 엄중계호 단계에서는 「형집행법」에 의거 수용자에게 보장된 최소 처우만 시행하며, 엄정독거를 통해 엄격한 통제 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개선 정도에 따라 2단계 제한적 완화 계호로 상향하여 심리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성향을 개선하고 전문상담 및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정단계에서는 법원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범죄정보를 취득하므로, 수사기관인 경찰 · 검찰에 비해 비교적 가장 정제된 수준의 범죄자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범행동기 등 세부 정보는 내부망인 '보라미'를 통해 심리치료 담당 직원 등 접근권한이 있는 교도관에 한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

7) 부산지검 송영인 부장검사와 박인우 검사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당초 정유정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과외앱 압수수색과 통합심리검사를 거쳐 정유정이 내적 분노를 표출하려 '묻지마 살인'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정유정의 주거지에서 찾아 메모지 내용(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816310003866?did=NA).

8) 교정기관에서는 당초 '무동기 범죄'로 명명하여 왔으나, 최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있다.

9) 부산교도소 교감(심리치료) 전화면담(2024년 3월 22일) 결과

10) 위험관리수준(RM) : 'Risk Management'의 약자로 범죄의 위험성 및 재범가능성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집중 개별처우를 통한 관리수준과 석방 후 재범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개입 수준

11) 중경비시설(S4) : 교정시설은 도주 방지 등 계호정도에 따라 4단계의 경비등급 시설로 나누며 개방시설(S1), 완화경비시설(S2), 일반경비시설(S3), 중경비시설(S4)로 구분하여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관리·감시를 엄중히 구분하여 수용

5. 보호(보호관찰 · 소년보호) 단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2023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였다.[12]

범죄예방정책국은 묻지마 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즉, ① 현실불만형 · 분노표출형 범죄유형과 ② 정신장애형 범죄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부합한 재범예방 대책을 수립하였다. 소년원 재원생 · 퇴원생 및 보호관찰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특히, 타 형사사법기관과 달리 묻지마 범죄자의 인적사항, 죄명, 판결내용 등의 정보를 경찰에 통지(보호관찰법 제55조의3 '가석방자 보호관찰 종료사실 경찰 통지 규정' 개정 추진)함으로써 정보공유를 통한 재범 예방 및 수사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의 정보는 경찰과 공유중이다(보호관찰법 제36조의2).

아울러 보호관찰 집행종료자 및 소년원 퇴원 보호소년에 대한 철저한 재범분석을 위해서는 재범자에 대한 경찰의 정보가 필요하므로(현재는 보호관찰 종료자, 소년원 퇴원생에 대해 3년간 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조회 실시중), 현실불만형 · 분노표출형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재범 사실 및 분석 정보를 보호관찰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13]

Ⅳ. 묻지마 범죄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상 한계

2023년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그리고 부산 과외교사 피살사건 등 최근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은 모두 초범이다. 나이대도 20대~30대에 불과하다(물론 2023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자의 대부분이 범죄경력자이지만, 실제로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던진 묻지마 살인범들은 모두 초범이다). 이러한 사실은 묻지마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 의해 얼마든지 가장 잔혹한 형태의 묻지마 범죄가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사회적 예방책 또는 일반예방책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묻지마 살인이 극에 달했던 2023년 우리 사회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형집행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의 근본원인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갈등, 실업문제, 가정해체, 심리적 문제 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억제지향 전략은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회구조적 긴장을 완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범죄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즉,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체질개선을 하지 않고는 묻지마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범정부적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경찰에게만 의존하는 정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묻지마 범죄의 대응은 이 같은 범죄의 특성을 예민하게 고려하여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과 범행기회를 차단하는 억제지향 전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시적 · 미시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1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서기관 전화면담(2024년 3월 19일) 결과

13)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형사사법 단계에 따른 범죄정보의 숙성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기관의 첫 단계(경찰, 검찰)에서 마지막 단계(교정, 보호)로 갈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성 · 축적됨으로써 정확성 · 완결성을 띠게 된다. 즉, 경찰보다는 검찰, 검찰보다는 법원, 법원보다는 교정 · 보호기관으로 갈수록 최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고가치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 여기에는 형사사법기관별로 범죄자를 구속(구금)하는 기간의 차이에 발생함에 따라 수사관, 검사, 판사, 교도관이 범죄자와 접촉하는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정 · 보호 단계에서는 사법기관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생성된 판결문 등을 확보함으로써 경찰 · 검찰 수사단계에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던 범죄자가 재판을 통해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의 이상성 등이 추가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자로 재분류되는 경우도 있다.[14)]

또한,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형량의 최소화를 추구하므로 본인의 신상 · 비밀에 대해 숨기려 하거나 허위정보 · 부정확한 정보를 형사사법기관에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교정단계에서는 형이 확정됨으로써 범죄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가운데 심리전문 직원의 심층면담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보다 명료해지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여과되기도 하며, 새로운 유가치 정보가 획득되기도 하는 등 범죄자 정보의 숙성과정을 거치게 된다.[15)]

3. 형사사법기관간 범죄정보의 공유 단절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이상동기 범죄를 경험했지만, 이상동기 범죄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16)]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접근은 가장 먼저 그 원인을 밝히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정해진 구속기간(경찰 10일, 검찰 20일) 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부족한 시간이므로 그 원인을 세세히 밝히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오히려 법원에서 최장 6개월이라고 하는 구속기간 동안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 환경조사, 심리검사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원인과 범행동기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정기관의 경우 구속기간 및 수형기간 동안 대상자의 신병을 비교적 장기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범죄원인의 분석이 타 기관에 비해 더욱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각자의 임무인 수사, 공소, 양형, 형집행, 재범방지 목적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법기관에서 각 기능별 묻지마 범죄자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들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예컨대, 각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생산되는 범죄자 인적정보는 개인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죄명,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만 공유되고 범행동기 등의 부분은 시스템상 공유되지 않고 기관 내부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7)] 물론, 수사서류 및 증거서류 등을 통해 경찰수사 결과가 검찰에 송부되지만 전산 시스템상으로는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수사상 필요한 때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교정기관에서 장기간 복역 중에 새로이 획득된 이상동기 범죄자 정보의 경우도 보안 등을 이유로 교정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되고, 경찰 등 타 형사사법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전 형사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정보의 순환과 환류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18)]

4. 형사사법기관-학계 간 공동연구의 미흡

이상동기 범죄자군에 대한 정보는 경찰, 검찰, 교정 등의 형사사법기관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각 형사사법기관의 고유의 기능 수행에 치중하다 보면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찰, 검찰, 교정기관에는 박사급 특채 공무원들이 현업 또는 교육 · 연구기관에서 연구 기능을 일부 수행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 융합적 연구 역량은 민간에 비해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범죄자를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아니다.[19)]

---

14) 부산교도소 교위(심리치료) 전화면담(2024년 3월 21일) 결과

15) 법무부 교정본부 교감(심리치료) 전화면담(2024년 3월 21일) 결과

16) 과거의 살인이 주로 원한이나 치정에 의해 발생한 반면, 묻지마 살인은 그 원인조차도 명확치 않고, 그래서 범죄자 개인의 생애연구를 통해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내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렵다. 그 원인도 개인마다 결이 다르며, 아직까지 묻지마 범죄의 사례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론적으로 무리수가 따른다. 학설과 이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본다(私見).

17) 부산지검 수사사무관 전화면담(2024년 3월 19일) 결과

18) 법무부 교정본부 교감 전화면담(2024년 3월 21일) 결과

19) 이무선의 연구(2020: 133)에서도 묻지마 범죄 발생 요인 및 재범가능성과 관련된 요인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실증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그 원인이 인간의 생애 전체에 걸쳐 있고, 단편적 원인보다는 복합적 원인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근방법도 전문 분야별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이상동기 범죄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학문 분야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학, 범죄학, 범죄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접근이 없이는 정확한 원인과 대책의 마련이 불가능한 최고 난이도의 범죄군이다.[20]

그럼에도 학계의 경우 실무가와 달리 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차단 등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의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즉, 경찰 ·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문화적 '방어성향'(defensiveness)과 법 · 제도적 장치가 민간 연구자에게 정보 공개하기를 꺼리게 만들고, 정보를 독점하고자 하는 현상이 유지되었다(강선 · 김시업, 2023: 39).

요컨대, 외국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협업 기반이 구축된 반면, 우리의 경우 자문위원 등 일부 특정의 학자를 제외하고는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상동기 범죄의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Ⅴ. 이상동기 범죄자 정보공유 방안

1. 이상동기 범죄 통계 · 정보의 체계적 관리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범죄 통계 및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정형화된 범죄유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테러와 함께 사회적 위험성이 가장 높은 범죄 형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별도의 관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그간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21]에서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요망된다. 근래 들어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 범죄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듯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특히 초동수사기관인 경찰은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 통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동기 범죄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에 이상동기 범죄자로 분류된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자 통계 및 데이터이다. 둘째는 과거에 이상동기 범죄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경력자 중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이 분류 가능한 범죄자 통계 및 데이터이다.

첫 번째 통계 및 데이터의 경우 주로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상동기 범죄자로 분류된 통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자의 범행 원인 · 동기 · 특징, 배경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데이터의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법원이나 교정 · 보호기관 등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을 기초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교정 · 보호기관에서 경찰로 통보하는 제도가 신설되거나, 이를 종합적으로 집계하는 기관 또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초기 분류된 이상동기 범죄와 재분류된 이상동기 범죄의 통계가 빠짐없이 하나의 통계시스템으로 취합 ·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상동기 범죄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한, 단 한 명의 이상동기 범죄자가 수사 입건되고 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 받는 동안이라도 모든 형사사법기관들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타 범죄에 비해 형사사법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인적정보와 배경정보, 심리검사, 상담내용 등이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제각각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뉴얼을 통해 통합적으로 수집 · 집적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상동기 범죄자가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범죄 원인 및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양질의 범죄정보로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집적된 범죄자 정보를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를 통해 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범죄원인별, 시간대별, 계절별, 연령별, 직업별로 이상동기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이 모여지고, 이를 통해 예측적 범죄예방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0) 이무선의 연구(2020: 133)에서는 체계적인 연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즉, 미국 등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예방 노력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인사팀, 법무팀, 정신의학 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험평가팀을 구성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조기 진단 및 위험행동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였다.

21) 윤상연 외 연구(2023: 93)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통계를 확보(추정)하기 위해 경찰청 KICS를 바탕으로, 범죄통계의 원천이 되는 범죄원표(발생, 검거, 피의자) 항목을 활용하여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 사건의 원표 전수를 분석하였다.

3. 형사사법기관-학계 간 공동연구 법제화

이상동기 범죄자에 관한 한 형사사법기관과 학계의 목적 또는 지향점은 공통점과 함께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형사사법기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하면 그것으로 임무가 끝나지만, 범죄학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졌는지, 범죄의 보다 심층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 · 검증하고자 한다. 형사사법기관은 수사, 재판, 형 집행, 재범예방이라고 하는 고유의 목적 달성과 적법절차의 준수에 충실하면 된다. 그리고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그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이고 나면 폐기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범죄자가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 기관 등을 거치며 힘들게 수집되고 가공된 범죄자 정보는 당해 기관의 목적에만 쓰이고 버려지기에는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살인범죄, 폭력범죄의 경우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수사하고 양형을 하면 되지만(법리적 측면의 검토 이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그 원인이 예컨대 '분노'라는 점 외에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의 깊이 있는 원인분석 결과는 내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기소된 범죄자가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되므로 피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범죄의 근본 원인은 그 사회에 남고 계속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형사사법기관의 일차적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그 기능을 잘 수행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는 사회에 존재하는 새로운 (잠재적)범죄자에 의한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의 태생적 목적을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이상동기 범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연구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즉, 각 시도경찰청 단위로 학계 전문가(교육학, 범죄심리학, 범죄학, 사회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등)를 선정하고,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가 공동으로 개입하고 연구할 수 있는 법 ·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보다 깊이있는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찰 이외에 검찰, 법원, 교정 · 보호기관의 경우도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법률가 · 상담가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한 범죄의 원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범죄학 및 유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보호관찰, 소년보호) 등의 형사사법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그 실태를 중심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한 뒤,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범행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묻지마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범죄정보로서 규정하였고, 각 형사사법기관들 간에 이러한 범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범죄자가 전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생성된 범죄정보를 각 형사사법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선순환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상 한계로서, 그간 정부의 대응은 경찰력에 의존하는 정책이 중심이었고, 예방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정부적으로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억제 지향 전략과 함께 긴장완화 전략이 균형 있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 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에서 마지막 단계인 교정 또는 보호 단계로 진행될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성 · 축적되고 보다 정확성을 띠게 되는 등 범죄정보가 숙성된다는 점이다. 또한, 경찰 · 검찰 수사단계에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던 범죄자가 재판을 통해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의 이상성 등이 추가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로 재분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범죄자가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심리적 안정을 통해 교도관과의 상담에서 그동안 자백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 유용한 정보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셋째, 각 형사사법기관들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특히 범행동기와 관련된 정보는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매우 결정적인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각 기관에서 처리된 정보사항이 타 형사사법기관과 거의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묻지마 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모든 형사사법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묻지마 범죄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동 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묻지마 범죄의 경우 그 원인과 관련하여 전문 분야별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무의 경우 전문성이 축적된 관련 학계와의 공동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이 범죄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현실은 학계와의 공동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형사사법기관들의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관리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묻지마 범죄 통계 · 정보의 체계적 관리이다. 즉, 묻지마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범죄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별도의 통계항목을 신설하고 각 형사사법기관들이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묻지마 범죄자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이다. 즉,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인적정보와 배경정보, 심리검사, 상담내용 등이 각 형사사법기관별로 제각각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뉴얼을 통해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AI를 통해 범죄분석 및 범죄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형사사법기관-학계 간 공동연구의 활성화이다. 즉,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의 본래적 목적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시도경찰청 단위로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범죄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별 학계 전문가를 공동연구단으로 편성하여 사건발생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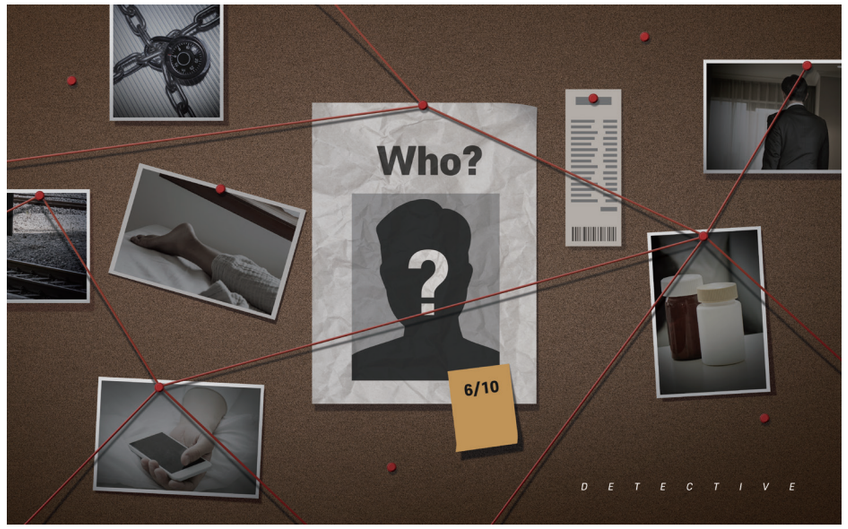

참고문헌

강선·김시업. (2023). 수사심리학, 학지사.

경찰청·한국CSI학회. (2023). 과학수사, 미래로의 도약: 지식의 경계를 넘다. The 9th International CSI Conference 자료집.

고선영. (2012). 이상동기 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4): 3-28.

대검찰청. (2013). 범죄분석.

_____. (2014). 범죄분석.

박지선·최낙범. (2013).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4(3): 107-124.

박지선. (2019). 범죄심리학, 도서출판 그린.

서울지방경찰청. (2010). 이상동기 범죄의 이해.

윤상연·백승경·허태균. (2023). 묻지마 범죄의학문적 재정립:이상동기 범죄의 개념화 및 통계적 관리방안, 한국범죄학, 17(3): 83-100.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 (2014).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02: 1-179.

이무선. (2020). 묻지마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6(1): 125-138.

이수정·이현성·이정헌. (2013).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하위유형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보, 13(2): 136-186.

정연대·이윤호. (2013). 묻지마 범죄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영향 : 묻지마 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접근, 한국경찰연구, 12(1): 213-246.

한국경찰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3). 한국경찰학회.

Douglas. T, E., Burgess, A. W., Burgess, A. G., & Ressler, R. K. (2006). Crime classification manual(2nd edition). California: John Wiley & Sons.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개정 2021. 7. 20. 법률 제18299호).

「형법」(개정 2023. 8. 8. 법률 제19582호).

「형사소송법」(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https://wwww.tistory.com/3019(경찰 지구대의 역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816310003866?did=NA(정유정 거짓말 밝혀낸 검찰 수사팀, 우수사례 선정)

교정시설 치료공동체에 대한 질적 메타 종합 연구(상)

유욱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교정치료공동체를 도입하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정 차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치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국외 교정치료공동체에 관한 질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모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질적 메타 종합 연구하였다. 현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벌받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증가하는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과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자 마약류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자를 구속과 처벌이 원칙인 형행이념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에 마약류 수형자 관리에 대한 교정이념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치료공동체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모듈이 미미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질적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교정치료공동체 철학과 모듈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구글 학술검색을 통하여 해외에서 수행된 8편의 교정치료공동체 관련 질적 연구물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 연구들은 Lguirre와 Bolton 제시된 질적 해석적 메타 종합 연구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1차 문헌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주제를 구성하였고, 2차 통합주제, 핵심 주제로 나눠 분석하여 주제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해석적 이해를 중심으로 참여자의 경험 중 교정치료공동체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인 분석으로 기술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교정치료공동체의 성장 효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눠 기술하였다. 교정치료공동체의 부정적 요인은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신뢰 기반의 동요로 나타났다. 긍정적 요인은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와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주도적 단약 효능감 생성, 인본주의 치료 공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과 구성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마약류 수형자의 관리에 관한 교정정책차원에서 교정이념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교정기관에서 교정치료공동체의 도입 및 치료 처우에 교정치료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 예방과 국민건강에 교정 연구의 학문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제어 : 질적 메타 종합 연구, 마약류 중독 사범, 교정치료공동체, 교정치료공동체 철학, 교정치료공동체 모듈

Ⅰ. 서론

마약류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한 국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유엔 마약류 범죄 사무소(UNODC)가 발표한 2018년 세계 마약 보고서(World Drug Report 2018)에서는 2016년 한해 전 세계 성인 인구(15~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마약류를 1회 이상 투여하였고, 이 중 3,050만 명 정도는 마약류 중독 상태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마약 투약자 수가 10년 전 2006년 2억 800만 명에 비해 6,7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마약류 중독과 관련하여 약 45만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6만 8천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2000년에 비해 60% 증가한 것이다(성경숙, 2021:256-257). 2023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류 사용과 밀매자를 집중단속 하고 있다. 이로 검거된 수형자는 2012년 9,225명이었지만 2023년 12월 기준 27,611명으로 지난 10년간 300%가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24). 검거된 법률위반자의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 1,986(43.0%)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이며, 실형 1년 미만 465(10.0%)명, 3년 미만 1,265(27,2%)명, 7년 미만 403(8.7%)명, 10년 미만 90(1.9%)명으로 실형(48%), 집행유예(43.0%), 벌금(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류 사범 중 교정시설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원보다 많다(대검찰청, 2023:191).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수형자들을 관리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일선 교도소에서는 이수 명령 프로그램을 기본과 집중 그리고 심화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 교도소에서 이수 명령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총 652명으로 기본과정 481명, 집중과정 131명, 심화 과정 40명이 참여하였다(법무부, 2023:164). 이러한 법무부의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엄벌정책으로 구속하여 분리 수감 하는 교정 시스템은 재범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높은 재범률로 알 수 있다.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수형자 중 동종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인 재범률은 35.0%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향정 재범률 38.2%, 대마 재범률 37.5%. 마약류 재범률 16.2%이었다(대검찰청, 2023:204). 마약류 만성중독과 관련된 수형자의 검거 연령대는 마약은 60세 이상이 1,550명(60.8%), 향정 7,204명(59.9%)과 대마 2,322명(75.4%)으로 향정과 대마 모두 20~3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대검찰청, 2023:172).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대와 30대 비중이 2021년 56.8%로 처음 50%대를 넘은 후 2022년 57.1%를 차지하면서 청장년 마약류 만성중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중독의 감소와 향정과 대마 중독의 증가는 20대와 30대 청소년과 청장년 그리고 여성의 마약류 투약과 밀매가 과거와 다르게 급증하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되며 특히, 2022년도에는 10대 마약류 사범이 481명(2.6%)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대검찰청, 2023:2022-2023). 마약류 사용은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관계의 단절, 직업 능력의 쇠퇴와 함께 중독으로 인해 2차 3차 범죄의 온상으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Doogan & Warren, 2017). 따라서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치료적 지원은 개인과 가족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사회를 보호하고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회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박근정, 진성주, 박병선, 2023).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국가에서 징벌모델과 치료 모델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징벌모델 또는 범죄자 모델은 마약 수요와 공급을 범죄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응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징벌모델은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수형자들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중독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징벌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유숙경, 2021:112). 하지만 치료 모델은 마약류 수형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권리자로 보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다(성경숙, 2021). 한국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접근 모델은 징벌모델과 치료 모델을 혼용한 모델로 접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 및 투약의 강요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한 것과 같이 엄벌주의도 있지만, 치료감호소와 일선 교도소에서 NA 도입과 수강과 이수 명령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가석방의 기회를 주는 치료 모델 접근도 활용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년 9월). 그래서 마약류 중독자들을 수형한 교정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중독치료와 마약류 확산을 예방하는 재활을 위한 교정치료공동체 운영이 필요하다. 교정치료공동체에서의 치유과정은 블랙박스로 구체적으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교정 치료 공동체의 메카니즘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교정치료공동체에 참여 경험이 있는 마약류 수형자가 참여 경험이 없는 마약류 수형자보다 재범율이 낮고, 긍정적 정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민아, 2020; Mitchell, Wilson & MacKenzie, 2012; Davidson & Young, 2019). 또한, 미국의 교정치료공동체 효과를 본 12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측정 조사한 연구의 75%에서 재범이 감소하여 사회에 적응력을 높였다고 보고를 하였다(Galassi, Mpofu & Athanasou, 2015:7059-7072). 하지만, 교정치료공동체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제기되고 있다(박현나 2022; 유숙경, 2021; 윤종우 2021). 따라서 마약류 확산을 근절하고 마약류 수형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정기관의 개혁과 교정 이념의 변화를 통한 교정치료공동체의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현실에 맞는 교정치료공동체 기본 철학과 구체적인 운영 모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수형자들의 재활과 출소 후 사회 재적응을 돕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치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철학과 구체적인 구성 내용 마련하고자 한다. 그래서 국외 질적 연구를 토대로 메타 종합연구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의 구술 데이터를 종합하여 참여 과정에서 재활과 회복에 미친 영향을 기반으로 한국형 교정치료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국의 마약류 위반 수형자에 대한 교정 처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수형자의 교정 처우는 미국의 경우 치료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와 캐나다의 경우 아편 치료 프로그램(Opioid Qgonist Treatment, OAT), 교도소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s, PNEP)이 있다. 그리고 호주의 범죄 행동과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The Criminal Conduct and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이 있다(박현정, 2022:5). 특히, 미국은 교정시설에서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적 처우를 위해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함께 치료 프로그램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치료 프로그램개발과 연구는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치료적 교정 처우 모델을 도입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마약류 수형자들에게 해독 프로그램(detoxification programs), 메타돈 유지 프로그램(methadone maintenance programs)과 같은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과 재범을 억제하는 치료공동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 교정국(CSC)에서 마약류 수형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기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 수형자들에게 제공하는 제1선의 치료(a front-line treatment)로 아편계 약물 치료 프로그램(OAT)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도소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PNEP)을 9개 연방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호주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억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98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수요감소(Demand Reduction), 공급감소(Supply Reduction), 피해감소(Harm Reduction)를 마약류 수형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수요감소(Demand Reduction)전략으로 범죄 행동 및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과 피해 감소(Harm Reduction)전략으로 아편계 약물 대체 프로그램(Opioid Substitute Programs)과 교도소 주사기 및 주사바늘 프로그램(Prison Needle and Syringe Programs)을 마약류 수형자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2. 교정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in Correctional Institution)

교정치료공동체는 1962년 아일랜드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설립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미국은 주 정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정치료공동체 관리에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Karberg & James, 2005; Werb et al., 2016:2-8). 교정치료공동체는 교정시설을 재활의 장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고, 구성원과 교정직원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사회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Tompkins, Neale & Strang, 2017:173-174)).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정치료공동체의 긍정적 효과는 집단에서 대인관계 기술을 학습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하고 규칙과 규범을 익히고 내면화를 통해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odge, Warren & Linley, 2014:163-165). 마약류 수형자를 범죄자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Tompkins, Neale & Strang, 2017:173-174).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 건강한 삶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사회 기술 훈련을 강화 한다(Saum et al., 2007:1169). 마약류 수형자는 또한, 낙인으로 인해 우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기에 부정적 대인관계로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Debaere, Vanheule & Inslegers, 2014:253-254). 교정치료공동체에서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은 물론 공동의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공동체의 기본 철학이 발

현될 수 있을 것이다(Debaere, Vanheule & Inslegers, 2014:253). 마약류 수형자는 출소 후 사회적 낙인과 함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재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Corrigan, Kuwabara & O'shaughnessy, 2009:140-145; Sattler, Escande, Racine & Göritz, 2017:416-424). 그래서 교정치료공동체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출소 후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정 복지전문가들이 사회 재적응을 돕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Ashdown et al., 2019:735-749). 그래서 참여 기간이 길수록 재범 예방과 마약류 재사용 억제 효과가 있으며, 사회 기술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Inciardi, Martin & Butzin:89-103, 2004: ; Belenko, Hiller & Hamilton, 2013:3-5). 이처럼 참여 기간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치료 공동체 프로그램 내용과 동료들의 역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공동체의 구조화와 철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관리와 교정치료공동체에 지출되는 비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치료공동체는 처벌로 인한 구속수감으로 지출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Zhang, Roberts & McCollister, 2009:389-391). 이와 같이 교정 치료 공동체는 많은 마약류 수형자는 출소 후에도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하여 재적응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교정치료공동체를 확대 적용은 마약류 수형자의 재활을 돕고 이를 통해 마약류 확산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의 치료적 요인과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 그리고 치료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의 구조와 방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질적 메타 종합(qualitative meta-synthesis) 방법

본 연구는 교정기관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 라는 주제로 연구한 개별적 질적 연구물의 주관성과 일반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공동체의 효과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개별 연구물 간 연결을 통해 문제 제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Sandelowski & Barraso, 2007:100-109). 그래서 Noblit과 Hare(1988)가 제시하고 Atkins 등(2008)이 응용한 질적 메타 종합 연구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메타 종합은 양적 변화 정도를 설명하는 메타 분석과 함께 인간 행동의 맥락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인 자료를 통해 변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근거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의 중요한 의미를 공유한다(Sandelowski & Barraso, 2007:100-109). 질적 메타 종합의 방법에는 질적 데이터의 빈도와 효과 크기 계산을 위해 양적 기술을 사용하는 메타 요약(meta-summary), 1차 연구물 전체의 차이점과 모순점을 설명하는 메타 서술(meta-narrative), 중요한 주제나 개념, 메타포를 만들어 내어 1차 연구물들로부터 전체 현상의 그림을 발전시켜 내는 메타 문화 기술지(meta-ethnography) 등이 있다(Paterson, 2012). 메타 문화 기술지는 부분들을 전체로 종합(synthesis)하는 접근법으로서, 교정치료공동체 연구에서 해석적 가치의 창출을 위해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Noblit과 Hare(1988)가 개발한 것이다. 메타 문화 기술지는 세 가지 분석 전략이 있다. 주제나 개념이 유사한 연구 결과들의 중요 주제나 연구 결과를 개념 생성을 위해 변형하는 방법(Reciprocal translational analysis), 연구 결과들 사이의 차이점과 모순을 확인하여 설명하는 논박적 통합(Refutational synthesis), 연구 결과들을 분류하여 부분에서 전체 현상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이론의 방법 적용(Lines-of-argument synthesis)전략 등이 그것이다(Noblit & Hare, 1988). 본 연구에서는 국외 마약류 중독회복을 위한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의 질적 연구 결과들이 서로 다른 참여 경험을 드러내기에 회복 과정에서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에 관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2. 분석 대상 질적 연구의 선정 과정과 기준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교정치료공동체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를 수집하기 위해 Web of Science, Pub Med, Google Scholar의 검색사이트에서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다. 논문 수집을 위해 therapeutic community, Correctional Therapeutic Communities, Drug offenders 등의 핵심어와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y, Grounded theory, Case studies, Life History 등의 핵심어를 검색어로 사용했다. 이러한 검색 과정을 거쳐 총 10편의 질적 연구를 수집했고, 본 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연구 대상이 Drug offenders with correctional treatment community experience로 하였으며, 연구 유형을 Qualitative research로 검색한 결과 2편의 연구가 검색되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Drug addicts with experience in therapeutic communities 확대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 선정 시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의 유형이 분명하지 않거나 자료 분석 과정과 결과가 상세하지 않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둘째, 혼합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 주제가 제한적인 경우 제외하였다. 셋째, 마약류 중독과 관련이 없는 치료공동체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 8편을 논문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물에 대한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researches

No.	First author	Year	Title	Data Collection Methods	Research and Data Analysis Methods	Research Objectives	Participant Information
1	Davidson, K. M.	2019	Treatment engagement in a 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y:	A prison in Pennsylvania from 2016 to2017	A mixed-methods approach/ Narrative	To explore the selection bias and heterogeneous therapeutic effects of a correctional TC program	41 individuals who had experience participating in a TC out of the total 72 participants
2	Rosenberg, A.	2019	Drug Treatment Accessed throug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articipants' Perspectives and Uses	New Haven in Connecticut	Longitudinal, qualitative, one-on-one, in-depth interview	To explore pathways to drug treat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rrectional TC, probation, etc.) throughout the US	45 individuals found guilty of drug-related crimes
3	Finfgeld-Connett, D	2011	Substance abuse treatment for women who are under correctional supervision in the community	Community-based court-supervised substance abusers in the US	Grounded theory approach	To improve community-Based court-supervised substance abuse treatment	Five women who are under correctional supervision in the community
4	Azbel, L.	2017	A qualitative assessment of an abstinence-oriented therapeutic community for prisoner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in Kyrgyzstan.	Opioid addicts participating in a correctional TC in Kyrgyzstan	Focus group interview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reating opioid addic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communities.	20 employees and 110 prisoners (Kyrgyzstan)
5	Greenall, P	2004	Life in a prison-based therapeutic community: one man's experience.	Inmates at HMP Wymott in Lancashire	Case study	The positive effect of correctional TC on inmate recidivism	
6	Debaere, V.	2014	Beyond the 'black box' of the Therapeutic Community: a qualitative psychoanalytic study	TC Participants among substance abusers living in Belgium	Behavioral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ith observers	The effects of recovery oriented treatment for residents who finish the TC program for substance abusers	11 TC participants
7	Melo, M. C	2018	Meanings constructed by drug users regarding treatment in therapeutic communities.	Participants in TCs among inpatients with drug addiction in Brazil	Semi-structured interview, thematic analysis	To understand the meaning constructed by addicts who have experienced internation in TCs	10 male patients addicted to drugs
8	Hamja, H.	2022	The Effectiveness of Coaching Prisoners With The Therapeutic Community Method in The Cirebon Class IIA Narcotics Penitentiary.	Inmates in drug prisons in Indonesia from 2019 to 2020	Case study with in-depth one-on-one interview	Rehabilitation and community therapy of inmates in the correctional TC of drug prisons	10 prison guards, 20 TC inmates, 5 prison social workers

3. 자료 분석팀 구성과 참여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전문가로 메타 종합 분석 연구를 다수 수행한 질적 연구자와 자료 분석과 주체 도출 과정을 함께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질적 연구방법론 전문가 1인, 교정기관 마약류 중독연구 전문가 1인, 중독 관련 영어 번역과 감수 경험이 있는 번역전문가 1인을 포함한 교정시설에 수형 경험이 있는 마약류 중독 회복자 1인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메타 종합 절차 단계를 논의하였다. 원자료 분석 과정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주제 도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마약류 수형 경험이 있는 회복자 2인과 3회에 거쳐 논의하여 실제 경험과 도출된 주제의 합치성을 확인하였으며, 경험에 초점을 두어 최종 수정 과정을 거쳤다.

4. 질적 메타 종합 절차

질적 메타 종합 연구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이해로 전환하기, 현상에 대한 서술과 이론적 자료 수집, 과정적인 이해로 이뤄진다. 본 연구는 Noblit과 Hare(1988)가 제시한 메타 종합 분석 절차에 따라 1차 연구물을 종합하고 해석하였으며 그 절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술 문헌과 회색 문헌들까지 고찰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술 문헌 중 관심 영역 만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2단계에서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 참여 경험을 고찰한 문헌

을 검색하여 주제와 관련 없는 연구물을 제외하고 연구 주제에 부합한 연구 대상 8편을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별 연구물을 반복하여 읽고 각 연구물의 주제와 관련 개념을 정리하였다. 개별 연구물 간의 비교를 위해 연구 결과와 논의를 번역한 자료 총 127쪽으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원자료는 줄 단위로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개념화하여 핵심 주제 212개의 핵심 진술문을 연구 결과의 개념적 범위에 적합한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 방법을 응용하였다(Sandelowski & Barroso, 2007:101-103). 4단계에서는 3단계의 핵심 진술문을 각각 분리하고 이를 유사 주제와 개념으로 묶어 연구물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원자료이든 원문의 의미를 가능한 보존한 연구물을 읽으면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도출하기 위해 범주와 법칙, 주제들의 통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Noblit & Hare, 1988). 질적 연구에 원래의 1차 문헌에 나타난 질적 연구의 개념, 용어 은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Aguirre와 Bolton(2014:279-294)는 구체적인 테이블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연구자는 1차 문헌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주제를 구성했고, 이러한 주제를 다시 통합한 통합 주제를 구성하였다. 5단계에서는 4단계의 연구물 간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적 주제(descriptive themes)를 이끌어냈다. 기술적 주제의 도출을 위해서 Noblit과 Hare(1988)가 제시한 호혜적 분석 전략을 적용하여 연구물들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관된 주제들을 비교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전체화 부분의 순환을 염두에 두었고, 마약 중독과 회복이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치료공동체, 교정치료공동체에서 나타난 효과나 부정적 요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를 분석했다. 6단계에서는 5단계에서의 기술적 주제를 다시 2차 수준으로 종합하여 10개의 종합적 주제(synthetic themes)를 생성하였다. Noblit과 Hare(1988)가 제시한 근거이론을 활용한 방법인 공통된 주제 종합 전략을 활용하여 기술적 주제와 영역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주제들의 공통점을 탐색하여 연관성을 추론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마약류 수형자의 부정적 요인으로 3개의 핵심 주제인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신뢰 기반의 동요',와 긍정적 요인으로 7개 핵심 주제인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화',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 주도적 단약효능감 생성', '인본주의적인 치료 공간'을 3차 종합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7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물의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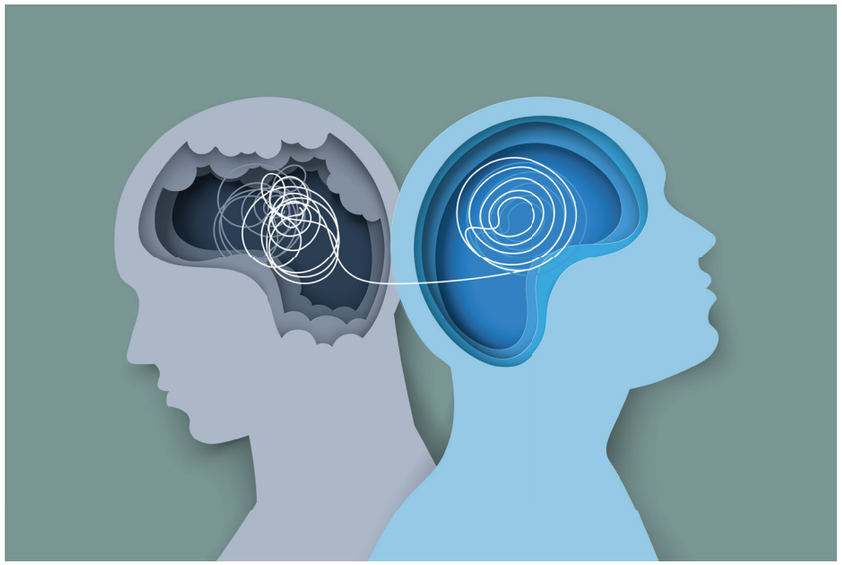

Ⅳ. 연구 결과

교정치료공동체와 치료공동체를 주제로 연구한 국외 질적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107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42개의 통합주제로 재결집하여 10개의 핵심 주제를 최종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핵심 주제를 교정치료공동체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나눠 분류하여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1. 부정적 요인

국외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의 질적 연구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중독에서 재활에 부정적 요인이 있었다.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관행적 실천, 상호신뢰 기반의 동요 등으로 나타났다.

1) 생명력 없는 프로그램

(1) 철학 없는 실천

선정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에서 치료공동체의 철학과 공동체 참여자 중심으로 한 치료적 원칙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 존중으로 기본 철학이 없이 치료공동체가 운영에 있어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공동체의 기본적 철학과 구조화되지 않는

운영 지침 없이 교정기관 상황 또는 사회적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 부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2) 관료주의 실천

교정치료공동체는 각 기관과 수형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살아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분석 연구물의 참여자들은 기관의 구태의연한 이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단약 동기를 생성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교정치료공동체 담당자의 관료주의가 문제라고 하였다. 교정기관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는 프로그램 진행이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여 치료공동체의 실천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 관행적 실천

(1) 전문적 서비스 부족

철학이 없고 구조화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결국 마약류 수형자들의 치유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효과 없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치료공동체의 참여는 시간 낭비만 한다는 구술하였다. 재활을 돕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데 이는 각 교정기관의 정책적 관점과 재정이나 전문인력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공통적인 과제였다.

(2) 동기 없는 형식적 참여

전문적인 서비스의 부족과 관료주의 실천은 회복에 부정적 현상으로 수형자들의 단약 효능감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은 참여자는 법적 강제성에 의해 비자발적 참여로 중독에서 회복보다는 치료공동체 참여로 얻을 수 있는 혜택만을 얻기 위해 참여하였다. 치료공동체는 대부분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기에 자율이 통제된다. 그래서 자율을 추구하는 경우 참여를 꺼리고, 일부는 규칙 위반으로 중독 탈락하기도 했다. 변화 의지 없는 형식적 참여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3) 상호 신뢰 기반의 동요

(1) 미성숙한 참여자들로 인한 치료 환경 악화

치료공동체 참여자 선정은 회복 동기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지 않고 가석방과 같은 개인적 목적을 얻기 위해 참여하였기에 치료공동체의 문턱은 낮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치료공동체 철학과 정신에 벗어나 회복보다는 오히려 중독 심화와 미성숙한 대인관계로 인해 갈등과 같이 부정적 행동을 증폭시키고 이는 치료공동체에 전체에 부정적인 집단 전염 효과로 이어졌다.

(2) 만연한 불신 풍조

치료공동체 참여자 선정 기준은 각 나라의 문화와 교정기관의 교정 철학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나라에서 교정기관 담당자가 치료공동체 참여자를 선정한다. 수형자들은 교정 담당자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과 관리자로 적대감과 저항적 행동을 영웅시한다. 그래서 동료들은 치료공동체 참여는 저항해야 할 교정기관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고 동료들 사이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부여받아 남은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경험한다. 치료공동체 효과와 교정 담당자의 불신은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3) 통제적 관리

교정치료공동체는 일반적인 수형생활과 다르게 중독에서 회복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참여자들의 혼돈과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혼돈은 사동보다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엄격한 규칙이 있다는 인식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치료공동체의 집단관리를 위한 통제적 관리는 자율을 박탈당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요인

국외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의 질적 연구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중독에서 재활에 긍정 요인이 있었다. 사회로 가는 디딤돌, 치료 집중구조, 서로에게 배움, 인격의 재구조화,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자기주도적 단약 효능감 생성, 인본적인 치료 공간 등으로 나타났다.

1) 사회로 가는 디딤돌

(1) 지역사회 연계성

교정기관에서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와는 분리되고 격리되어 수형자들은 고립감을 느낀다고 구술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제공되는데, 이때 참여자는 외부 자원봉사들의 돌봄을 통해 이타심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2) 재사회화 기반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 중독에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형자들은 치료공동체에서의 생활이 통제된 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같이 자율을 경험했다고 구술하였다. 치료공동체에서는 마약류 중독이라는 공통된 아픔을 갖은 동질 집단으로 집단원과 정서적 연결되어 사회와 같은 평화로움을 경험했다고 구술하였다.

(3) 문제 해결 능력의 학습

치료공동체는 단순한 노동과 구금 생활을 넘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관찰 학습하거나 모델링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이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다. 치료공동체는 자신의 중독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복 사례를 통해 모방하고 실천하여 회복 능력을 배양하였다. 치료공동체는 중독 문제를 직면하고 중독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낙관적 출석 기대

모든 수형자는 출소 후에는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하지만, 사회적 낙인과 편견과 같은 양가감정을 경험한다. 특히,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 있다고 구술하였다. 하지만 치료공동체는 스스로 마약중독자임을 수인함으로써 중독에서 회복 의지가 높이고 사회 재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또한, 치료공동체에서는 마약 관련 인연을 단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회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기술을 익혀 회복 환경을 재구성하였기에 출소를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5) 가족 관계 회복

모든 수형자는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은 재범 예방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다. 특히, 마약류 중독은 가족의 병으로 마약류 수형자들은 만성중독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뢰를 잃었고 가족이 해체되거나 단절을 경우가 많다. 중독에서 가족 관계 회복은 중독에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치료공동체에서는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중독자 가족 이해와 손상된 애착 트라우마의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족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출소 후 가족을 재범 예방을 위한 회복 자원으로 활용하여 재범 예방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치료 집중구조

(1) 개별적 서비스 제공

치료공동체에서는 개별적 치료적 접근이 아닌 형식적인 집단 프로그램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지루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일부 치료공동체 연구에서는 개인의 회복을 돕는 접근을 위해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치료공동체 진행자의 전인적 실천

일부 연구에서는 치료공동체 담당자들이 참가자를 존중하는 호칭 사용으로 참여자는 자신이 소중한 인격체가 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또한 치료공동체 진행자들은 참여자들을 마약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도록 돕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진행자를 신뢰하고 협조적으로 접근하였기에 서로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3) 치료 중심주의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은 마약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치료공동체의 목적은 단순히 질서나 규칙 위반에 대한 징벌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둔 친화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자기 탐색을 통해 감정과 접촉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4) 풍부한 치료 자원

치료공동체에서는 운영하는 NA는 중독 회복에 탁월하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치료적 자원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정기관 담당자, 중독 심리 전문가, 사회복지사, 회복자, NA 협심자 등 많은 지지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치료공동

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수 명령 프로그램보다는 중독회복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서로에게 배움

(1) 적절한 자기 개방

마약류 수형자는 중독에 대한 인지 왜곡은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학습된 전략으로 치료공동체 참여 후에도 중독을 부정하고 감정을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독에서의 회복의 첫 단계는 자신이 마약에 무기력했음을 인정하고 자기 개방하는 것이다. 치료공동체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중독자임을 수인하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부정적 감정과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동료들 앞에서 진솔하게 중독으로 인한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였다.

(2) 발전적 상호작용

치료공동체는 지역사회와 교정기관 모두 핵심 요소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다. 교정치료공동체에서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약물 사용과 같은 부정적 학습보다는 집단원의 회복 경험을 나누고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성장의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상호 독려

치료공동체의 NA 특징은 집단원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거울효과를 통해 서로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집단원들의 내적 회복에너지는 부드러우면서도 긍정적인 압력으로 상호작용하여 회복의 의지를 강화하는 의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치료공동체의 진행자들은 직업적 자긍심을 배양하고 참여자들의 단약에 대한 동기부여가 합치되는 긍정적 현상도 일어났다.

(4) 상호학습

치료공동체 집단원은 서로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상호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집단원은 단약 성공과 재발과 같은 실패에서 회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회복한 동료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 전략을 만들었다. 집단원의 자기 개방은 상호학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회복 교과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긍정적 학습 강화

치료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원은 회복에 필요한 긍정적 학습효과가 있었다. 집단원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경험을 수렴함으로써 집단원 모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의 반사회적 이탈된 행동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긍정적 학습은 합법적인 약물을 포함하여 모든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의지에서 단약을 하겠다는 각오로 발전했다.

(6) 치료의 시너지

NA는 위대한 힘에 의지하고 집단에 치유의 힘에 의지하듯 치료공동체에서도 혼자 하는 회복이 아닌 집단이 같이하는 회복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어졌다.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은 외롭고 힘든 여정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회복의 여정에서 동반자가 생겨 회복하고자 하는 단순한 의지를 넘어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졌다.

4) 인격의 재구조화

(1) 사회적 기술 훈련

치료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은 사회 기술을 훈련으로 나타났다. 사회 기술 훈련은 관계에서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알아차려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연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대인관계 기술 배양뿐만 아니라 집단원을 존중하고 자기표현 기술을 학습했다.

(2) 규범적 생활 태도

중독은 윤리와 도덕성의 해이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뇌의 변형으로 인한 약물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은 시민의식과 규범의 준수와 같은 도덕성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며 치료공동체에서는 집단 내에서 작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윤리관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3) 신뢰감

중독자는 편집적 성향이 있어 사회와 타인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참여자들은 사회질서와 규범에 저항하는 허슬러로 의미를 구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상과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 회복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지닌 교정 담당자를 통해 강화하였고, 자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치료공동체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의 회복에 장이 되었다.

(4) 자기 조절력의 배양

중독된다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자기 조절력을 상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공동체는 잃어버린 자기 조절력과 충동성을 다시 배양하는 욕구 지연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즉시 표현하지 않고 종이에 쓰면서 내면의 욕구를 탐색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기술을 배웠다. 치료공동체 집단원들은 내면의 변화 의지가 자기 조절력을 배양한다는 인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5) 사회적 편견의 해소

인종차별이 많은 미국의 치료공동체에서는 집단원 모두가 중독자이고 동시에 회복을 열망하는 개인으로 인식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인지 왜곡에 변화가 있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계 모두 인종차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다. 치료공동체에서는 약자는 배려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5) 윤리적 인간으로의 진화

(1) 윤리적 인격

치료공동체에서 정직과 책임의 회복은 과거의 나태에서 벗어나고 독립적이고 이타적이며 동시에 부지런한 생활 태도의 회복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공동체 진행자들은 집단원을 강제로 이끌거나 통제하기보다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집단원은 참여하지 않는 수형자들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회복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공동체 의식

치료공동체는 공동체 정신과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힘에 의지하는 치료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치료공동체의 집단원은 참여 초기에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하였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소속감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소속감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강하게 지녔고 이는 집단의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3) 직업 인류의 재구성

마약류 수형자들은 대부분 마약 사용과 밀매를 겸하기에 건전한 노동을 수행하기 어렵다. 치료공동체에 참여 후 가장 큰 변화는 일확천금보다는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전한 직업의 가치 발견은 출소 후에 일확천금보다는 현실에 맞는 직업 선택과 얻어진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겠다는 의지가 생성되었다.

(4) 영적 성장

치료공동체는 공동체 정신에 기초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치료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적 도덕적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영성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인지적 영역으로 학습을 통해 생성되기도 한다. 또한, 참여자는 회복을 위한 영적인 성장을 하였다.

6) 자기주도적 단약 효능감 생성

(1) 단약 실천력

치료공동체에서는 개입은 변화 단계 모델에 기초하기에 자신의 변화 단계를 알고 회복 능력이 배양되었다. 또한, 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회피와 같은 다양한 훈련을 학습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배양할 수 있었다.

(2) 잠재 능력의 발현

마약류 수형자들은 자기 낙인과 자기 비하, 자기를 평가 절하하여 무능감과 무가치감을 경험한다. 치료공동체에서는 집단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참여로 숨은 자기 능력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치료공동체의 과업 위주의 도전적인 프로그램은 잠재된 자기 가능성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황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다.

(3) 단약 동기의 강화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은 단약 의지의 생성과 단약 동기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NA에 참여는 단약 동기를 강화했으며, 이러한 동기 강화는 모든 약물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단약 목표가 구성되기도 했다.

(4)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 강화

치료공동체는 엄격하게 규칙 준수하지만, 한편으로는 강화를 제공하여 재활 의지를 높인다. 집단원은 교정기관 밖 외부 기관을 방문하여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석방의 혜택을 제공하여 회복의 동기를 강화하였다.

(5) 마약의 각성

마약류 수형자들은 마약 중독의 끝은 자살과 같은 파국으로 알고 있지만 갈망과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한다. 치료공동체에서는 마약에 대한 피상적 각성이 아니라 철저한 각성이 일어났다. 지속적인 중독과 재발은 묘지라는 인식이 생산되어 중독에서 회복 의지로 이어졌다. 마약 사용은 건전한 죄책감이 형성되고 재발을 새로운 재활의 기회로 보고 회복 의지의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6) 단약 방법과 목표설정

마약 중독에서 회복은 단약 의지 강화인 동시에 사회 기술 향상이며 또한 사회 지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치료공동체에서는 집단원이 회복에 가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발굴할 수가 있었다. 회복 자원은 체험학습과 재발 경험은 회복을 위한 전략의 재구성으로 볼 수 있다.

7) 인본적인 치료 공간

(1) 안전한 환경

치료공동체는 회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약물 충동과 약물 유혹으로 인해 갈망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교정치료공동체는 이중의 공간에서 마약의 유혹을 단절하고 마약류로부터 집단원을 보호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2) 유연한 접근의 치료

치료공동체 참여는 참여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게 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중독회복 전문가들은 집단원의 중독회복 여정에 참된 동반자로 함께하기에 집단원은 자신의 삶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어졌다. 이처럼 전문가의 전문성과 유연한 접근은 회복으로 이어지는 변화 동기를 유발하였다.

(3)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환경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와 교정치료공동체에서는 집단원의 회복을 위한 친목과 상호지지 등을 통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치료공동체는 집단원의 참여와 활동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상호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4) 참여자의 자율성 존중

교정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의 선택이나 자율성보다는 교정 정책 방향, 교정 철학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정치료공동체는 치료공동체 철학에 근거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스스로 단약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 다음호에 이어서

교정기관, 수용자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정책 시행

한희도
영월교도소장

지난 6월 말, 포도 생산과 와인 사업으로 유명해진 영월지역의 협력기관으로부터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영월교도소로 농촌 일손 돕기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다.

각종 언론 보도나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전언을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요청이 왔을 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일정을 조정하여 자원한 직원들과 봉사단을 꾸렸다.

물론 직원들의 봉사활동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교정기관에서 수년 동안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특별한 사례는 아니지만 다행히도 지역 농민들로부터 나름의 좋은 평가와 반응을 얻고 있다.

협력 기관으로부터 소개받은 영월 외곽의 800여 평이 되는 포도 농장에 도착하였을 때 일손 부족으로 포도 봉지 씌우기 작업 시기가 다소 지연되어 근심 어린 얼굴의 80대 노부부와 땀에 젖은 채 작업에 바쁜 50대 후반의 아들이 우리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에 응답하듯 우리 봉사단은 30도를 웃도는 더위와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송이 송이마다 봉지를 씌워 나갔으며, 작업의 마무리 즈음 80대 노부부의 눈가의 웃음으로 피로를 잊고 보람됨을 느꼈다.

이러한 농번기 때에 마침 법무부에서도 지역사회에 있는 교정기관에서 농촌 일손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그 과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과 동시에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일반 중소 제조업체나 건설 현장 등 인력이 필수인 개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고, 농촌지역에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으로 외국인이 농업인력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농사를 영위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무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일부 교정기관을 지정하여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모범수용자들을 선발하여 지역 농협이나,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법인체와 협의하여 농촌 일손 지원 정책을 시행토록 하였다.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적인 수용자들을 선발하여 출소 전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형 교정시설을 운영 중인 경남의 거창구치소, 강원도에 영월교도소가 있는데,
먼저 올해 전반기 산청군과 협약하여 농촌 일손 지원형 외부 통근 작업을 시행한 거창구치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벼 육종 작업과 딸기 하우스 재배 현장에 교정성적이 우수한 선발된 수용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는데 초기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우려 섞인 반응과는 달리 저렴한 임금에 일도 잘하고, 작업의 성과도 좋다며 다른 농업 현장에서도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농촌 일손 지원형 외부 통근 작업의 시행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 농업 현장에서의 여러 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수용자를 고용할 수 있어 인력비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둘째,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정공무원의 관찰과 작업 지도로 작업능률의 향상 및 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셋째, 작업 수용자 출소 시, 대체 인력의 원활한 공급으로 인력 및 작업의 공백 발생의 우려가 없으며,
넷째, 고용주와 협의를 통해 작업량 및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수용자는 폐쇄된 교정시설을 벗어나 곧 복귀할 사회 적응의 기회를 제공받고, 작업에 대한 대가의 수령으로 노동 의욕의 고취와 사회복귀 후 일정 기간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교정기관은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어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로 교정행정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이 외부로 이동하여 작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우려와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작업 중 도주 사고가 발생한다면 좋은 취지로 시행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등 모든 것들이 수포가 되는 위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교정공무원의 계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고, 작업장 내의 작업 공간 확보와 현지 직원들과의 작업 분배, 인간관계, 식사 문제 등 여러 대내·외적인 제약 요인들도 따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월교도소는 준비를 완료하여 7. 16.에 영월농협과 MOU를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여, 본격적인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 농촌의 인력 공급 측면에서 보면 매우 미미하긴 하지만, 우선 몇몇 지역 교정기관을 시작으로 하여 각 지역의 교정기관에서 전향적으로 이 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농촌 일손 지원에 보탬이 된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교정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엄중 관리 대상자 관련 판례 연구(상)

김지영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변호사

목차

Ⅰ. 엄중 관리 대상자 관련 판례의 검토 의의
Ⅱ.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Ⅲ.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Ⅳ.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Ⅴ. 맺음말

Ⅰ. 엄중 관리 대상자 관련 판례의 검토 의의

엄중 관리 대상자는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 대상 수용자로 구분한다(형집행법 제104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194조). 소장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창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고, 소장은 이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 권리의식의 향상 등의 영향으로 엄중 관리 대상자 지정과 해제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엄중 관리 대상자 해제 관련 업무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과 해제, 마약류 수용자 지정과 해제,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과 해제와 관련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를 검토하여 본다.

Ⅱ.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은 ①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②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③ 공범 · 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 구속영장 ·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이다.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고, 현재의 수용 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직폭력 수용자의 해제와 관련하여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1.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 판례에서 법원은 소장이 수용자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

정하고 해제하는 업무를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 관련 법원의 판단

1) 행정처분 해당 여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 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 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수용자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 행위와 수용자의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가) 소장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의 부여가 금지되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0조), 조직폭력 수용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용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송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1조). 또한, 조직폭력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있고, 귀휴나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처우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2조), 조직폭력 수용자의 서신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대상이 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3조). 위와 같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형집행법 제104조 제2항) 일반 수용자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를 결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은 피고가 그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고, 현재 교정시설의 운영 현실상 한번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그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본문). 따라서 그 지정의 효과는 계속성을 갖고 있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수인할 것을 강제하는 성격이 있다.

다) 위와 같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이나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조직폭력 사범이 아닌데도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강요받게 되고, 이익이 되는 처우에서 배제되며, 조직폭력 사범이 아닌데도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어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됨으로써 다른 수용자가 조직폭력 수용자로 알게 되어 그 결과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 특히 원고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이므로 가석방이나 사면 등으로 수용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평생 받아야 하는데,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이나 지정 해제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조차 없다고 보게 되면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제4조나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5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라)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이나 지정 해제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익·불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수용자들의 형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언제 지정 해제를 할 것인가도 중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정이나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장래에 있을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

- 대전지방법원 2018. 1. 10. 2017구합104216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 -

2.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가. 대구고등법원 2018. 9. 14. 2018누3074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도박죄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지원 2015고합○○○). 원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원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① 강도상해 부분에 대하여 "현금 638만원을 빼앗았다."는 부분이 "현금 155만원을 빼앗았다."로 변경됨과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의 죄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된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8. 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6도○○○)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2016. 5. 27. 위 항소심 판결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자, ○○구치소장은 같은 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그 후 △△교도소를 거쳐 2016. 11. 7. ◇◇교도소로 이감된 후, 2017년 7월경 피고에게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위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3. 이 사건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를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의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원고는 2002년경에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을 뿐 그 후로는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용 원인이 된 구속영장, 공소장 및 재판서에도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라고 과거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정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의 범위

가)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① 소장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는데(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② 그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같은 조 제2호)',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같은 조 제3호)'이고, ③소장은 위와 같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 및 현재의 수용 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위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1항), ④ 소장은 위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형태나 의미 및 그 규정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정한 '조직폭력 사범'이란, 수용자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하였던 전력이 있는 경우까지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전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102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80366 판결 등 각 참조).

① 행집행법 및 그 시행규칙은 인신 구금에 관한 법령이므로 수용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요건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가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중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부분은 문언상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과거형인 '조직폭력 사범이었던 자로 명시된'의 의미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내지 위와 같은 재판서 등의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조직폭력 사범 인 경우'를 의미할 뿐, 이를 확장 해석하여 '그 당시에는 조직폭력 사범이 아니나 과거에 조직폭력 사범이었던 경우'까지 이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판서에 피고인의 과거 폭력조직원 활동 전력을 기재하는 것은, '당해 범죄가 폭력조직원 활동전력이나 그로부터 예견되는 폭력 성향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므로, 비록 재판서에 피고인의 과거 폭력조직원 활동 전력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의 문언을 벗어난 확장 해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이 조직폭력 사범을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여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수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높은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교정시설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수용자들을 적절히 처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현재 이러한 우려가 높지 않은 수용자들까지 그 지정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④ 형집행법 제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자의 과거 전력만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 대우를 할 수는 없다.

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1항 후문은 "현재의 수용 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수용 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조직폭력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재의 수용 생활을 기준으로 할 뿐 과거의 수용 생활 중 집행된 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⑥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전문이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번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상태를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지정 대상에 대한 요건 규정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에 관한 구속영장과 해당 판결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7. 8. 선고 2015고합10, 18(병합)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2144 판결의 각 서두에 "피고인(피의자, 이 사건의 원고)은 안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파'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안성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경 약 1년 동안 '○○파'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강도상해, 흉기 휴대 협박, 도박)의 범행 당시인 2014. 9. 20.~2014. 9. 21.경에는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의 범위 해석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다는 점이나, 달리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으로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각호 내지 제199조 제1항에서 정한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정 처분은 당초부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 지정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은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지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나, 원고에게 위 조항에서 정한 형식상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사유인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집행법 및 그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취지가 주로 교정시설

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그 지정 해제 사유를 반드시 형식적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유인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해소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즉, ㉮ 위 조항에서 정한 지정 해제 사유는 당초의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자체는 적법한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점, ㉯ 수용자는 자신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구체적인 근거와 경위를 제대로 알기 어려우므로 당초의 지정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내에 그 지정 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당초의 지정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당초부터 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정 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까지 할 수 없다고 차단하는 것은 수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의 취지가 주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필요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나 실익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는, 당연히 위 조항에서 정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사유에 포함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그 지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수용자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그 제소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정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당초의 지정 요건 흠결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이라는 후발적인 해제 사유의 존부만 주장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그 필요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석방될 때까지 지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형집행법 제4조, 제5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처음부터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지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지정 처분의 당연 무효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당초의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그 제소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지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음부터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닌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잘못 지정한 이 사건 지정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당초의 이 사건 지정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이유로 그 지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역시 위법하다.

①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이때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가 정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라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공소장 및 재판서에는 과거형인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현재형인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등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그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형집행법 및 그 시행규칙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하자가 중대한 것임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폭력 사범의 지정 취지 및 과거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위 조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 한때에 조직폭력 사범이었을 뿐인 수용자는 위 조항의 조직폭력 사범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잘못 해석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와 달리, 당초의 이 사건 지정 처분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그 지정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80366 분류 처우개선 신청 거부처분 취소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3. 23. 한국마사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2016. 3. 24.◌◌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의 범죄사실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는 제주도 조직폭력배 '◌◌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를 대리마주로 내세워 자신의 말을 조교사 ΔΔΔ, 기수 OOO, 기수 ◇◇◇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기수가 말을 고의로 '1, 2착 이후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경마 경주의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원고가 2016. 3. 24. ◌◌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에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였다.
원고의 변호인은 ◌◌구치소에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 2016. 7. 26.경 서귀포경찰서에 원고가 조직폭력배 계보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서귀포경찰서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않았다.
원고에 대하여 2016. 10. 21.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6. 12. 12.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여전히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어 있다.
원고는 2016. 10. 31.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를 조직폭력배로 분류하지 말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1. 8.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 경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에 의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구속영장에 '제주도 조직폭력배 ◌◌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참고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해당 기관에서 현재 조직폭력원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서를 ◌◌구치소로 제출하면 의뢰인의 수용처우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송 경과

- 2016. 7. 소장 부본 접수
- 2016. 12. 12. 원고 ◌◌교도소 이송
- 2017. 4. 2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366호 판결 선고
  (원고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 ◌◌구치소장 부담)
- 2017. 5. 피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48682 사건)
- 2017. 6. ◌◌교도소 교도관회의를 통하여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 2017. 8. 23.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82 화해권고 결정
  (원고 소 취하, 소송 비용 1심은 피고 부담, 2심은 각자 부담)

(3) 판결의 주요 내용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집행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조직폭력 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였고, 위 지정에 대한 원고의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은 법률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를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제주도 조직폭력배 ◌◌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의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은 단순 열거되어 있다. 또한 서귀포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신은 이 사건 답변이 있은 이후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답변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답변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은 "소장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으로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제1호)',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제2호)',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제3호)'를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199조 제1항은"소장은 제19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다. 현재의 수용 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은 수용자의 수용의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① 위와 같이 조직폭력 사범을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여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의 취지는 수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높은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교정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수용자들을 적절히 처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② 형집행법 제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자가 과거 한때 조직폭력 사범이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③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것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은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1항 후문이 "현재의 수용 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19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고 있어 수용의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해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 아니었더라도 수용 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조직폭력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3)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거나 원고의 수용 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수용의 원인이 된 범죄인 한국마사회법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는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2016. 3. 24. ○○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것 외에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원고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혐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원고가 '제주도 조직폭력배 ○○파 부두목급 조직원'이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2016. 7. 15. 선고된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20, 3580(병합)], 2016. 10. 13.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794)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빠져있는 점, ③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귀포경찰서장은 2017. 1. 31. '원고를 현재 서귀포경찰서가 조직폭력원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에 대하여 '서귀포경찰서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형집행법 제104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정하는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에서 체포영장·구속영장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를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자가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조항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단지 체포영장·구속영장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답변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다음호에 이어서

독일 교정시설의 디자인 특성 및 기준에 관한 연구(하)

박승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목차

1. 교정 선진국으로서의 독일
2. 독일 교정시설의 실태조사
3. '선진교정'의 도약을 위하여

2. 독일 교정시설의 실태조사

수용자 친화적인 거실

롭 소장은 CCTV가 있는 방을 안내해주었다. CCTV가 있는 방이라고 다른 일반 거실과의 차이점은 없었다. 단지 거실 출입문을 열면 우측 천정 모서리에 CCTV가 하나 있고 거실 내 의자 다리와 테이블 다리가 둥근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1인 거실의 면적을 정확하게 재볼 수는 없었으나 롭 소장은 수용거실의 면적이 화장실을 포함해 11㎡라고 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제 느낌은 그보다는 더 넓게 느껴졌다. 빈 거실이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우선 거실 밖으로 난 채광창이 커 전체적으로 거실 안이 환한 느낌이었다. 창틀은 알루미늄 재질로 창호는 'Tilt & Turn'[15]방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었다. 작동성과 기밀성, 보온성이 탁월해 보였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창호는 한국 교정시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였다. 우선 창의 아래 위의 길이가 길었다. 창의 아랫부분이 성인 남자의 허벅지 부분에 올 정도라 외부 전망도 좋고 채광성도 좋았다. 특이했던 점은 전체 창호 폭의 60% 정도는 고정형 창호였으며 나머지 40% 정도가 'Tilt & Turn' 방식의 창이었다. 이질적 기능의 창이 결합된 만큼 외부 철격자 부분도 특색이 있었다. 창문 전체에 외부 철격자가 설치되어있었으나, 여닫이 창 부분에만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안전 철망의 경우도 창문에 바로 맞대어 설치하지 않고 네모난 틀 모양으로 돌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실 내 수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듯 했다(나중에 물어 안 사실이지만 독일 교정시설의 안전 철망은 자살 방지가 목적이 아닌 쓰레기 투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창문은 복층유리(pair glass window)로 기밀성과 보온성이 탁월해 보였다.

독일 교정시설 창문의 안전 철망은 사소한 부분인 듯 보이지만 한국의 교정시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았다. 2010년 안전 철망이 한국 교정시설의 독거실에 도입되고 난 후 일부 수용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었다.

사진 26.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교정시설의 1인 거실 모습. 면적은 11㎡이고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문 옆 별도의 공간에 있으며, 침대, 테이블, 의자, 선반 수납장, 옷장, 소형 냉장고가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다.

15) Tilt & Turn 방식은 독일식(유럽형) 창문 개폐 방식으로 미닫이 창호가 아닌 여닫이 기능에 환기를 위해 윗부분을 열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독거실의 안전 철망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 결정을 했었다. 이때 헌재의 판단 중에는 "수형자들이 매일 30분에서 1시간 실외 운동 시간을 통해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과연 수형자들은 하루에 1시간만 햇빛을 보면 충분하다는 말인지 독일 교정시설의 채광 여건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거실 안에는 침대, 테이블, 의자, 선반 수납장, 옷장, 소형 냉장고가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었다. 테이블과 맞닿은 벽면에는 220v 콘센트 두 개와 TV용 안테나 단자가 하나 있었다. 롭 소장은 수용자가 19개의 TV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슈발름슈타트 교정시설에서도 궁금했던 바라 롭 소장에게 수용자가 전기제품을 이용할 때 전기요금은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다'라는 말이었다.

사진 27.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창문과 철격자. 우측에 자세히 보면 원형 구멍이 촘촘하게 뚫린 안전 철망이 보인다. 이 부분의 창문이 'tilt & turn' 방식으로 여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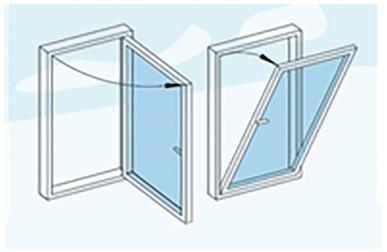

사진 28. 'tilt & turn' 방식의 창문 여닫는 방식의 개념도이다.

화장실 앞에 서서

화장실에는 소형 수납장, 변기, 세면대가 있었다. 여기도 건식 화장실이었다. 1인 거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교정시설은 외부 창가에 화장실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교정시설은 내부 출입문 옆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한국과 독일 교정시설의 화장실 위치가 정반대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추측컨대, 한국 일반 주거생활에 있어서 화장실이 습식화장실이라는 점, 특히, 한국 교정시설의 경우 기능의 미분화로 세면, 용변, 세탁, 샤워, 설거지 등의 기능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모두 이뤄진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화장실의 형태가 건식인지 습식인지, 위치가 창가인지, 출입문 옆인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실 내 화장실의 위치가 창가가 아닌 출입문 옆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순간 교정행정의 문화는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선 거실의 구조가 일반 사회와 차이가 없어지는 효과를 들 수 있다.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창가에 화장실을 배치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듯이 말이다.

이런 면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배수구가 없는 건식 화장실은 수용자들이 더 이상 화장실에서 설거지, 세탁, 샤워 등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수용자 급식문화는 일반 사회의 집단 급식소처럼 수용동 안 일정 공간에 모이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세탁도 샤워도 변화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직원들의 시찰문화도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거실 안 수용자들은 생활공간으로 바뀐 창가에서 밝고 따뜻한 햇볕을 쬐며 창문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교정행정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쉽게 계량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사진 29.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책자에 수록된 수용동 복도 모습이다.

사진 30.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 책자에 수록된 식당. 최초 6인용 테이블이었으나 현재는 4인용 테이블로 바뀐 상태이다. 중앙에 배식구가 보인다.

황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 교정시설은 이런 모습이 문화로 자연스레 녹아든 모습이었다. 그들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말이 아닐까?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수용동의 식당은 각 층의 중앙 복도에 있었다. 한번에 24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사각 테이블 6개에 테이블당 의자 4개가 있었다. 미국의 중구금 교정시설의 경우 공동 식사 구역이 있다고 해도 테이블과 의자가 바닥 고정형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중경비시설인 이곳 식당의 테이블과 의자는 프레임이 모두 금속제였지만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한쪽 벽면에는 배식구가 있었는데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로 옮겨진 식사를 배식구 안쪽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나눠준다고 했다. 이때 식사를 배식 받은 수용자들은 배식구 앞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고 자신의 방으로 가 식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선택은 수용자의 몫이었다.

교정시설이며 재판중인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자주 어울리는 게 보안에 위해요소가 아닌가라고 물어보았다. 롭 소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물론 동일 사건의 공범들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입맞춤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용동에 분산해서 수용한다고 했다. 시설 자체가 각 수용동의 수용자들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거실이 한 방향으로 나있어 통모, 통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단 수용동이 셋이니 공범은 최대 3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여기서 잠깐! 글 앞머리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정면 파사드의 높이가 15m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슈발름슈타트 교정시설에서도 들은 사실이지만 교정시설 주벽의 높이는 헤센 주 규정으로 최소기준 6.5m만 넘기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곳의 주벽은 왜 이리 높은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점은 롭 소장의 설명으로 대신한다.

고층형 교정시설에서 저층형 교정시설로

사진 31.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책자에 수록된 철거 전 11층 고층형 교정시설 전경. 좌우측으로 III, IV 교정시설이 보인다.

"현재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은 기존 교정시설을 헐고 같은 부지에 새로이 재건축한 시설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1973년 신축한 11층 높이의 고층형 교정시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시설은 누가 보아도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층형 교정시설이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프로인게스하임 지역은 1880년대부터 교정시설이 자리한 곳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 역시 교정시설에 대해 거부감이 별로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과거 11층 높이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은 수용거실이 중앙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는 '중복도형'건물이었습니다. 수용인원이 많을 때에는 1,100여 명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창가에서 외쳐대는 수용자들의 소리, 식기로 철격자를 두드리는 소리 등이 주변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었습니다. 소음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교정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복도의 축이 동·서로 나있어 북향인 수용거실의 경우 일조 여건이 형편없었습니다. 수용자 운동장은 옥상 층에 있었는데 한 번에 많은 수용자가 운동을 하기 에는 시설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센 주 법무부에서는 2000년 기존의 11층 고층형 교정시설을 허물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헤센 주에서는 기존 교정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교정시설로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바이터슈타트(Weiterstadt)'에 교정시설을 신축했습니다. 이 시설은 200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시설까지의 거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헤센 주 법무부에서는 기존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부지에 교정시설을 재건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4층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없게 시 건축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지에 새로운 교정시설을 건축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최상의 답안을 도출해내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교정정책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그릇의 형태가 나온 것입니다."

사진 32.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 책자에 수록된 철거 전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의 모습이다.

사진 33.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 책자에 수록된 전동차의 모습이다.

수용동 계단을 내려오며 20년도 채 되지 않은 11층 고층형 교정시설을 허물고 새로 재건축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게다가 스스로 '실패작'이라고 인정하는 태도까지. 우리 일행은 롭 소장을 따라 지하 2층으로 내려왔다. 통문을 열고 지하 2층 복도로 들어서며 든 첫 느낌은 쾌적함이었다. 주의를 집중해 지하 2층 복도의 벽면과 천장 그리고 바닥을 살펴보았다. 결로, 누수, 균열, 시멘트 백화현상 등 건물 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자 현상을 볼 수가 없었다. 교정시설의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까지 연결되어 있었는데 전동차로 옮겨진 물품 등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각 수용동으로 운반하는 구조였다. 롭 소장은 엘리베이터의 또 다른 기능으로 수용동 등에서 인질사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진압팀이 엘리베이터 통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옆 복도를 지나는데 롭 소장은 중간 통문 하나를 가리키며 수용자 취사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다. 구조가 서울교정시설 직원 식당 옆의 여사 출입 통문과 유사한 분위기였다. 롭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40명의 여성 수용자들이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급식을 준비한다고 했다. 취사장에서 준비한 급식이 이 통문을 통해 남성 수용자들이 있는 수용동으로 옮겨진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교정시설의 경우 남성 수용자의 수에 비해 여성 수용자의 수가 소수이며, 남성 수용자들이 취사장에서 급식을 준비해 여성 수용동으로 옮기는 방식인데 이곳은 정반대의 형태였다.

철격자 하나에도 최고의 기술을

지하 복도의 계단을 올라 건물 밖 중정으로 나왔다. 맑게 갠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볕이 사

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특히 건물 외벽에 칠해진 연두색 페인트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울렸다. 특히 중정에는 적색 우레탄이 깔린 농구장 코트가 있어 휴식을 나온 수용자들이 야외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 코트 옆에는 고정식 탁구대와 벤치가 있어 야외활동을 나온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수용거실 창이 있는 건물 면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롭 소장의 설명으로는 야외활동을 나와 흡연하며 버린 것도 있지만 거실에서 흡연한 후에 밖으로 버린 것도 있다고 했다. 직업적 특성상 보안 구역 안팎으로 담배꽁초를 보면 긴장을 하게 된다. 독일 교정시설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 흡연자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모난 중정을 천천히 걷다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방이 갇혀 있는 공간에서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 아닐는지.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출소하기 전까지 온전한 하늘을 바라볼 수는 없는 처지였다. 왜냐하면 중정 위 전체를 촘촘한 그물망이 덮고 있기 때문이었다. 건물의 옥상 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강철 와이어줄에 플라스틱 소재 줄을 연결해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롭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헬리콥터를 이용한 수용자 탈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놀랍게도 철망의 늘어짐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롭 소장은 탈옥 방지시설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이 철망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 제작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물망 설치 비용이 35만 유로(한화 4억 7천여만 원)라고 한다. 강철 와이어줄 위로 비둘기 한 마리가 한가로이 앉아 있었다.

사진 34.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 책자에 수록된 교정시설 수용동 사이의 중정 모습. 좌측에 고정 탁구대와 벤치가, 가운데 적색 부분이 우레탄이 깔린 농구 코트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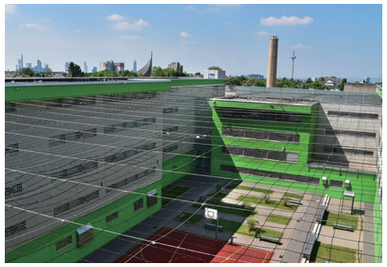

사진 35. 헬기 등을 이용한 수용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각 수용동 사이로 강철 와이어로 연결된 그물을 고정해 놓았다.

사진 36.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 책자에 수록된 교정시설 수용동의 모습. 비교적 철격자의 형태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의 철격자[16]도 특이했다. 크로스바에 강철 바를 넣고 용접한 한국 교정시설의 철격자의 형태와는 판이했다. 우리가 직접 만져보며 관심을 보이자 롭 소장은 철에 망간 함유량(망간 함유량 12~14%, 탄소 함유량 1~2%)[17]을 높여 특수하게 제작한 철격자라고 했다. 철격자에 용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사전에 계획한 규격에 맞춰 제작한 합금판을 레이저 가공으로 바둑판 모양처럼 금속을 잘라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주물 성형이 아닌 하나의 금속 판형을 가공해 철격자를 만들었다는 말이었다. 롭 소장은 강도(표면경도의 경우 브리넬경도 600HB)가 뛰어나 금속 톱으로 절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철격자가 녹이 슬지 않아 페인트 도색의 필요가 없고 따라서 철의 부식으로 인한 건물 외벽의 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덧 C동이었다. 롭 소장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만든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소개했다. 수용자들은 교정시설 내 작업실에서 다양한 공예품 제작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인형 등을 만드는 목공예, 직물공예, 가죽공예, 도자기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또한 제작한 공예품들은 판매를 하기도 하며 교정시설에서 바자회를 연다고도 했다. 전시실에서는 폐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사무용 손가방이 눈길을 끌었다. 투박한 가죽 위에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흐르는 마인강 철교(Teutonic Knights Bridge)에서 보이는 유로타워 방향 실루엣을 레이저로 음각해놓은 제품이었다. 롭 소장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자신도 이와 비슷한 가방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수용자들이 만드는 공예품들은 수용자에 따라 품질이 제각각이라며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C동을 벗어나 수용동과 주벽 사이로 이동했다. 주벽 안쪽으로 보조 펜스가 열을 지어 뻗어

사진 37. 마인강에서 바라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중심부의 고층건물 실루엣. 유럽 경제중심지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전경으로 교정시설 내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실루엣 그림을 볼 수 있다

사진 38.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 책자에 수록된 교정시설 주벽 안 안전철조망의 모습. 멀리 높이 331m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TV 안테나 타워(Europaturm)가 보인다.

16) 철격자 제조회사 홈페이지: http://www.mgt-mv.de/unternehmen.html
17) 철격자 합금 관련 자료: http://www.mgt-mv.de/pdf/Mangangitter.pdf

있었다. 보조 펜스가 있는 곳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Ⅲ여자교정시설과 경계를 맞댄 곳이었다. 주벽의 높이는 6.5m로 헤센 주 주벽 최소 기준에 부합했다. 주벽의 높이가 낮아서인지 내부의 보조 펜스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윤형 철조망이 2단 3열로 설치되어 있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 빛이 사람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듯 했다. 롭 소장은 주벽과 보조 펜스 사이에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고 식별하기 위해 전파탐지 장비를 설치했다고 했다. 물론 CCTV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다. C동 주벽 아래를 보니 투광등이 지면에 설치되어 있었다. 한국 교정시설에서 보안등이나 탐조등은 공중에서 아래 방향으로 비추는데 지면에서 위로 비추도록 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롭 소장은 CCTV가 사람 키 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탓에 투광등이 위에서 아래로 비출 경우 그늘이 져 사람 얼굴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지면에서 조명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실제 경험이 없어 그 효용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세상과의 대화, 천장에 구멍 하나

C동에서 모퉁이를 돌면 정신치료사동과 의료사동이 나온다. 그 옆에는 교회당이 있었다. 교회당 입구 옆에는 '사제실(Seelsorge)'이 있었다. 교회당으로 들어서자 시야 가득 따뜻한 햇볕이 들어왔다. 장방형으로
길게 뻗은 교회당 내부는 독특한 구조였다. 교회당 앞·뒤로 출입문이 하나씩 있었다. 앞쪽의 출입문 옆으로 사제의 준비공간이 따로 있었다. 교회당 전체는 노출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했는데 벽면의 하부는 거친 마감을 상부는 곱게 샌딩을 해놓고 있었다. 또한 두 개의 이질적인 면은 직선으로 나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치 호수에 잔잔한 물결이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노출콘크리트 공법의 경우 균열 발생 등의 이유로 웬만한 기술력이 아니면 쉽게 쓰지 않는 공법임에도 교회당 내부는 흠잡을 곳이 없었다.

사진 39.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 책자에 수록된 교회당의 모습이다.

사진 40.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 책자에 수록된 교회당의 모습이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교회당의 천장이었다. 제단이 놓여있는 위쪽으로 뚫려있는 천장의 채광창으로 강렬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마치 무대를 비추는 핀 조명(pin light)처럼 빛의 한복판에 있는 제단이 주는 느낌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경건함을 줄 것 같았다. 채광창 아래 나무를 깎아 만든 제단이 놓여있었다. 두 개의 나무를 다듬어 연결한 것이라는데 가격이 무려 1만 7천유로(한화 2천 2백만 원)라고 한다. 또한 교회당 벽면과 천장 곳곳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적, 녹, 황, 청' 4원색의 동그란 점(dot)이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군데군데 가는 노란색 띠가 천장과 벽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빛의 흐름을 표현한 듯 했다.

롭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 교회당은 단순한 종교집회 장소의 의미를 떠나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했다. 헤센 주 건축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총 공사비의 0.01%를 예술작품 조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에 따라 지어진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 일행은 예술품 안에 들어와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셈이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적어도 예술작품으로서 이 교회당을 진정으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교회당 내부의 빛에 집중하고 그 변화를 감지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홀로 서 외부의 빛과 자기 내면의 빛이 조응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직원이든 수용자이든 관계없이 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물론 누구는 잿빛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는 천장에 구멍 하나 뚫린 방으로 기억하기도 하겠지만. 종교집회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일요일에는 신·구 기독교가 미사와 예배를, 금요일에는 이슬람이 주므아(Jumu'ah)[18] 예배의식을 행한다는 롭 소장의 첨언.

교회당에서 느낀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 일행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의 체육관으로 들어섰다. 체육관 입구 1층에는 직원 체력 단련실이 있었다. 슈발름슈타트 교정시설에 있는 곳보다 조금 더 좋아보였다. 아무래도 새로 지은 시설이니 그런 느낌이 들었나 보다. 체력 단련실은 각종 운동기구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함부로 사용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예를 들어 정리되지 않은 아령, 땀을 닦고 난 수건, 방치된 헬스복 등은 전혀 없었다.). 롭 소장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이 갖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직원이 일일 4시간 이상 체력단련을 할 경우 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했다. 4시간 이상 운동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기관 차원에서 직원 체력단련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해하면 될 듯.

사진 41.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교정시설의 체력 단련실의 모습. 수용자와 직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18) 무슬림들의 금요합동 예배(https://en.wikipedia.org/wiki/Jumu%27ah)

눈을 뗄 수 없는 체육시설

계단을 통해 2층 본부석으로 올라갔다. 계단 벽면에는 각종 스포츠 장면이 스프레이 벽화(spraycan art)로 그려져 있었다. 수용자들의 작품이라고 했다. 체육관 본부석은 체육관 높이로 인해 거의 3층 높이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사진 42.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교정시설 체육관의 모습이다.

난간을 제외하고 안전망이나 유리 부스 시설은 없었다.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지적했으나 체육관 관리 책임자인 파페르트(Pappert) 씨는 수용자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며 그런 우려는 없다고 했다. 그는 체육관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직 트레이너로 직원 6명의 도움을 받아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었다. 본부석에서 체육관을 내려다보니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규모는 진천 법무연수원에 있는 체육관과 거의 같거나 조금 더 크다는 느낌. 중앙 본부석을 기준으로 좌·우측 벽면에 리프트 방식의 실내축구 골대가 있었다. 사용하고 난 후 자동으로 골대가 접히며 벽면 상단에 밀착 상태로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 골대도 리프트 접이 방식이었다.

본부석을 기준으로 농구 골대 3쌍이 앞·뒤로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다. 체육관에 농구 코트 3면이 있는 셈이며 동시에 세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파페르트 씨는 교정시설의 모든 수용자가 1주일에 한 번 체육관에서 구기 종목을 선택해 운동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수용자 체력 단련실에서 헬스 장비를 이용해 운동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팀을 구성해 체육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한 번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을 종합하자면 이렇다. 중경비 구치시설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들은 매일 수용동 사이 중정에 나가 1시간 동안 휴식 및 여가활동을 한다. 게다가 1주일에 세 번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를 한다는 말. 운동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종목으로는 실내축구, 배드민턴, 배구, 농구, 탁구 등이었다. 이렇게 든든한 체육관 시설이 있으니 눈, 비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도 이곳 수용자들은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일 듯. 기상 상황에 따라 운동 실시 여부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한국 교정시설의 수용자들 모습이 그림자처럼 비쳤다.

본부석 맞은 편 중앙에는 전광판이 있었다. 각종 운동 시합을 할 때 제대로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롭 소장은 덧붙여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의 중요한 행사 중에 12월에 열리는 실내축구대회가 있다고 했다. 한 해 수용자들로 구성된 여러 실내축구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겨룬 후 우승팀을 정한다고 했다. 이런 특별한 날에는 독일 푸스발 분데스리가의 2부 축구팀인 FSV 프랑크푸르트(Fußballsportverein Frankfurt) 팀 소속 선수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인회도 개최한다고 했다.

사진 43.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교정시설 체육관 천창의 개폐 방식과 비슷한 천창 자료 사진의 모습이다.

다른 곳도 그렇지만 체육관 역시 천장 곳곳에 유리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주간의 경우 실내조명을 밝히지 않아도 될 만큼 채광효과가 좋아보였다. 채광창은 환기를 위해서인지 모두 열려있었다. 창문을 열고 닫는 방식이 자동천창개폐시스템(linear actuators for rooflights)으로 제어하도록 되어 있었다. 채광창은 옥상 면에 피라미드 모양이었다. 자료를 찾아보니'글라스다흐바우 피샤 유한책임회사(Glasdachbau Fischer GmbH)'[19] 가 시공을 맡은 것이었다. 유리천장, 유리지붕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였다.

사진 44.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를 연고로 하는 '뢰벤 푸랑크푸르트' 프로 아이스하키 클럽의 엠블럼. 수용자 강당의 벽면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프로구단의 엠블럼이 그려져 있다.

수용자들의 체육 관련 프로그램이 이럴 정도라면 직원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어떨지. 우리의 궁금함을 알고 있다는 듯 롭 소장은 교정시설 직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다. 프로그램에는 필라테스(pilates), 헬스 기구 운동, 실내축구, 배드민턴, 스피닝(spinning) 등이 있다고 한다.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음은 물론이다.

우리 일행의 발걸음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강당으로 향했다. 크기는 서울교정시설 회의실보다 약간 큰 규모로 바닥 면과 천장 사이가 높아 체감 넓이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였다. 앞에 무대 단상이 있었으며 천장에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롭 소장은 이곳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영화상영, 공연 등이 열린다고 했다. 강당 한쪽 벽면에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를 연고로 하는 각종 프로 스포츠 구단의 엠블럼이 그려져 있었다. 엠블럼이 그려

19) 제조사 홈페이지
http://www.glasdachbau-fischer.de/index.php
http://www.glasdachbau-fischer.de/gfg_pdf_broschuere-1s.pdf

진 팀으로는 아이스하키의 뢰벤 프랑크푸르트(Löwen Frankfurt), 축구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Eintracht Frankfurt), FSV 프랑크푸르트(FSV Frankfurt), 농구의 프라포트 스카이라이너스(Fraport Skyliners) 등이었다. 모두 수용자들의 작품이란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에서 받은 인상은 자연광을 무척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간에도 건물 안에서는 자연조명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입실도 마찬가지였다. 신입실은 차량 통문(앞에서 교정시설의 차량 통문은 2곳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옆에 있었는데 신입실 입구 쪽에도 커다란 벽창이 나있어 따뜻한 자연조명이 신입실 전체를 밝혀주고 있었다. 한국 교정시설의 신입실과 비교해 신입 수용자 입소 절차 등을 직원이 안내 데스크 안에서서 진행한다는 점이 특이해 보였다. 신입 수용자들은 안내 데스크 앞 별도의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가져온 사물을 안내 데스크 옆 x-ray 검색대 위에 올려놓고 검색을 받는다. 이때 데스크 앞에는 입소 시 수용자 지급품이 담긴 플라스틱 수납 박스가 놓여있는데 신입 수용자는 이 물품을 박스 채 가지고 입실하게 된다.

사진 45. 교정시설에서 제공한 홍보 책자에 수록된 수용자 강당의 모습. 현재 앞쪽 단상 벽면과 좌측 벽면에는 수용자들이 그린 벽화로 채워져 있다.

사진 46.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교정시설 신입 수용자들은 입소 시 지급물품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수납 박스를 가지고 거실로 들어간다.

교정시설의 여건과 문화적 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물품 지급 기준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독일과 한국의 겨울 기온 등을 놓고 보았을 때 독일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겨울용 파카 점퍼와 겨울 방한화를 기본 품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 헤센 주보다 기온이 더 낮은 바이에른 주 교정시설을 방문했을 때 야외 활동 중인 수용자들은 10월 중순임에도 두툼한 겨울용 파카 점퍼를 입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 교정시설의 심장, 중앙통제실

롭 소장이 자신 있게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의 '심장'이라고 소개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이른바 '중앙통제실'로 불리는 곳이다. 이미 교정시설 실내 공간을 오르고 내리고 모서리를 도느라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중앙통제실답게 출입문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출입문은 카드키를 이용하여 여닫았다. 바로 여기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통제하는 곳이었다.

사진 47.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조감도이다.

중앙통제실로 들어서니 컴퓨터 가동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통제실의 구조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자의 '오목할 요(凹) 자'를 뒤집은 모양이었다. 삼면에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었다. 중앙과 좌측면에는 모니터가 3x3 모두 9대가, 우측면에는 3x4 모두 12대의 모니터가 있었다. 근무 직원은 3명으로 두 시간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했다. 모니터를 보니 진정실 두 곳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용자 한 명은 종이 시트를 덮고 매트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종이로 만든 박스형 상의를 입은 채 방안을 계속 서성이고 있었다. 롭 소장은 어제 입소한 수용자들이라고 했다. 앞에서 롭 소장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이 유럽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교정시설이라고 했었다. 추측컨대 이 중앙통제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중앙통제실에서는 교정시설 안팎에 설치되어 있는 383대의 CCTV를 제어하며 시설과 인원의 이상 유무를 지켜보고 있었다. 중앙통제실 운영시스템 안에는 CCTV를 통한 원격감시 및 제어, 화재감지 등의 탐지기능, 휴대폰 전파 탐지기능, 직원 위치파악 및 이상 유무 파악기능 등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다. 진정실에 대한 감청, 감시와 일반 수용거실 수용자와의 대화도 중앙통제실에서 가능했다. 모니터에는 수용동을 포함한 각 시설별 평면도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다. 각종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지점 파악 및 초동대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거실 내 흡연이 가능한 여건에서 화재 예방 및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중요할 것임은 자명한 일. 이점을 물어보자 중앙통제실의 '호른(Horn)'씨는 최초 화재감지 후 3분 안에 상황을 종료하지 못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지역 소방관서로 연락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했다. 그의 설명은 진지했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빠른 손놀림에서 업무의 숙련도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침 '호른(Horn)'씨 허리춤에 통신기기가 눈에 띄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통신기기를 손에 쥐고 자세한 기능을 설명해주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이 있어 교정시설 안에서 직원 간 통화 시 이용한다고 했다. 통신기기의 모양은 폭이 좁았으며 뒷면에 허리 벨트에 끼울 수 있는 클립이 달려있었다. 통신기기 윗면에는 젠더(gender)를 끼운 채 그 끝을 벨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다. 수용자와의 몸싸움이나 위해를 당할 때 무전기에 끼워져 있던 젠더가 빠지면 중앙통제실에 위치와 직원 정보가 표시되는 기능이었다.

통신기기 젠더 홀더 옆에는 적색 버튼이 돌출되어 있었다. '호른(Horn)'씨의 설명에 의하

면 위험 상황에 빠진 직원이 적색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중앙통제실에 위치와 직원 정보가 표시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통신기기가 일정 기울기 이상 눕혀졌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동된다고 했다. 이때 중앙통제실에서 CCTV 등을 이용해 상황 확인을 마칠 때까지 직원은 현장에서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통신기기를 통한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음이 구내에 울리게 되는데 이 경보음을 끌 수 있는 곳은 중앙통제실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상황 파악이 되기 전에 직원이 계속 움직인다면 시간이 지연돼 적절한 조치를 할 시간을 놓칠 우려가 있어서라고 했다.

중앙통제실 시스템에는 휴대폰 전파감지 기능도 탑재되어 있었다. 수용동을 포함한 교정시설 내 각 시설 안에는 휴대폰 전파탐지 장치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휴대폰 전원이 켜질 경우 그 위치를 탐지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전파 탐지 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었다. 롭 소장은 웃으며 처음 정문을 통과할 때 절대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른(Horn)'씨는 조작 장치를 움직여 CCTV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360도 회전에 줌 기능에다가 확대를 해도 해상도 손상이 거의 없는 화질까지 HD급으로 구현이 가능했다. 이때 롭 소장은 CCTV 줌 기능을 이용하면 화단의 잔디 손질도 가능하다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약간 과장을 더하자면 잔디 위에 기어 다니는 곤충의 종류까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라고 할까. CCTV 영상은 자동 녹화가 되며 72시간까지 저장된다는 롭 소장의 첨언.

개인별 열쇠와 통신기기가 지급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롭 소장은 중앙통제실 밖 복도에 있는 직원통합보관함을 보여주었다. 직원의 열쇠와 통신기기는 통합 관리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었다. 직원 열쇠와 통신기기에는 개인 식별 'RFID'가 탑재되어 있다고 했다. 직원 개인은 보안카드를 통합관리시스템에 태그한 후 자신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열쇠와 통신기기를 놓고 퇴근해야 한다고. 보관함 안에는 충전케이블이 있어 통신기기를 충전기에 연결해 놓아야 한다. 이 모든 절차는 중앙통제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점점 이동경로가 교정시설 구내·외를 돌아 원점인 정문 근무자실 방향으로 향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중앙통제실을 나와 우리 일행이 옮겨간 곳은 접견실이었다. 접견실은 4종류가 있었는데 다만 전날 방문했던 슈발름슈타트 교정시설과 같은 '부부 접견실'은 없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진 48.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사용하는 통신기기. 교도관은 출근 시 통합보관함에 보안카드를 태그하면 개인 보관함이 열리며 안에 보관된 개인 열쇠와 개인 통신기기를 수령하고 퇴근 시 반납을 한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접견실은 ▲ 단체 접견실 ▲ 대화 접견실 ▲ 개인접견실 ▲ 변호인 접견실 4종류의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단체 접견실은 1곳으로 직사각형의 투명유리 테이블 8개가 놓여있었다. 테이블당 외래인 3인 이내로 입실하여 착석할 수 있었다. 단체 접견의 경우 녹음, 녹화는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수용자와 접견을 하고 싶은 사람의 경우 사전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도 슈발름슈타트 교정시설과 동일했다. 또한 단체 접견실의 경우 한쪽에 별도의 부스가 있었으며 직원이 이곳에 앉아 전체적으로 시선 내 감시만 하는 방식이었다.

대화 접견실은 강화 유리창이 수용자와 접견인을 차단하고 있는 형태로 한국 교정시설의 일반적인 접견실의 형태와 유사했다. 2인만 입실이 가능했으며 접견을 감시하는 CCTV도 없었고 녹음, 녹화도 하지 않았다. 수용자와 접견인 사이의 대화는 별도의 인터폰이나 마이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유리벽 좌·우의 가림철판 사이로 뚫려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슈발름슈타트 교정시설의 접견실과 마찬가지로 반대편 접견인의 목소리가 울림 현상 없이 잘 들렸다. 내부에 흡음 자재로 마감을 잘한 듯. 여기도 직원은 수용자 뒤에 앉아 접견 상황을 감시할 뿐 따로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대화 접견실은 테러범, 이슬람 근본주의자, 문제수용자 등이 이용한다고 했다. 5개 호실이 있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개인 접견실이었다. 대화접견실과 비슷한 규모의 호실 가운데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의 가운데에는 한 뼘 정도 되는 유리 칸막이가 세워져 있었다. 일반

사진 49. 홍보 책자에 수록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접견 수용자 검신대의 모습이다.

사진 50.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호실의 테이블 모습이다.

사진 51. 홍보 책자에 수록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호실 복도의 모습. 천창 역시 자동 천창개폐시스템이다.

사진 52.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 교정시설 내 입원실. 일반 병원의 1인 병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시설이다.

수용자들이 이곳에서 접견하려니 생각을 했지만 롭 소장의 설명은 마약 기록이 있는 수용자들이 이용하는 접견실이라고 했다. 물론 개인 접견실을 이용한 수용자의 경우 슈발름슈타트 교정시설과 같이 별도의 대기실과 검신실에서 x-ray 검색기를 이용해 의복과 신발까지 검색을 하지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다고 할까. 내심 이해는 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접견실은 변호인 접견실이었다. 13개 호실이 있었으며 직원은 시선 내 계호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을 제외하고 접견실이 한가한 이유를 물어보니 헤센 주에서는 수용자의 접견허가를 법원의 판사가 하며 교정시설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접견은 한 달에 한 번 두 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접견허가제도와는 너무도 상이해보였다. 롭 소장의 설명을 들으니 수긍이 갔다. 겉으로 보이는 접견제도가 혹여 수용자의 접견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아쉬움이 들었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의료병동은 진료실과 입원실로 나뉘어 있었다. 진료실에는 각종 검사장비와 치료 공간이 적정했으며 간호인력 41명과 의사 5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입원실에는 34개의 침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중에는 26개의 1인 입원실과 4개의 2인 입원실이 있었다. 1인 입원실 중 4곳은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한편 이곳의 의료병동이 헤센 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접한 Ⅲ·Ⅳ교정시설의 수용자 진료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 특이했다. 일종의 의료처우의 허브(herb) 역할을 하는 중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었다.

행정동의 소장실로 가는 복도에는 과거 고층형 교정시설 시절의 사진과 세계 각지의 유명한 교정시설 전경을 인화한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면에 전시하고 있었다. 액자 밑에는 간략한 설명이 붙어있었다. 롭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세계 각지의 유명한 교정시설 전경 사진은 독일의 유명한 행형학자가 유럽연합의 연구용역을 받아 현지 연구 및 조사를 하며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에 기증한 것이라고 했다. 유럽연합의 관심사가 교정행정 분야까지 뻗어있다는 점도 놀라웠고 연구 자료를 흔쾌히 교정기관에 제공하는 모습도 좋아 보였다.

사전 준비의 중요성

소장실 옆 회의실에서 마무리 정리. 소장집무실, 부속실, 회의실이 행정동 한 벽면에 나란히 붙어있었다. 롭 소장은 책상 위를 미리 정리하지 못했다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집무실 책상에는 결재용 서류가 아닌 각종 보고서로 보이는 서류들이 책상 한가득 펼쳐져 있었다. 부속실 역시 단순한 의전용 부속실 기능이 아닌 실무 보좌형 부속실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부속실 직원은 사복을 입고 있는 남성이었는데 소장집무실과 마찬가지로 각종 검토서류가 책상 위에 가득 놓여있었다. 회의실 탁자에는 탄산수 유리병과 커피포트, 깨끗한 유리잔이 놓여있었다. 정갈한 쟁반에는 각종 초콜릿과 쿠키가 담겨있었다.

사진 53.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 교정시설 병동에 있는 장애인 목욕 시설 모습이다.

롭 소장에게 고층형 교정시설을 헐고 같은 부지에 저층형 교정시설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는지를 물었더니,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답변으로 시작하였다. 롭 소장은 현재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제3·제4 교정시설이 있는 곳은 1880년대부터 감옥이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교정시설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필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재건축 시 반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한국에는 교정시설 조성 매뉴얼과 법무시설기준규칙이 있어 교정시설 건축 관련하여 세세한 사항까지 사전에 규정해 놓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헤센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를 묻자 롭 소장은 과거에 그런 시도는 있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아 결국 한국과 같은 통일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했다. 덧붙여 독일은 연방 국가이며 주마다 독립성이 강해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한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교정시설 조성은 주 정부의 권한이며 연방정부에서 관여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조성과 건축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다고 한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재건축 시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인지 물었다. 롭 소장은 ▲ 시 층고 제한 규정과 교정시설 기능의 조화 ▲ 수용자 인권 보호와 인간적인 수용환경 조성 ▲ 첨단 기술을 접목한 튼튼하고 안전한 시설 구축이라고 답했다. 그는 헤센 주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건축과 관련한 개요 정도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주벽의 높이가 최소 6.5m라는 식. 따라서 교정시설 건축은 교정시설이나 교정시설 등 해당 기관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정시설 건축을 이끌어 나간다고 했다. 혹시 교정시설 건축 과정에서 설계가 바뀌거나 추가 공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는지도 물었다. 롭 소장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교정시설의 건축을 기관에서 주도하므로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설계사무소나 건설회사에서 각종 시설의 배치, 소요 자재의 종류, 전문가적 관점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 일

반 시설과 다른 교정시설의 독특한 기능 등을 기관에 먼저 문의하고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한다고 했다. 중간에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시공 중이거나 완성 후 보완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의 재건축은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해 전체 비용이 105million 유로(한화 약 1,400억 원)가 소요되었고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이 걸렸다는 롭 소장의 첨언.

회의실에서 일정을 마무리하며 롭 소장은 우리 일행에게 ▲ 한국과 독일 양국의 교정행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 독일의 경우 사회 환경의 변화로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70~80%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실정은 어떠하며 외국인의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독일과 비교해 한국 교정시설의 기술적 발전 속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이에 대해 양국 간 법제도와 문화적 배경이 달라 교정행정의 차이점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독일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보니 한국 교정행정에 긍정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현재 한국은 전체 수용자에서 3.5% 정도가 외국인들로 중국 국적의 수용자가 전체 외국인 수용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에도 IT 관련 기술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개별 시설이나 기술보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정도의 답변이 오갔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의 재건축 과정 설명을 들으며 건축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시공이나 완성단계가 아니라 기획 즉 사전 준비단계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다음은 설계단계. 이때는 일의 전모가 관련자들에게 드러나기 전이다. 말랑말랑하여 의사결정이 쉽고 바꾸기도 쉽다.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잘 마치면 전체 공사비와 공기를 절감하고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사전준비야말로 교정시설 조성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건축 프로젝트의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사업을 장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일 게다. 중간에 수정하기도 어렵다. 승패가 그 전에 나는데 그때 놀다가 임박해서 만회하기는 쉽지 않은 법. 안 바쁠 때야말로 가장 바빠야 할 때란 말로 풀이하면 되겠다.

회의실을 나오며 롭 소장은 자신은 축구를 매우 좋아한다고. 우리 일행에게 '차붐'의 근황을 물어보기도 했다. 한국의 참관단이 원하는 시설 관련 규정을 제공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 양국 간 대표기관의 정기적인 교류가 자주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먼 이국의 방문객을 맞아 긴 시간 웃음을 잃지 않고 직접 안내하며 소상하게 설명해준 롭 소장과 교정시설 관계자들의 친절한 모습. 이곳에서 받은 좋은 인상이 쉽사리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교정시설 정문을 열고 나와 심호흡을 크게 해보았다. 시원한 가을 바람에 머리가 맑아졌다. 이제 독일에서의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허투루 들어오지 않았다.

(3)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뮌헨의 대표적 교정시설인 스타델하임(JVA Stadelheim) 교정시설을 방문을 위해 스타델하이머 거리(stadelheimer straße) 초입에 들어서면 길게 뻗은 연회색(light gray) 주벽의 모습이 보는 사람을 압도할 기세다. 구름이 낮게 깔린 날씨에 영상 1도의 쌀쌀한 기온은 주벽의 빛깔과 더불어 묘한 느낌을 주었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주벽 끝으로 페어라허(Perlacher Forst) 공동묘지의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나찌와 히틀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뮌헨 대학 교정에서 뿌리다 체포되어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사형장의 단두대 아래에서 죽음을 맞은 소피 숄, 한스 숄, 크리스토프 프롭스트. 그들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페어라허 공동묘지를 지나자니 오래전 읽었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사진 54.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성당에서는 매년 이곳 사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한 숄 남매와 프롭스트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사진 55. 전후 독일인들의 양심을 일깨운 숄 남매와 크리스토프 프롭스트의 유해는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옆 페어라허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우선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은 정문 자체가 특이한 구조였다. 지상에서 건물 1개 층 정도 깊이로 지면을 파낸 후 교정시설의 출입문인 정문을 배치하고 그곳을 기점으로 좌·우로 긴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해 통로로 삼고 있었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정문으로 나있는 통로 끝에 서서 맞은편을 바라보았다.

굳이 지상으로 출입문을 내도 될 것을 지하층까지 파 들어가 정문을 낸 이유가 궁금했지만

사진 56. 뮌헨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정문 입구 모습. 지하 1층 정도의 깊이에 정문 출입구가 있다. 정문이 보이는 파사드 주벽에 무늬 거푸집을 이용해 주벽에 다양한 무늬 패턴 문양을 만들어 자칫 주벽이 주는 단조로움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나름 독특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측컨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폐되어 보안상의 이점을 노렸을 듯. 육중한 정문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니 정문 근무자실이 있었으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산복 차림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들끼리 야유회를 떠난다고 했다. 야간근무를 함께 하는 동료들 사이의 정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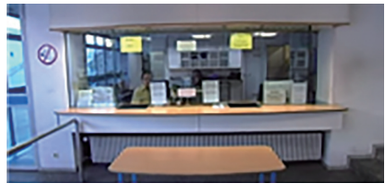

사진 57.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정문 안 근무자실의 모습이다.

정문 근무자실 앞에는 면회인 몇몇이 출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두 차례 독일 교정시설을 방문한 터라 우리 일행은 능숙하게 여권을 모으고 출입을 기다리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다. 이곳 역시 정문을 거쳐 통문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소지품을 보관함에 넣어두고 열쇠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

사진 58. 진녹색의 스웨터를 입고 있는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교도관의 모습. 직원들은 이 복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다. 스웨터에는 어깨 부근 표지장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계급 표시는 없었다.

아침 시간이라 출근하는 직원들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진녹색의 스웨터와 옅은 황토색의 바지를 입은 직원들은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통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출근기록부에 입력을 하고 통문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제복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새로운 제복 형태를 보면 자연스레 눈길이 가나 보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직원이 입은 진녹색 스웨터의 경우 어깨와 팔꿈치 부분에 네모난 패치를 덧댄 형태라 특이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보였다.

잠시 후 정문 근무자가 통문을 열어주며 1층 홀에서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 통문을 지나 1층(실제로는 지하 1층인 셈이다) 홀 안의 천장을 보니 모두 뜯겨져 있어 콘크리트와 각종 부재가 노출되어 있었다. 직원의 설명으로는 시설이 낡아 화재방재설비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스산한 초겨울의 날씨와 앙상한 골조가 드러난 건물을 보니 왠지 교정시설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홀 가운데에는 두 개의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위에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축소 모형 두 개가 유리박스로 덮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하나는 초창기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을, 다른 하나는 최근의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을 축소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축척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우리 일행은 교정시설 모형을 보며 건물의 배치와 동선을 기억 속에 담아두려 했다. 잠시 후 안내 동행 직원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과 함께 내려왔다. 안내 동행 직원은 미하엘 스툼프 소장이 일정이 있어 현재 부재중이라고 했다. 남측 수용동 책임자인 심바스 씨가 대신 교정시설 소개를 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사진 59.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미하엘 스툼프(Michael Stumpf)' 소장(54세)의 모습, 2009년 소장 취임 후 현재까지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을 책임지고 있다. 아쉽게도 방문 당일 일정 관계상 만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이전까지 뮌헨 지역에는 소규모 감옥이 여러 개 산재하고 있었는데 만성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지역의 감옥은 감옥개혁론자인 존 하워드의 '감옥상태론(The State of Prisons in England and Wales, with an Account of some Foreign Prisons)'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당시 뮌헨 지역에는 지하 감옥인 '던전(dungeon)'이 하나, La Prison de la com이라 불리던 감옥(여기에는 15개의 감방이 있었다) 그리고 노동 교화소 역할을 맡았던 'house of correction' 등이 있었다. 존 하워드는 '감옥상태론'에서 이들 감옥의 상태를 기술해 놓았다.[20]

19세기 후반기에는 소규모 감옥으로는 더 이상 감옥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어져 1894년 지금의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을 세우게 된다. 현재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이 있는 곳은 당시에는 농민들의 경작지였는데 당시 땅 주인의 이름이 '스타델하임(Stadelheim)'이었다 한다. 그의 이름을 따서 교정시설의 명칭을 '스타델하임'으로 했다고 한다.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한 면이 있기 마련.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의 앞 두 글자를 분리해 St(聖). Adelheim 이라고 불렀다 한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현황

말이 나온 김에 심바스 씨의 설명을 정리해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외형적 특징을 소개한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건축의 첫 삽을 뜬 해가 1882년이다. 첫 번째 수용동인 북측 수용동이 완공된 해가 1884년이니 교정시설의 역사의 유구함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는 1,300여 명,

사진 60.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전경. 상단의 보이는 숲이 페어라허 공동묘지이다.

20) 존 하워드, 감옥 상태론 P.195

직원 수는 650명에 달하며 바이에른 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정시설이다. 직원 중에는 마이스터 출신의 직업훈련 교사가 28명, 상근직 의사 8명, 간호사 30명이 포함되어 있다. 각 수용동 별로 소장을 보좌하는 책임자 7명이 있는데 이들은 법조인 출신. 수용자들의 경우 55% 이상이 외국인들이며 출신 국가는 100개국에 달한다. 현황을 살펴보니 한국 국적의 수용자는 없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하루에 88.40유로(한화 약120,000원)의 경비가 들어가며 연간 난방과 전기사용료로 1.8 million 유로(한화 약24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시설 확장은 다음과 같다.

- 1882년 8월 20일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건축 시작
- 1894년 북측 수용동 완공
- 1901년 남측 수용동 및 중정 내 성당 완공
- 1964년 서측 수용동 완공
- 1965년 주벽 신축(6.2m)
- 1968년 동측 수용동 완공
- 1970년 신 행정동 완공
- 1974년, 1982년 작업장 완공
- 1981년 수용동 N(New Component) 완공
- 1992년 신 감시대 5개소 완공
- 1997년~2012년 1차 대보수
- 2002년~2004년 동·서 수용동 현대화사업
- 2005년~2007년 지역난방 공급
- 2007년~2011년 교정시설 성당 대보수 및 수용동 N 시설현대화 사업

보이지 않는 법정

시설 측면에서 눈길을 끄는 점 하나. 현재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남측 수용동 앞 원예작업장 부지 지하 5m 공간에 뮌헨 지방고등법원의 재판정과 수용자 체육관 시설이 들어섰다고. 뮌헨 지방법원에서는 교정시설 행정동 청사의 빈 공간 하나를 임시 법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4년 공사를 시작해 2016년 9월 완공이 되었다 한다. 처음 교정시설 내 임시 법정을 연배경으로는 테러범이나 동유럽의 조직폭력단원들의 재판이 있을 경우 법원까지의 호송에 많은 계호 인력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재판 자체를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필요할 경우 민사재판이나 증인 심문을 위해 임시 법정을 여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을 그것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데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심바스 씨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신축한 법정(Gerichtssaal)은 면적이 250㎡로 지하 5m 깊이에 있으며 천장부의 경우 폭탄 테러에도 견딜 만큼의 강도[21]라고 한다. 독일의 경우 헤센주의 바이터슈타트(Weiterstadt)'교정시설이 완공을 앞둔 1997년 적군파가 설치해 놓은 폭발물이 터져 수용동 한 개소의 지붕이 완파되는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독일 교정시설을 견고하게 짓는 이유를 알 수 있을 듯.

그는 기존에 사용하던 법정은 말 그대로 임시 시설로 안전한 재판 진행을 담보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2012년 국가사회주의 지하당(NSU) 소속의 네오 나치인 '비트 췌페(Beate Zschäpe)'의 재판 과정에서 정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비트 췌페(Beate Zschäpe)'는 남성 공범 2명(남성 공범 2명은 체포 직전 자살)과 함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독일 내 터키인 7명과 그리스인 1명 등을 살해하고 사제 폭탄을 사용했으며 1건의 은행강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수용자였다.

재판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뮌헨 법원까지 호송을 해야 했는데 워낙 비중이 있는 사건인지라 언론 취재의 관심도 높았다고 한다. 특히 교정시설 주변 교통이 상습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호송 시 동조 세력의 호송인 탈취를 위한 무장 공격 등의 발생 우려에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한다. 게다가 무장 장갑차량까지 호송에 참여했다고 하니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도 곱지 않았을 터. 교정시설에서 법원까지 이르는 도로상에 신호등 수만 600여 개에 달했다고 하니 불편한 도로 모습이 그려졌다. 그래서인지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측에

사진 61.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신축하고 있는 법정과 실내체육관 건물의 모형. 우측 상단 '凹' 모양 건물이 남측 수용동 그 아래 주벽 사이에 있는 저층의 구조물이 법정과 실내체육관 건물이다.

사진 62.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남측 수용동과 주벽 사이에 지하 법정과 실내체육관 골조 공사현장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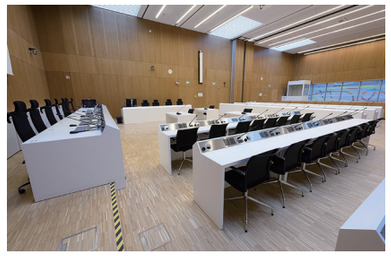

사진 63.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지하에 신축한 법정 모습이다.

21) 관련홈페이지: http://www.baumeister-hm.de/fileadmin/eigene_dateien/baubeschreibungen/Baubeschreibung_JVA_Stadelheim_01.pdf

서는 새로운 법정이 완공되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총 공사비는 15million 유로(한화 약 200억원)이며 건물 한 변의 길이가 82미터에 달한다. 지하 공간은 법정과 실내체육관이 비슷한 비율로 점하고 있으며 법정의 방청객 수용인원은 최대 250명 정도이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법정의 특징은 지하에 구축되어 있음에도 천창을 만들어 자연광을 지하 법정 공간까지 끌어들이고 있었다. 테러범이나 조직폭력단 등의 수용자들은 지하 통로를 이용해 교정시설 수용동과 법정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재판에 따른 계호 인력의 절감은 물론 피고인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또한 주요 부분의 콘크리트 두께의 경우 1m에 달하는 곳도 있으며, 헬리콥터를 이용한 탈옥이나 침입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방청객, 기자 등의 경우 법정 출입을 해야 할 경우 주벽 뒤편 통문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하 법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3단계의 통과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사진 64.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지하 법정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의 모습이다.

사진 65.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수용동에서 지하 법정까지 연결하는 통로의 모습이다.

사진 66.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에서 서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레오나르도 거리에 있는 스타델하임 여자 교정시설로 지난 2013년 완공되었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교정시설과 같이 일종의 복합교정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여자교정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 그리고 그 옆에 중간 처우의 집이 떨어져 있다. 모두 4개의 교정시설이 비슷한 지역에 모여 있는 셈이었다. 심바스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든 생각. 교정시설을 교정시설, 교정시설로 나누지 않고 'Justizvollzugsanstalt'라는 명칭 하나를 사용하는 독일에서 한국식으로 교정시설과 교정시설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도 수용자 구성을 보면 70%가량이 미결 상태인 수용자들이며 나머지 30%가량이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들이었다. 게다가 기결 수용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수용자들이니 말이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접견 현황

심바스 씨로부터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일행은 본격적으로 시설 참관을 시작하였다. 우선 접견실부터 살펴보았다. 접견실은 신행정청사에서 수용동 N 사이에 있었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접견실도 ▲ 단체 접견실 ▲ 대화 접견실 ▲ 개인접견실 ▲ 변호인 접견실 4종류가 있었다. 단체 접견실은 1곳으로 'ㄱ'모양으로 테이블은 12개가 놓여있었으며 가운에 모서리 부분에 담당 직원 데스크가 있어 양쪽을 시선 내 계호하고 있었다. 테이블당 외래인 3인 이내로 입실하여 착석할 수 있었다. 테이블 바로 위 천장에는 라운드형 CCTV가 테이블마다 설치되어 있었다.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지는 않으며 CCTV를 통해 수용자와 접견인 사이의 부정물품 반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한다. 헤센 주와 마찬가지로 수용자와 접견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전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화 접견실은 이전에 방문했던 두 개의 교정시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강화 유리창으로 수용자와 접견인을 차단하고 있는 형태는 같았으나 호실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았다. 미국 교정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 접견실의 모습이었다. 수용자와 접견인은 서로 반대편 출입구로 들어와 지정 좌석에 앉으며 접견인은 2인만 입실이 가능했다. 접견실 끝부분에 직원 근무 부스가 있으며 그곳에서 감청 등을 할 수 있었다.

사진 67.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대화 접견실의 모습. 한국 교정시설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로 7명의 수용자가 동시에 접견을 할 수 있다. 사진 우측 끝부분에 직원 근무 부스가 있으며 그곳에서 감청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변호인 접견실이었다. 7개 호실이 있었다. 호실 내 놓여있는 사각 테이블의 가운데에는 한 뼘 정도 되는 유리 칸막이가 세워져 있었다. 개인 접견실도 이전에 방문한 교정시설과 큰 차이점은 없었다.

구체적인 접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 접견은 전화 예약만 가능하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9:00~11:30, 13:00~16:00, 단 수요일은 09:00~12:00 이다. 접견인은 최대 3인까지 가능하며 미성년 아이들도 접견인 수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접견인은 자신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으로는 접견이 허가되지 않는다.

변호인, 경찰, 보호관찰관, 소년법원 직원 등의 시설 방문시간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7:30~11:15, 12:30~16:00, 단 수요일은 07:30~13:00이었다. 금요일을 포함해 주말에는 접견이나 공무상 기관 방문이 없다는 점이 특이했다.

접견실을 나와 신입수용 거실이 있는 사동으로 갔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신입 수용자

들은 1주일간 신입 거실에 머물게 된다. 수용거실이 앞에 방문한 기관보다 작은 느낌이 들어 거실 면적을 물어보니 5㎡라고 한다. 동행하던 심바스 씨는 최근에 한 수용자가 수용거실이 비좁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고. 법원에서는 수용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22] 그 결과 주 정부에서 일부 배상을 하기도 했다고. 법원의 판결 이후로 우선 기존 일부 2인 거실을 모두 1인 거실로 변경했다고 한다. 시설 내 거실 수는 1,263개로 면적이 기준 이하의 거실을 어떻게 할지 고심 중에 있다고 한다.

수용거실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슈발름슈타트 교정시설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보다 낙후한 느낌이었다. 신입 수용동 복도를 지나는데 일부 수용자들이 교도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이방인의 눈에 그들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경직되게 보였다. 교도관 한 명이 혼자 수용 거실을 검방하는 모습도 특이하게 보였다.

사진 68.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신입 수용자 거실의 모습이다.

사진 69.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N 수용동의 모습. 독일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동 외벽에 수용거실 라인 번호를 크게 페인트칠을 해놓았다. 추측컨대 사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발생 지점을 파악하기에 이점이 있어 보였다.

신입 수용동을 나와 작업장으로 향했다. 작업장과 수용동 N 사이 운동장에는 수용자 예닐곱 명이 있었다. 고정 탁구대에서 탁구를 치는 수용자들도 있었고 우두커니 서있거나 주위의 수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수용자도 있었다. 수용자들은 검정색 겨울용 파카를 입고 있었으며 털모자를 쓰고 있는 수용자들도 있었다. 영하에 가까운 날씨 속에 밖에 있는 수용자들의 모습이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작업장에 들어가 보니 내부 공간이 클 뿐만 아니라 환기, 채광, 주변 정리 상태가 좋았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들은 일

사진 70.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자동차 정비 공장의 모습이다.

주일에 40시간을 작업에 종사하다. 임금체계는 작업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져 있다. 박스 접기나 포장과 같은 단순 작업은 5단계 작업으로 임금이 가장 적었다. 자동차 정비 등의 일은 상당한 숙련이 필요한 작업이라 임금이 제일 높은 1단계 작업에 들어갔다. 수용자의 작업 임금은 일일 8.96 유로에서 14.93유로였다. 수용자들은 작업 종류에 따라 시간당 1.12 유로에서 1.87 유로를 받고 있었다.

사진 71.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세탁 공장의 모습이다.

심바스 씨는 작업의 경우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와 21세 이하의 젊은 미결수용자들이 대상자였다. 현재 전체 수용인원의 35퍼센트가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작업은 대부분 위탁생산 과정이라고 했다. 종류로는 목공, 자물쇠제작, 전기부품, 세탁, 인쇄 및 제본, 제빵, 자동차 정비 등이다. 작업장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느슨하고 여유 있어 보였다. 아무래도 복잡한 작업 공정보다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많아 그런 것 같았다.

작업장 옆에는 대운동장이 있었다. 정규 축구장 규격에 푸른 잔디가 덮여 있다. 그 옆에는 농구 코트 하나가 있었다. 뮌헨 역시 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 사이에서 축구의 열기와 관심이 높다고 한다. 수용자들이 팀을 이뤄 평소에 축구 기술을 익히고 수용자 축구대회를 열어 우승팀을 가린다고 한다. 수용자들이 구기 종목을 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차마 묻지를 못했다. 한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족구 등을 하다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복합적인 이유로 구기 종목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농구나 축구 등의 구기 종목이 훨씬 격렬하고 다칠 확률도 높은 운동인데. 그때마다 운동 실시를 중단할까라는 의문을 남겨두어야 했다.

히틀러와 숄 남매,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운동장 옆에는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었다. 심바스 씨는 과거 히틀러의 나찌 집권 시기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를 단두대로 처형했는데 바로 그 사형장 건물이 있던 곳이라고 했다. 당시 사형집행에 사용했던 단두대는 뮌헨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발견되었다고.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추후 자료를 찾아보니 심바스 씨의 말대로 히틀러 집권 시기 1,035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에서 단두대로 사형집행을 당했다. 그중에 앞에서 언급한 '백장미단'의 숄 남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서독은 전후 1949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하니(동독은 1987년에 사형제도 폐지) 같은 전범국이면서 패전 후에도 현재까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22) 관련 기사 참조: http://www.bild.de/regional/muenchen/gefaengnis/entschaedigung-fuer-knast-insassen-raucher-streit-38732622.bild.html

일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히틀러의 경우 '나의 투쟁'을 집필했던 란츠부르크 교정시설이 많이 알려져 있다. 반면 한해 전 뮌헨의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에서 한 달여 수감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했다는 공통점 이외에는 히틀러와 쇨 남매가 보여 준 삶의 모습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히틀러는 끊임없는 권력을 추구해 독일 국민과 인류에 크나큰 해악을 끼친 반면 쇨 남매는 잠자고 숨죽이고 있던 독일 국민의 양심을 깨웠다. 역사는 누가 진정한 승자이며 인간의 가치를 구현했는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진 72. 1923년 란츠부르크 교정시설 수감 당시 촬영한 히틀러의 모습. 그는 란츠부르크 교정시설에서 264일간 수감생활을 하며 '나의 투쟁(Mein Kampf)'를 집필했다. 그는 집권 후 1933년 란츠부르크 교정시설을 다시 방문해 수감 당시의 거실에서 비슷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과연 란츠부르크 교정시설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심바스 씨에게 수용동 현황에 대해 물어보니 그는 전체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에 수용동이 모두 28개가 있다고 한다. 한국 교정시설로 보면 수용사동이 25개인 셈이다. 그는 남성 수용동은 25개로 수용동 한 개소에 평균적으로 47개 거실이 있다고 . 여성 수용동은 3개소로 평균 50개 거실이었다. 여기에는 대동 유아거실 10개를 포함한다고 한다.

초창기 건축물인 북측 수용동과 남측 수용동의 삼각형 지붕 경사면에는 지붕창(dormer)이 나있었다. 혹시 지붕창(dormer) 공간에도 수용자가 거주하는지 묻자 과거에는 수용거실로 사용했었다고 한다. 현재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지붕창(dormer) 공간은 폐쇄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도관의 채용 등에 대해 물어보자 심바스 씨는 직무 별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제복 교도관을 예로 들어 간략하게 설명했다. 지원 나이는 21세~38세까지로 6년제의 실업계 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와 5년제인 '하웁트슐레(hauptschuile)'졸업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주가 비슷하다고 했다. 지원자는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 2년간의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교도관으로 정식 임용된다고 했다. 임용시험 합격 후 교육을 받는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년제 교육과정은 심리학, 법학, 상담심리학, 복지학 등의 전문 과정과 무술, 체력 검정 등의 과정도 있다고 한다. 독일의 대학 졸업이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듯 독일의 교도관 양성 2년제 과정도 수료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했다. 함께 걸어가던 심바스 씨가 우리 일행에게 "현재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경우 성범죄자와 정신질환 수용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수용 처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지 물었다. 한국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집중인성교육, 성폭력 사범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은 어떤지 되물었다. 다음은 심바스 씨의 답변 내용이다.

"현재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자 치료를 위해 24개의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상자를 위한 개인별, 그룹별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여가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문가에 의해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를 위한 교육장도 1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수용자의 경우 일주일에 2번 그룹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력성이 강한 수용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서툴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기술향상을 위한 'R&R'프로그램, 분노조절을 위한 'AGT'프로그램, 중독성 예방을 위한 'STAR' 프로그램, 출소 후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future self'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민 처우의 문제

한편 심바스 씨는 최근'난민'의 처우 문제로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을 포함해 바이에른 주 전체 교정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연방정부에서 바이에른 주 교정시설에 1,000여 명의 난민 수용을 할당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추측컨대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난민이 유입되고 겨울이 다가오자 연방정부에서는 난민 수용을 위한 일시적인 대안으로 교정시설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해보았다. 겨울이 다가오는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지에 임시 텐트를 설치해 밀집 수용하는 방식 대신에 교정시설이라는 카드를 꺼낸 게 아닐까. 독일의 통일이 우리 사회에 시사한 바가 컸듯이 독일의 난민 정책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였다. 현재 독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70% 정도라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벽을 따라 이동하는데 중정 가운데에 성당의 첨탑이 살짝 보였다. 수용자의 종교 활동에 대해 물으니 심바스 씨는 일요일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행사를 성당에서 연다고 했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초창기 건축물 중에 하나인 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2008년부터 대대적인 건물 보수작업을 시작해 2010년에 마쳤다고 한다.

성당의 제단과 스테인드글라스도 이때 새로 보수를 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도 교정시

설 내 임시 장소를 마련하여 종교행사는 중단이 없었다고 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15%가량이 가톨릭 미사에 참석한다고 했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에는 가톨릭 사목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 명의 상주 사제가 두 명의 보조 사제(Pastoralreferenten)와 함께 수용자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우량 수형자 두 명이 성당 종치기 관리인(Mesner)으로 사목팀의 업무를 돕고 있기도.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주벽을 둘러보았다. 한국 교정시설 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주벽 높이, 5곳의 감시대, 주벽 안의 보조 철책이 외적으로 보이는 보안시설의 전부였다.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은 북쪽 정문으로 사람이, 남쪽 정문으로 차량이 출입하는 방식이었다. 차량 통문은 남쪽 차량 정비공장과 원예 작업장 사이에 있었다. 심바스 씨는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의 차량 통문에는 '심장박동 탐지기(Herzschlag-Detektor)'를 이용해 차량 검색을 한다고 했다. 차량에 숨어 있는 사람의'심장박동'을 탐지하는 장치라니. 솔직히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당 가격은 10만 유로 정도로 독일의 교정시설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장비라고 했다. 차량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 앞·뒤 두 곳에 탐지기를 대고 기계를 작동하면 차량 내에 사람이 숨어 있을 경우 탐지기와 모니터에 탐지상태가 표시되며 경보음이 울린다는 것이었다. 일정상 실제 차량 탐지 장면을 보지 못해 아쉬웠다. 한국 교정시설에서는 음식물 수거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담당 근무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음식물 수거통 속으로 탐침봉을 일일이 찔러 넣는다. 서로의 장면이 오버랩(overlap)되었다.

사진 76.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성당의 모습. 일요일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행사가 열린다. 완공된 지 110년이 넘은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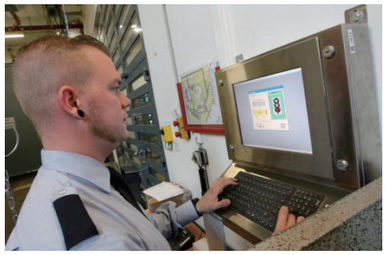

사진 77.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에서는 차량 통과 시 '심장박동 탐지기'를 통해 차량 내 사람의 은닉 여부를 탐색한다. 사진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라인바흐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지기 작동 모습이다.

사진 78.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원예 작업장 건물의 모습. 우측의 공터에 법정과 체육관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우리 일행은 어느덧 남측 수용동 가까이 다다르고 있었다. 왼쪽에 유리온실 하나와 원예 작업장 건물이 있었다. 담당 직원이 온실 앞에서 반갑게 손 인사를 했다. 심바스 씨는 과거에는 주벽 안 경운지의 면적이 상당해 채소류를 자급자족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아쉽다고 한다. 최근에는 남아 있던 부지마저 지하 법정과 실내체육관 공사로 인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유리 온실 옆에는 지하 법정과 실내체육관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미 건물의 뼈대와 골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된 듯하고 실내 미장과 배관, 전기 계통의 공사를 하고 있는 듯했다.

건물 입구가 보이는 정면의 유리창을 통해 공사 중인 실내체육관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조명의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지하 5미터 공간의 실내체육관의 윤기 나는 바닥 면을 보고 있자니 부럽기도 하고 샘이 나기도 했다. 실내체육관 벽면 뒤로 실내 지하 법정이 있을 테지만 아직 공사 중으로 현장 접근은 할 수 없었다. 아쉬웠다. 검찰이나 법원 출정 계호 업무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한국 교정행정의 현실에서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내 지하 법정의 건축 및 운영 사례는 연구과제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남측 수용동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섰다. 남측 수용동과 북측 수용동 건물 사이 좌·우로 60년대 세워진 동·서 수용동이 현대식 건축 양식을 뽐내고 있었다. 19세기 건축물과 20세기 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ㅁ'자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수용동 마다 통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구 건축물과 신 건축물의 조화가 멋있다고 하자 심바스 씨는 웃으며 60년대 신축한 수용동이 너무 낡아 교정시설 측에서는 건물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19세기 건축물은 남고 현대 건축물만 헐어 재건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슈발름슈타트 교정시설 건축물의 활용 사례를 봐도 심바스 씨의 말은 건축물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다.

좋은 디자인이란?

건축에 있어서 좋은 디자인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과연 무엇이 좋은 건축 디자인일까? 원론적으로는 한 사회의 문화 전통의 저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미적 감각이 올라와야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디자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건축에서는 구조가 뼈대가 튼튼하고 기능이 분명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순서가 아름다움의 추구가 아닐는지. 사람도 본바탕이 되어야지 화려한 옷만 걸친다고 본바탕이 가려질 수는 없는 노릇일 터. 아무리 현대적인 미적 감각과 기능을 강조해 건축물을 조성한다고 해도 건축 구조 자체가 부실하다면 결국에는 원래의 기능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전락할 것은 분명할 테니 말이다.

120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스타델하임 교정시설을 보며 든 생각. 건축물은 오래 보존되기만 해도 아름답다는 사실. 그 시대 건축 장인들의 생존을 지켜준 건축물이었고 당시 사람들의 삶을 담은 그릇이었기 때문이리라. 오래 살아남아 버텨준 그 자체가 진실일 터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화려한 것은 이내 사라져 버리지만 느리게 움직이고

수수한 것은 살아남는 것 같다. 맛없는 심심한 맛이 진짜 맛이듯.
건축물의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일게다. 따라서 '건축환경학(Architectural Environmental Planning)'에서도 인간의 쾌적함에 필요한 요소로 '온도', '바람', '습도' 세 가지를 주요한 요소로 규정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용자들이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 갇혀 수용 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에서 긴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독일의 교정시설 3곳을 참관한 결과 '소리'와 '공기'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끼이익, 덜컹덜컹, 쾅, 휘이익, 한국의 교정시설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교정시설 안의 소음이 얼마나 많고 높은지 살펴볼 수 있다. 교정시설 안에서 소음이 주는 스트레스는 직원이나 수용자를 가리지 않고 상당해 보인다. 요즘에는 거실의 시끄러운 TV 소리와 수용동의 라디오 방송까지.
독일의 교정시설을 보건데 한국의 교정시설 안의 '데시벨'은 직원과 수용자 모두에게 피로감을 더해주는 게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소리는 콘크리트 구조를 타고 흐른다. 교정시설의 조성에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고려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독일 교정시설의 방화문이나 통문, 특히 수용거실의 출입문은 소음 방지 기준을 48 데시벨(db)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은 평상 시 옆 사람과 조용하게 대화하는 수준의 소음도이다. 독일 교정시설에서는 수용거실의 소리가 복도로 새 나올 일도 없고 복도의 소리가 수용거실 안의 수용자의 귀를 거슬리게 할 일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연 환기와 공조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쾌적한 실내공기와 온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에너지 활용이 결코 '액티브(active)'한 모습은 아니었다. 철저하게 낭비되는 요소를 제어하는 '패시브(passive)'한 환경이었다.
다시 행정청사로 돌아와 마무리.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정문 턱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다시 교정시설과 주변을 돌아보았다. 낮게 깔린 구름과 초겨울의 날씨, 지상에 쌓아 올린 높은 주벽과 감시대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다.

3. '선진교정'의 도약을 위하여

이상과 같이 독일의 교정시설, 그중에서도 헤센 주와 바이에른 주의 일부 교정시설에 대한 참관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시간적·공간적 한계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최대한 세밀하게 관찰한 바를 기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교정행정을 반추해보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출장보고서의 내용이 한국 교정시설의 디자인 및 조성업무 개선에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독일의 교정시설을 참관하며 조사한 결과 그들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수용자를 위한 인간적이고 일반 사회와 유사한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수용자의 특성에 맞춰 분리 수용하고, 수용자의 사회적응 훈련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처우는 미결수용자이든 기결수용자이든 범죄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공평하게 처우되고 있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독일은 행형의 역사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만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미국의 교정행정과 시설이라는 렌즈를 통해 교정행정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미국의 민간 사법연구기관인 'VERA(VERA Institute of Justice)'[23]에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자국의 행형학자, 검사, 주지사, 교정시설 책임자 등으로 참관단을 구성해 독일의 여러 교정시설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 주요한 이유는 독일의 교정행정을 배우자는 것이었다. 미국이 독일의 교정행정에 주목하는 점은 현격히 낮은 수용률(2013년 기준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수용자 수는 707명인데 반해 독일의 인구 10만 명당 수용자 수는 75명임), 채광 등을 포함한 1인 1실의 인간적인 독일 교정시설의 환경 그리고 독일 교도관의 우수한 업무 능력이다. 미국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교정시설은 아직 독일의 시설 기준과 비교했을 때 특히, 수용자 거주 공간 관련 기준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수용 규모를 축소해 1인 1거실로 수용관리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정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정책의 기조와 형벌관, 나아가 국민의 법의식이 함께 바뀌지 않고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혹독한 형벌을 통해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사회 통념이 상존하는 한 교정시설의 개선은 힘든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체사레 베까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형벌은 비록 온건하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면 형면제의 희망이라는 요행수와 결부된 무시무시한 처벌의 공포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는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인간의 마음은 완강하고 무감각해진다고도 하였다.[24] 그렇다. 교정시설에서의 억압적 환경은 단기적인 효과를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범죄자의 악감정과 보복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교정 환경의 악화는 재소자의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그 부정적 감정은 지역사회 내의 범죄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데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이다.

---

23) 관련 기관 홈페이지 참조 (www.vera.org)
24) 한인섭 역(譯), 체사레 벡까리아의 범죄와 형벌 p.132

따라서 수용자에게는 교정시설 안에서라도 자신만의 공간은 최소한 주어지며, 시설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한 수용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독일 교정행정의 모습을 좋은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의 제도와 운영이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정시설도 무엇보다 인간적 품위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교정시설을 참관하며 가장 시사 받을 점은 형벌을 집행하되, 인간의 가치와 품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교정으로의 도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그 답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교정행정과 교정시설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교정행정이 '학인(學人)'의 자세로 겸손하게 배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최고의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한다.

붙임 | 보고서 사진자료 출처

■ 슈발름슈타트 교정시설

사진 1. http://nh24.de/index.php/schwalmstadt/201-schwalmstadt/81899-auch-2015-wieder-regelmaessig-offene-stadtfuehrungen-in-schwalmstadt
사진 2.3.4.6.18 현지 촬영
사진 5. http://lokalo24.de/news/fuenf-sterne-fuer-die-jva-ziegenhain/479462/
사진 7. http://regiowiki.hna.de/Justizvollzugsanstalt_Schwalmstadt
사진 8.9.10.11.14.15 http://www.hna.de/lokales/schwalmstadt/schwalmstadt-ort68394/sicherungsverwahrung-ziegenhain-hier-trainieren-insassen-alltag-5643908.html
사진13. http://www.welt.de/vermischtes/kurioses/article108667381/Haeftling-will-mit-Gabelstapler-aus-Gefaengnis-fliehen.html
사진16. https://www.esf-hessen.de/Qualifizierung_von_Strafgefangenen.esf
사진17. http://www.pressefrauen.de/db/dl/34_bwb_gb_08_pfiff.pdf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 교정시설

사진 19.20.27.56 현지 촬영
사진 21.22.23.24.25.26.28.29.31.32.33.34.35.36.37.38.40.41. 42.43.44.47.49.51.52.53.54.55.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제1교정시설 홍보용 책자 스캔
사진 30.45.46.48.50. 인터넷 자료

■ 뮌헨 스타델하임 교정시설

사진 59.78. 현지 촬영
사진 64.74. 인터넷 자료
사진 57. http://www.muenchner-kirchenradio.de/nachrichten/nachrichten/article/kardinal-marx-wuerdigt-mitglieder-der-weissen-rose-als-christliche-maertyrer.html
사진 58.http://www.oliverbarchewitz.de/Friedhof%20Perlacher%20Forst.htm
사진 60.http://www.sueddeutsche.de/muenchen/bilder-von-drinnen-jva-stadelheim-1.270503-11
사진 61.70.72. https://www.youtube.com/watch?v=tnlc35q7sxg
사진62. http://www.bayerische-staatszeitung.de/staatszeitung/leben/detailansicht-leben-in-bayern/artikel/der-mann-mit-den-schluesseln.html
사진 63. http://www.tsv1860.de/aktuell/news/u21-bestreitet-testspiel-in-der-jva-stadelheim
사진 65. http://www.baumeister-hm.de/baustellen.html
사진 66. http://www.sueddeutsche.de/muenchen/neuer-gerichtssaal-in-stadelheim-richter-kommen-ins-gefaengnis-1.1727251
사진 67. http://www.bild.de/regional/muenchen/gefaengnis/neuer-hochsicherheitstrakt-jva-stadelheim-42016710.bild.html
사진 68. http://www.bild.de/regional/muenchen/gefaengnis/neuer-hochsicherheitstrakt-jva-stadelheim-42016710.bild.html
사진 69. https://de.wikipedia.org/wiki/Justizvollzugsanstalt_M%C3%BCnchen#/media/File:Justizvollzugsanstalt_M%C3%BCnchen,_Frauenabteilung_und_Jugendarrestanstalt,_Schwarzenbergstra%C3%9Fe_14_(au%C3%9Fen).jpg
사진 71. http://www.bild.de/regional/muenchen/gefaengnis/entschaedigung-fuer-knast-insassen-raucher-streit-38732622.bild.html
사진 73. http://www.sueddeutsche.de/muenchen/bilder-von-drinnen-jva-stadelheim-1.270503-2
사진 75. http://www.historytoday.com/yvonne-sherratt/hitler-philosopher-f%C3%BChrer
사진 76. http://www.merkur.de/lokales/ebersberg/glonn-assling/gefaengnis-pfarrer-liefs-demjanjuk-1248582.html
사진 77. http://www.express.de/bonn/nach-flucht-aktionen—gegen-flitze—knast-checkt-autos-mit-herzschlag-detektor,2860,27951068.html
사진 78. http://www.sueddeutsche.de/muenchen/bilder-von-drinnen-jva-stadelheim-1.270503-6

교정본부 N / E / W / S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장, 교정본부 방문

일시·장소 7. 22.(월) 10:10, 국제회의실 등 ※ 방한 기간 : 7.20.(토)~7.26.(금)
방 문 자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장 등 10명
주요 내용 장관 접견, APCCA 개최 관련 노하우 공유, 홍보영상 시청 등

2024년 6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개최

일시·장소 7. 23.(화) 11:20, 본부장실
대 상 자 - 우수 수사관 : 안양(교) 교사 정근영
- 우수 정보관 : 부산(교) 교위 김준수

교정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근절 관련 교육 사항 전파

주요 내용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징계사유
- 수사기관에서 비위 사실 인정 결정이 통보되면 반드시 징계요구
- 성폭력·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

「교정본부-(주)모네상스」 업무협약식 개최

일시·장소 7. 24.(수) 15:00, 법무부 대회의실
참 석 자 - (교정본부) 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사회복귀과장 등 4명
- (모네상스) 대표이사 강신장, 전무 박소영 등 3명
주요내용 - 모네상스 인문학 콘텐츠「고전 5미닛」무상 제공
- 수용자 교화방송 프로그램 인문학 콘텐츠 정기 편성 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2024년 법무부 청렴 릴레이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7월 법무부 청렴의 날을 맞아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청렴 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교육을 통해 청렴 의지를 고취 시키며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가졌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제49대 주기남 소장 취임

강릉교도소 제49대 소장으로 주기남 소장이 7월 15일 취임했다. 주기남 소장은 "상하 동료 간 인격을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고, 정의와 상식의 법치로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을, 그리고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합시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혹서기 수용자 생수 기증 행사

7월 17일 속초시 기독교 연합회가 무더운 여름 수용자의 건전한 수용 생활을 위해 생수 5,000개를 강원북부교도소에 기증했다. 속초시 기독교 연합회는 "올여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혹서기 수용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서울구치소는 6월 26일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문태 소장은 "수용자의 마약 예방·치료·교육 등의 플랫폼 역할을 넘어 대국민 홍보에도 노력하는 서울구치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서울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 혹서기용 생수 기증

서울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는 7월 18일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하여 혹서기에 사용할 생수 7,800개를 기증했다. 생수는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반입해 배부할 예정으로, 온열질환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이준구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 현행범 체포 조력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이종현 교위는 7월 6일 흉기로 폭행당하던 시민을 구조하는 공을 세웠다. 이종현 교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교도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가해자를 제압하는데 큰 두려움은 없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주저 없이 피해자를 도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제2회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공모전 참가자 대상 시설 참관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7월 10일, 11일 '제2회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신청자 85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박경선 소장은 "미래 건축가인 학생들에게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소망교도소 총무과 / 주임교도관 박성호

수용자 가족 이사 지원

소망교도소 사회복귀과 전환관리팀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수용자 가족에게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또한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자체소방훈련 실시

평택지소는 6월 11일 청사 정문 앞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김성열 소장은 "화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긴급상황에서도 즉각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봉녕사 생수 등 기증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가 7월 2일 혹서기를 앞두고 수원구치소에 500ml 생수 1만 병을 기부하여 나눔의 손길을 펼쳤다. 봉녕사는 지난 2022년부터 설 명절과 부처님오신날에 떡 2,500개를 매년 기부하고 매달 불우수용자를 위해 영치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 실시

안양교도소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피지컬 케어, 건강상담, 힐링부스(커피트럭) 등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의 심신 상태를 확인·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보다 나은 교정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주교도소 / 교사 신재훈

제59대 배경석 여주교도소장 취임

제59대 배경석 여주교도소장이 7월 15일에 취임하여 업무를 시작했다. 배경석 여주교도소장은 취임식에서 "직원 상호간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하는 등 화합과 소통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실현하겠다"라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의 뜻을 밝혔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농촌일손제공형 외부통근작업 관련 업무협약식 실시

영월교도소는 7월 16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농촌일손제공형 외부통근을 위하여 영월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월교도소는 영월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8월 1일부터 외부통근 수용자에게 벌꿀가공작업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원주교도소 제43대 조관성 소장 취임

제43대 조관성 원주교도소장이 7월 15일 취임했다. 조관성 소장은 "엄정한 수용관리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교정사고를 예방하자"고 당부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직원 정신건강을 위한 강연 실시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 박익생 기술서기관이 직원 정신건강을 위해 "지금 여기서 마음 편해지기, 마음챙김 명상"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후기를 통해 "직원 복지차원에서 정신건강 강연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제4회 전국교정시설 감사나눔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인천구치소에서는 7월 17일 '제4회 전국교정시설 감사나눔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천구치소는 총 수상자 95명 중 최우수·장려·가작상 등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사)감사나눔연구원의 안남웅 본부장은 "교도소가 단순 구금 시설이 아닌 감사 학교로 변화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음주운전 예방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춘천교도소는 7월 1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를 가졌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사 심우현

2024년 하반기 직업훈련 입교식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7월 8일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집체 직업훈련생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교식은 이용공과 등 11개 과정에서 332명의 수용자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연말까지 산업기사 및 기능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에 매진하게 된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7월 4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 등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의식제고를 조성하기로 결의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교정시설 설계공모전 참가자 참관 실시

대구교도소는 7월 10일 교정시설 설계공모전 참가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 신청자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와 공모전 출품작의 수준을 높이고, 현대화된 시설의 적극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부산 학산여고 법경찰탐구동아리, 부산구치소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는 7월 22일 부산 동래구 학산여자고등학교 법경찰탐구동아리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했다. 학산여고 학생들은 부산구치소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교정장비 체험, 수용자 수용 거실, 취사장 등 구내 시설을 참관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교정장학금 지급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월 18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장학금 지급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역의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생수 1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7월 4일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로부터 생수 1만병(150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증행사를 준비한 이환수 회장은 "무더운 여름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기부

부산교도소는 7월 3일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50,000병을 기증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교정협의회의 정성어린 기증이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포항지원 형사재판부 교정시설 참관

포항교도소는 7월 8일 포항지방법원 형사재판부 판사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참관은 교정홍보영상 시청, 현황 청취, 시설 참관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 퇴치 예방 캠페인

진주교도소는 6월 26일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진주교도소를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 퇴치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예방 문구 현수막을 게시하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대구구치소 / 교사 곽재원

'전직원 적극행정 교육 실시'

대구구치소는 2024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 이정환을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소극적인 행정업무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통하여 올바른 교정교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의성지역협의회 참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직원들과 의성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 28명은 7월 10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참관했다. 이들은 수형자들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 후 직업훈련공과, 종교관, 문화복지관 등 구내·외 시설을 둘러보았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소방 및 긴급대피훈련

안동교도소는 7월 9일 화재 및 재난발생시 대응능력과 상황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긴급대피훈련을 온나라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했다. 안동교도소는 각 근무자들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승진 신고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7월 8일 8급 교사 승진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영성 소장은 "중경비시설에서 8급으로 승진되는 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달라"며 축하인사와 당부를 건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제64대 이일환 소장 취임

김천소년교도소는 7월 15일 제64대 이일환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일환 소장은 1997년 7급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등을 두루 역임한 후 김천소년교도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채원기

원주 강원사 운천 스님, (주)우리님 대표이사 한영용 냉국수 830인분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7월 18일 원주 강원사 운천 스님, ㈜우리님 대표이사 한영용님으로부터 냉국수 830인분을 기증받았다. 해당 기부 물품은 보안과로 전달되어 여름철 더위해소를 위해 수용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울산구치소 참관

울산구치소는 7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의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사회성향상위원들은 수용거실, 수용자 취사장, 가족접견실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성우

제50대 박은옥 경주교도소장 취임

경주교도소 제50대 소장으로 박은옥 소장이 7월 15일 취임했다. 박은옥 소장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에게 희망을 주는 교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통영구치소에 아이스크림 기증 및 참관

통영구치소는 7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로부터 아

이스크림 650개를 기증받고, 복지공단 경남지부장 등 1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확립을 통해 교정교화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밀양구치소는 7월 11일 밀양구치소 청사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고,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고자 하는 구치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부패취약분야 청렴 교육 실시

상주교도소는 7월 17일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부정부패에 취약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무과장이 청탁금지법과 위반사례를 직접 교육함으로써 공무원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요령에 대하여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을 위한 참관 진행

거창구치소는 7월 8일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위원 홍진선 위원장 등 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 이들은 거창구치소 구내외를 참관하며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헌도

신규직원 임용식 및 환영행사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7월 29일 변호사 자격 소지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한 교감 김영준의 임용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지방교정청 김승만 청장은 소속기관의 법률 자문에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하였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故 김동민 교감 순직 20주기 추모행사

대전교도소는 故 김동민 교감의 순직 20주기를 맞이하여 7월 15일 소내에 조성된 순직교도관 추모비 앞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故 김동민 교감을 비롯한 25위의 순직교도관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 진행

청주교도소는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수용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원으로 영화 '파묘'를 상영했으며 수용자 380명이 참석했다. '파묘'를 본 수용자들은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재미있게 보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이철희

미육군범죄수사단 참관 실시

천안교도소는 7월 2일 미육군범죄수사단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FEFO 한국인 선임수사관 김대식 등 10명을 초빙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업무 이해도 증진 및 교정행정 홍보와 구내 참관을 진행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이달의 칭찬공무원 선정

청주여자교도소는 2023년 10월부터 「이달의 칭찬공무원」을 선정, 포스터를 제작해 상장과 함께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다. 선정된 칭찬공무원이 다음 달 칭찬공무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2024년 공주교도소 마약예방 캠페인

공주교도소는 7월 1일 2024년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주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마약예방 어깨띠 착용 후 마약을 멀리하는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구내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충주구치소는 7월 24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를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충주구치소 업무 현황 청취, 작업장, 수용동 등 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감사쓰기 자체 공모전 시상식

홍성교도소는 7월 8일 '감사쓰기 자체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감사의 생활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 형성을 통한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새희망교화센터 대상 참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7월 11일 사단법인 새희망교화센터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천안개방교도소 수형자 생활관, 소통관 등을 참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참관을 마치고 방문자들은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혹서기맞이 교정협의회 기부금품 접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7월 12일 혹서기를 맞이하여 기부금품 전달식을 가졌다. 서산지소 교정협의회는 홍성교도소에 생수 3,000개와 생닭 340인분을 전달했다. 송재열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총무계 교도 전웅배

2024년 제1회 가족사랑캠프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7월 19일 2024년 제1회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했다. 수용자 4명과 가족 9명이 참여했으며,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및 유지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번 캠프는 수용자와 가족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수용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혹서기 생수 기증

광주지방교정청은 7월 17일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로부터 긴 장마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를 위한 생수지원금(500만 원)을 기탁받았다. 하영훈 청장은 "매년 생수 지원에 감사드리며, 교정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문화공연한마당' 개최

광주교도소는 7월 9일 교정협의회 주최로 수용자들의 심성순화를 위한 '문화공연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예술동아리단체인 '첨단골열린음악회' 단원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 이 행사는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범수형자 260명이 참석해 관람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실무자 중심 「교정발전협의회」 개최

전주교도소는 7월 22일 실무자 중심 '교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매월 교정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관 운영에 소속직원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을 증대하고 소통을 통한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모범공무원 전수식 개최

순천교도소는 7월 1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김광석 교감에게 모범공무원증 및 표창을 전달하는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광석

교감은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수용자 교정교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교정행정 발전에 공적을 인정받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사랑나눔 장학금 전달(무안중학교)

목포교도소는 7월 10일 무안중학교 재학생 5명에게 총 150만원의 사랑나눔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목포교도소 전 직원의 정성을 모은 기금으로 운용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2회 전달하고 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야간 응급환자 출동훈련

군산교도소는 7월 2일 야간 응급환자 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응급상황 발생 시 역할 분담을 통한 상황전파 및 조치훈련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교도소 / 교위 고동성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 대표단, 제주교도소 방문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 대표단이 7월 23일 제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교정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양국의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 대표단은 중앙통제실, 직업훈련장 등을 참관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결의대회

장흥교도소는 7월 1일 월례회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국진 소장은 "음주운전은 항상 경계해야하며 청렴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숙명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합시다."라며 당부 말을 전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긴급출동 및 도주 훈련 실시

해남교도소는 7월 4일 수용자가 도주하는 상황과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 훈련은 실제 도주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직원들은 체계적이고 숙달된 대응을 보였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준현

자체 소방훈련 실시

정읍교도소는 7월 12일 자위소방대의 임무 수행 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정읍교도소 직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모범 공무원

강릉교도소 교감 김종훈

김종훈 교감은 1991년 영등포교도소에 임용되어 현재 이르기까지 33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교도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범 공무원으로 보안과 등에서 근무를 했다. 또한 수용관리팀장, 야간 당직 교감으로서 수용 질서 확립과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 생활을 도모하였고, 복지과 수용자 식량, 총무과 급여, 인사, 지출업무 담당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서산지소 교사 변상준

변상준 교사는 원칙에 입각한 근무로 기초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한 기피하는 근무개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근무하여 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됐다. 꾸준한 헌혈로 2017년 4월 대한 적십자사 금장유공장을 받은 바 있는 변상준 교사는 지금까지 총 162회 헌혈로 인터넷 언론사에 보도 된 바 있다.

대구구치소 교위 김홍주

김홍주 교위는 입출소 근무자로서 지난 5월 17일 신입수용자 입소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용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이 렌즈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세밀하게 확인했다. 확인 결과 해당 안경이 녹음·녹화 기능이 탑재된 영상촬영 기기임을 인지했다. 김홍주 교위는 해당 안경을 특별보관품으로 분리하고 촬영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시설내 불법 촬영 및 영상촬영 기기 반입을 차단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전주교도소 교위 정정상

정정상 교위는 지난 6월 15일 제11회 법무부장관기 배드민턴 대회 중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직원이 경기를 마친 후 대기 중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자 이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과 심장 제세동기로 응급조치 후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숨은 그림 찾기

최대한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익숙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기에 좋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아래 그림을 찾아보세요!

토끼

양

기린

나비

코끼리

공작새

거북이

딱정벌레

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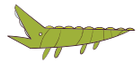
악어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커피 기프티콘 1만 원권 발송

찾아라!
올여름
최고의
센스는?

에너지센스,
우리 모두
함께 해볼까요!

냉방 할 때는
문을 꼭 닫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준수하기!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온도주의

PROUD MEMBER OF
ENERGY
SENSE
CAMPAIGN

풀칠하는 곳

POST CARD

독 자 엽 서

POST CARD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4. 2. 21~2025. 2. 20

서울중앙우체국
제 41696호

보내는 사람

이 름 .....

주 소 .....

.....

□□□□□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Vol.579.
2024. AUGUST

받는 사람

서울시 중구 퇴계로264
보림빌딩 403호
월간 〈교정〉 편집팀

0 4 6 1 9

(접는선)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08

Vol.579. 2024. AUGUST

교정 백서
독일 교정시설의 디자인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하)

교정 리포트
교정시설 자폐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효용 연구(상)

교정 논문
물질적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리절차 및 시사점 - 몰래 들여오는 행위 중심으로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CORRECTIONS

이름 _____ 소속기관 및 직급 _____ 휴대전화 번호 _____

※ 개인정보는 상품 추첨 및 증정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10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토끼

양

기린

나비

코끼리

공작새

거북이

딱정벌레

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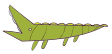
악어

위의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